

# **식품사고 위기대응 매뉴얼**

**2013. 12.**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매뉴얼은 식품사고로 인한 위기 상황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대응절차 및 제반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매뉴얼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양한 상황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위기대응 조치사항을 변경,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목 차

## 제1장 개 요

제1절 위기대응 매뉴얼 개요 .....	4
1.1.1. 목 적 .....	4
1.1.2. 법적 근거 .....	4
1.1.3. 적용 범위 .....	4
1.1.4. 위기 형태 .....	5
제2절 위기대응 체계도 .....	7
제3절 단계별 주요 추진사항 .....	8
1.3.1. 위해정보 수집·분석 단계 .....	8
1.3.2. 경보예상정보 전파 .....	9
1.3.3. 상황점검회의 .....	9
1.3.4. 긴급대응회의 .....	10
1.3.5.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 .....	11
1.3.6. 위기경보 .....	12
1.3.7. 범정부 합동 위기대응 체계도 .....	14
제4절 위기 시 언론대응 .....	15
제5절 위기대응 지침 및 판단/고려요소 .....	16
제6절 위기관리 평가 및 복구 .....	17

## 제2장 위기대응 업무수행 체계

제1절 위해정보 분석·공유 .....	20
제2절 상황점검회의 개최 .....	24
제3절 긴급대응회의 개최 .....	31
제4절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 운영 .....	32

### 제3장 상황별 위기대응 조치 및 절차

제1절 수입전단계 농산물, 가공식품 등에서 유해물질 검출 상황	56
제2절 수입전단계 수산물, 축산물에서 유해물질 검출 상황	66
제3절 미승인 GM 검출 상황	76
제4절 수입단계 농산물, 가공식품 등에서 유해물질 검출 상황	87
제5절 수입단계 수산물, 축산물에서 유해물질 검출 상황	97
제6절 이물 검출 상황	108
제7절 생산단계 유해물질 검출 상황	118
제8절 제조·가공 단계 축산물에서 유해물질 검출 상황	130
제9절 제조·가공 단계 가공식품 등에서 유해물질 검출 상황	141
제10절 식중독 발생 상황	152
제11절 언론 등에서 이슈제기 상황	165
제12절 위기대응 조치내용	166

### 부 록

1. 공문서 등 양식	191
2. Q&A 예시	221
3. 인터뷰, 기자회견, 브리핑 등 요령	224
4. 비상연락체계	229

# 제1장 개 요

제1절 위기대응 매뉴얼 개요

제2절 위기대응 체계도

제3절 단계별 주요 추진사항

제4절 위기시 언론대응

제5절 위기관리 평가 및 복구

# 제1절 위기대응 매뉴얼 개요

## 1.1.1. 목적

- 각종 식품안전 사고 및 그 피해 우려가 큰 경우 선제적으로 신속한 위기 대응을 함으로써 위기확산 방지 및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
- 식품관련 위기 발생시 일사불란한 대응이 가능토록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신속대응절차와 조치사항과 농식품부, 안전행정부, 교육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사항 등을 규정한 것임
  - 평상시 식품 안전관리 조직을 위기대응체제로 신속히 전환하기 위한 운영체계·업무처리 요령 등을 정함

## 1.1.2. 법적 근거

- 식품안전기본법 제15조(긴급대응)
  -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민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긴급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운영
- 식품위생법
- 축산물위생관리법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대통령 훈령 제285호)

## 1.1.3. 적용 범위

- 식품사고 위기와 관련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지자체(시·도/시·군·구) 및 관련 유관기관·단체 등의 위기대응 활동에 적용
  - 국내 및 인접국가의 방사능 누출 사고로 인한 식품사고 시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사고 위기관리 실무매뉴얼」에 따름

#### 1.1.4. 위기 형태

식품사고로 전개될 수 있는 위기 유형은 다음과 같음

**위기형태 1** 수입전 단계에서 유해 물질에 의한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위기형태 2** 수입·통관단계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

**위기형태 3** 생산단계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

**위기형태 4** 제조·가공·유통단계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

**위기형태 5** 식중독이 다수 발생하거나 식중독 확산 우려가 있는 경우

**위기형태 6** 언론, 소비자 단체, 수사기관 등에서 식품안전 관련 이슈를 제기한 경우



## < 용어의 정의 >

### ○ 위기

식품 사건·사고로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거나 소비자 불안이 극대화되어 인체에 위해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거나 가해지고 있는 상황

### ○ 위기관리

식품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에 대비하여 위기발생 시에는 효과적인 대응 및 복구를 통하여 그 피해와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조기에 위기 이전 상태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제반 활동

### ○ 위해정보

식품등의 안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국제기구, 국가기관, 학계 및 소비자단체, 언론매체 등이 발표한 정보

### ○ 정보분석

식품안전과 관련된 위해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중요도, 심각성, 시급성, 민감성, 대상의 포괄성, 지역성 등을 검토·분석하여 사실 확인, 평가 분석하는 과정

### ○ 주관기관(부서)

해당 위기에 대한 위기관리활동에 있어 주된 책임을 지고, 위기대응활동을 주도하고 관장하는 기관(부서)

### ○ 유관기관(부서)

해당 위기에 대한 위기관리활동에 있어 주관부서의 활동을 지원하고 협조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부서)

### ○ 경보예상정보 전파

「주의」 단계 이상의 정보에 대하여 식약처내 긴급경보시스템(START-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라 내부적으로 발령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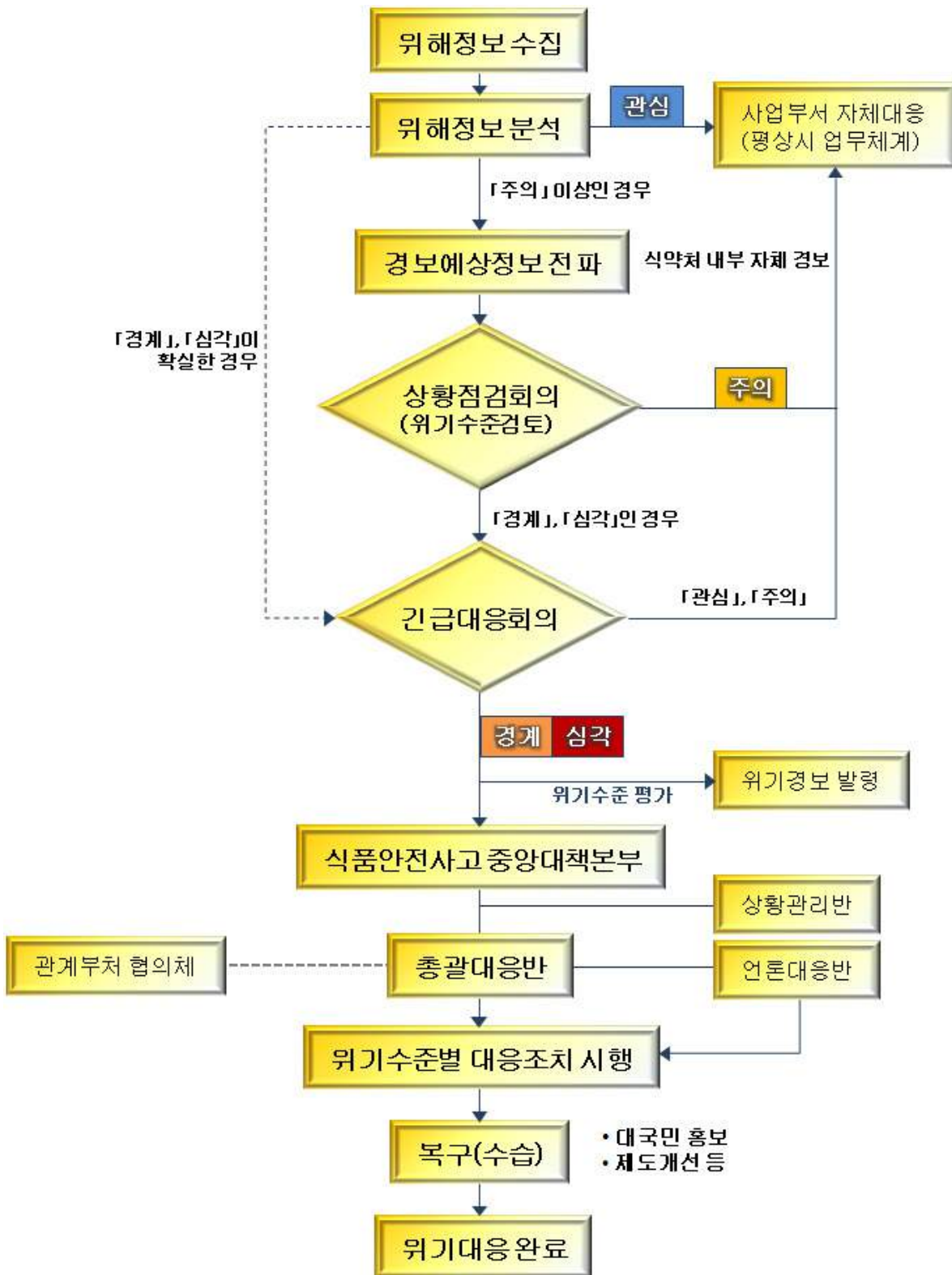
### ○ 위기경보

국가위기로 발전할 가능성 정도를 구분하여 내·외부에 알리는 것

### ○ 위기경보수준

- ① 「관심」 (Blue) :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
- ② 「주의」 (Yellow) :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확실한 상태
- ③ 「경계」 (Orange) : 위기가 확산되는 상태
- ④ 「심각」 (Red) : 심각한 위기로 확산된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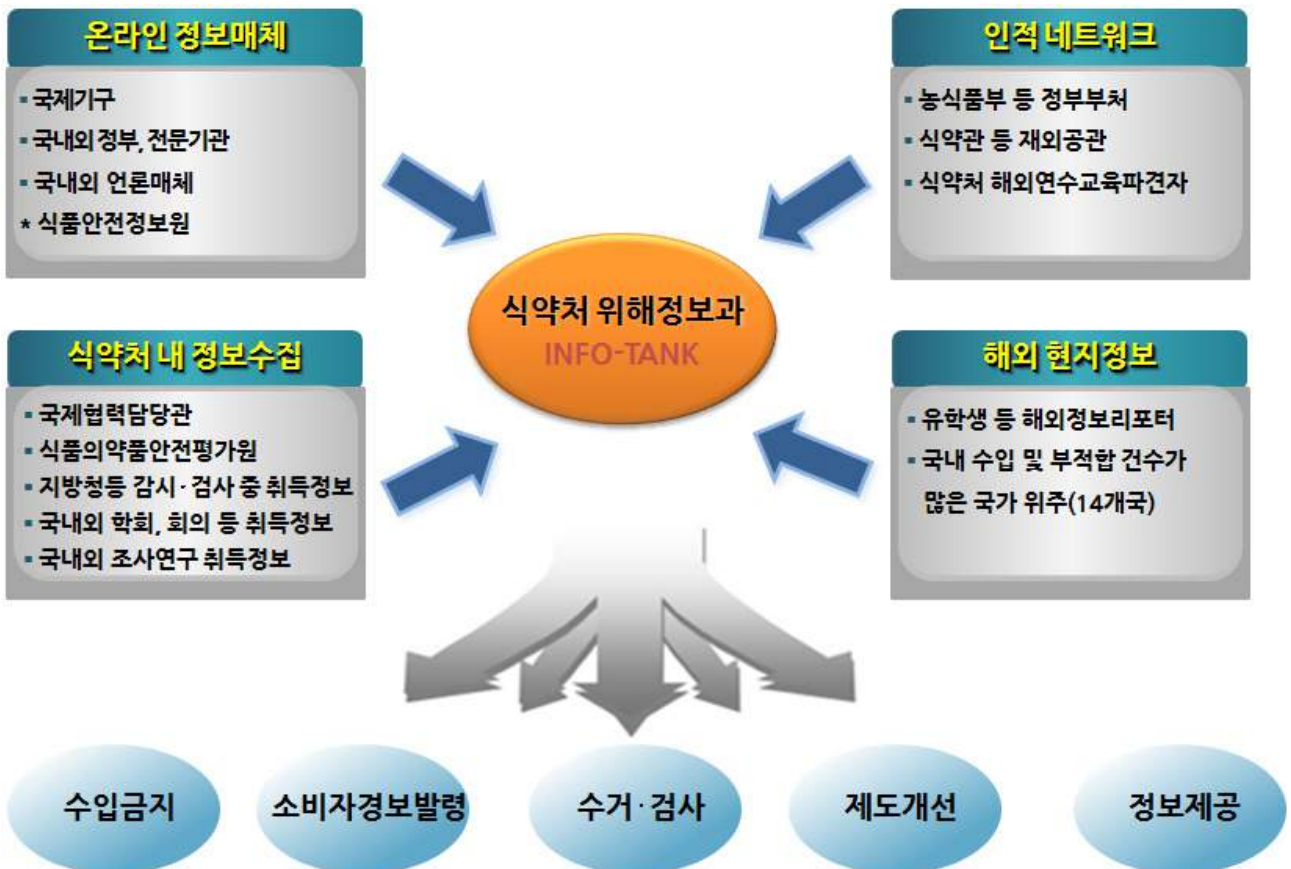
## 제2절 위기대응 체계도



# 제3절 단계별 주요 추진사항

## 1.3.1. 위해정보 수집·분석 단계

- 위해정보 수집
  - 국제기구, 국내·외 정부기관, 소비자단체, 언론매체 등 인터넷 정보 및 사업부서에 취득한 정보를 수집
- 위해정보 분석
  - 위해정보과는 수집한 위해정보에 대하여 신뢰성, 정보 내용, 조치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일일정보분석회의」에서 중요 정보를 발굴·분석



### 1.3.2. 경보예상정보 전파

- 「주의」 단계 이상의 정보를 수집한 부서는 즉시 ‘START-식품의약품안전처 경보예상정보 공유시스템’에 의한 경보 발령 및 문자메시지 송부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

- START-식품의약품안전처 경보예상정보 공유시스템 -

주요공지

제목	[주의예상 정보공유] ○○시, ○○○ 물질 유출사고 발생	긴급경보 <input checked="" type="checkbox"/>
SMS 내용	[주의예상 정보공유] ○○시, ○○○ 물질 유출사고 발생	SMS보내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등록일	2013-11-28	
부서	소비자위해예방정	
작성자	조수진	

B  I  U  ABC  x<sub>2</sub>  x<sup>2</sup>

포맷  폰트 Arial 글자 크기

□ 제목 : ○○시, ○○○ 물질 유출사고 발생

□ 정보내용

- 사고발생 지역 및 일시
- 사고발생 원인
- 유해물질 종류 및 유출량 등 피해상황
- 방제조치 현황 등

□ 정보 분석 내용

- 유해물질 특성, 인체위해성
- 국내외 기준 설정 유무 등 관리현황

파일업로드  전체선택

### 1.3.3. 상황점검회의

- 구성
  - 소비자위해예방국장(주재),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장, 소통협력과장, 위해정보과장
  -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기준기획관실, 식품영양안전국 및 농축수산물안전국 관련과장, 대변인, 평가원 해당과장, 그 외 상황관련 과장 등
- 운영
  - 경보예상정보가 전파된 경우 또는 소비자위해예방국장, 식품안전정책국장, 식품영양안전국장 또는 농축수산물안전국장이 요청한 경우
  -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에서 참석범위 조정하여 소집

○ 역할

- 위기수준(「관심」, 「주의」, 「경계」, 「심각」) 검토
- 정보분석 내용, 국내 유통 및 수입단계 수거·검사 범위, 수거·검사 결과 이전 잠정유통·판매 금지조치 여부, 기준 및 시험법 적용, 관련 기관 보고·협조, 보도자료 배포 필요성 등 검토

### 1.3.4. 긴급대응회의

- 구성 : 차장(주재, 필요시 처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기획조정관, 소비자위해예방국장, 식품안전정책국장, 식품영양안전국장, 농축수산물안전국장, 의약품안전국장, 바이오생약국장, 의료기기안전국장, 기준기획관, 위해평가부장,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장, 소통협력과장, 위해정보과장, 본부 및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관련 과장, 대변인, 운영지원과장

○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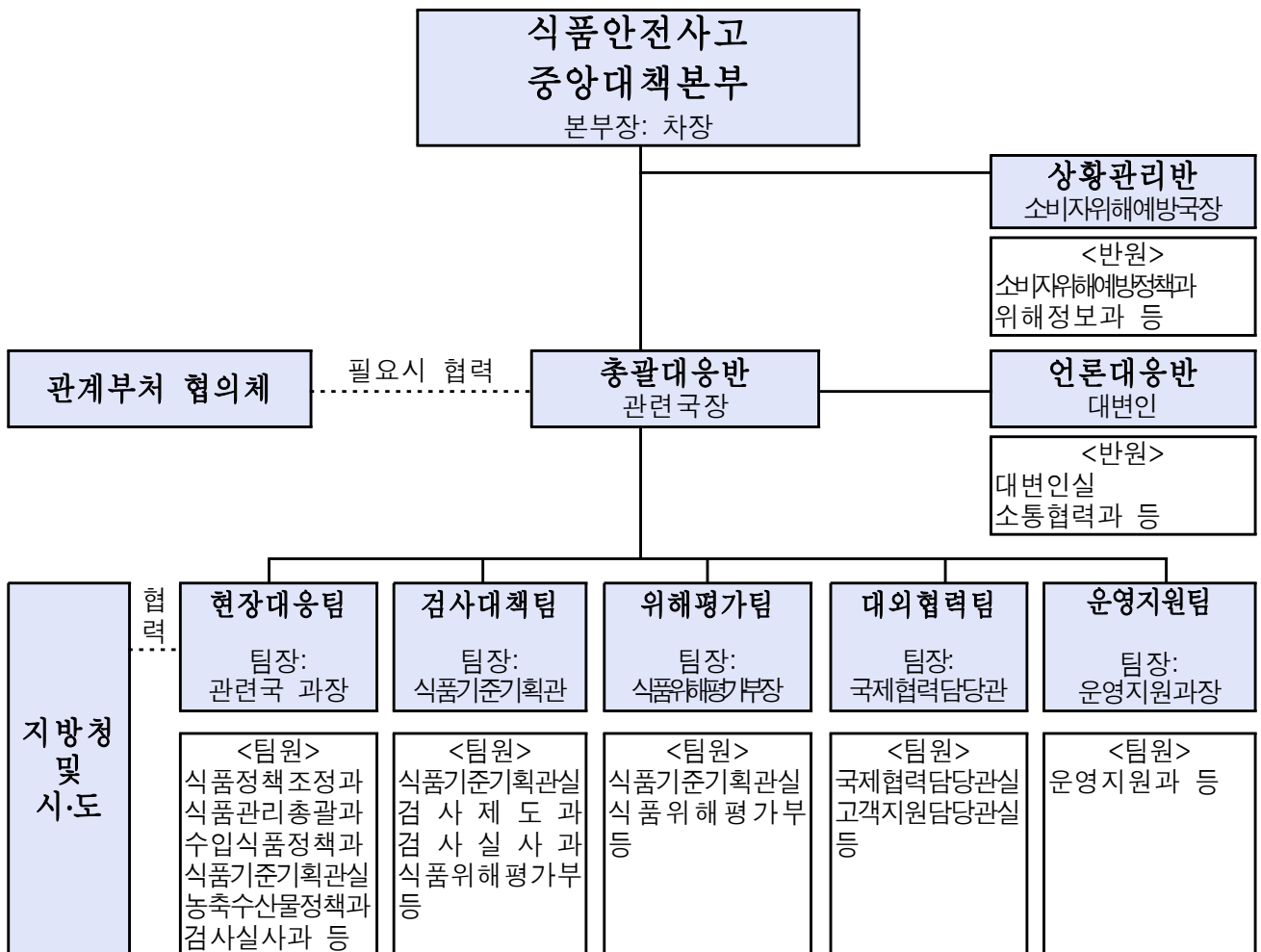
- 「상황점검회의」 결과 「경계」 단계 이상으로 판단될 경우
  - \* 위해정보분석 결과 위기수준이 「경계」 이상으로 확실한 경우 상황점검회의 없이 긴급대응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
  - \* 식중독 사고의 경우 상황점검회의 없이 긴급대응회의 개최
- 소비자위해예방국장이 처·차장에게 긴급대응회의를 요청하고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에서 참석범위 조정하여 회의 소집

○ 역할

- 정보의 심각성, 예상피해 범위, 확산가능성,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동향 등을 종합 고려하여 위기수준(「관심」, 「주의」, 「경계」, 「심각」) 판단 및 경계 이상인 경우 위기경보 발령

### 1.3.5.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

- 구성 : 위기경보 수준이 「경계, 심각」에 해당되는 경우
  - 차장(본부장, 필요시 처장), 총괄대응반장은 긴급대응회의에서 관련국장 중 1인 지명하고, 소속 팀장 및 팀원은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에서 총괄대응반장과 협의하여 운영지원과에 발령 요청
- 운영 : 「긴급대응회의」 결과에 따라 구성, 지속적·체계적 관리 및 대응을 위한 일일상황보고체계 구축
- 역할 : 위기 발생 시 체계적·효율적 대응을 위한 컨트롤 타워 기능 수행



- ※ 지방청 및 시도 관련 부서는 각 팀과 협조·협력체계 구축
- ※ 식품등 사고 규모 등에 따라 총괄대응반 아래 대응팀을 확대 또는 축소 등 변경 가능

### 1.3.6. 위기경보

위기경보	수 준
<p><b>관심 (Blue)</b>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외에서 유해물질에 의한 식품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별표 외의 제품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 입수</li> <li>◦수입·통관·유통단계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검출될 우려가 있는 별표 외의 제품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 입수</li> <li>◦농·수·축산물 생산단계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검출될 우려가 있는 별표 외의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 입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풍수해, 유해화학물질 유출 등 재난 발생 정보 입수 포함</li> </ul> </li> <li>◦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검출될 우려가 있는 별표 외의 제품이 제조·가공·유통된 경우 (정보 입수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물 검출에 대한 신고 접수 포함</li> </ul> </li> <li>◦50인 미만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경우</li> <li>◦국회, 소비자단체, 경찰 등 수사기관, 지자체 등에서 이슈 제기된 경우(정보 입수 포함)</li> </ul>
<p><b>주의 (Yellow)</b>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확실한 상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외에서 유해물질에 의한 식품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별표의 제품이 국내에 유통되는 경우</li> <li>◦수입·통관·유통단계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검출될 우려가 있는 별표의 제품이 국내에 유통되는 경우</li> <li>◦농·수·축산물 생산단계에서 별표의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검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으로 농·수·축산물 등이 유해물질에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포함</li> </ul> </li> <li>◦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검출될 우려가 있는 별표의 제품이 제조·가공·유통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물 검출로 위해우려가 있는 경우 포함</li> </ul> </li> <li>◦1개 지역에서 50인 이상 집단식중독 환자 발생한 경우</li> <li>◦이슈 제기된 사항에 대해 2개 이상 언론사에서 부정적 언론보도</li> </ul>
<p><b>경계 (Orange)</b> 위기가 확산되는 상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외에서 유해물질에 의한 식품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별표의 제품이 대량 유통 및 관련 언론보도 확산된 경우</li> <li>◦수입·통관·유통단계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검출될 우려가 있는 별표의 제품이 대량 유통 및 관련 언론보도 확산된 경우</li> <li>◦농·수·축산물 생산단계에서 별표의 유해물질이 다량 반복 검출되거나, 유해물질에 의한 오염이 확산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으로 농·수·축산물 오염이 확산되는 경우 포함</li> </ul> </li> <li>◦제조·가공·유통단계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검출될 우려가 있는 별표의 제품이 대량 유통 및 관련 언론보도 확산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물 검출 제품의 대량 유통 및 관련 언론보도 확산된 경우 포함</li> </ul> </li> <li>◦2개 이상 지역에서 동일원인으로 추정되는 100인 이상 집단식중독 환자 발생</li> <li>◦이슈사항에 대하여 부정적인 언론보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위기가 확산되는 경우</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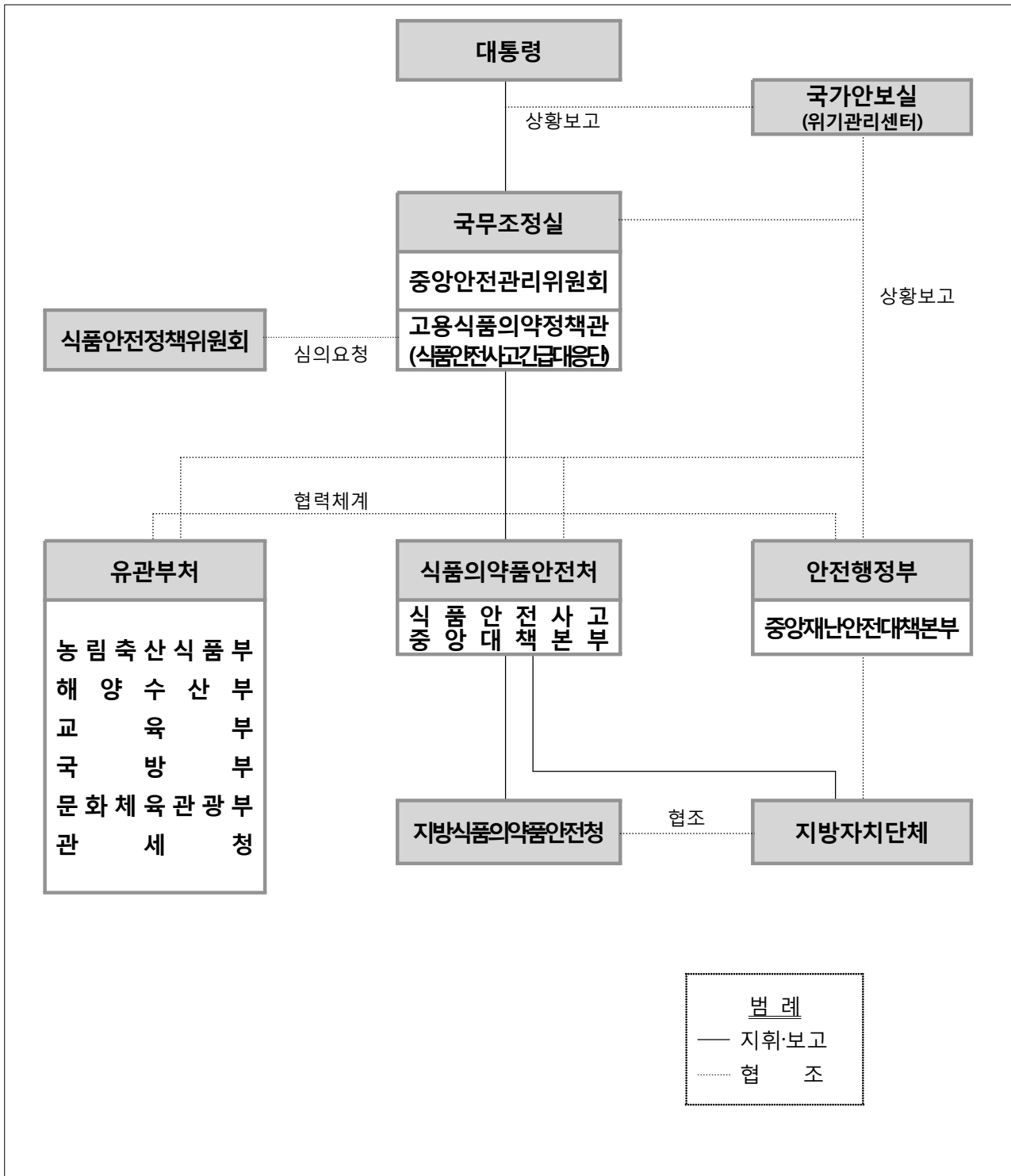
위기경보	수 준
<b>심각 (Red)</b> 심각한 위기로 확산된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외에서 유해물질에 의한 식품사고가 발생한 별표의 제품으로 인해 국내 환자 또는 사망자 발생 등 심각하게 국민 불안감이 야기된 경우</li> <li>◦수입·통관·유통단계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별표의 제품으로 인해 국내 환자 또는 사망자 발생 등 심각하게 국민 불안감이 야기된 경우</li> <li>◦농·수·축산물 생산단계에서 별표의 유해물질에 오염된 식품으로 인해 국내 환자 또는 사망자 발생 등 심각하게 국민 불안감이 야기된 경우</li> <li>◦제조·가공·유통단계에서 별표의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으로 인해 국내 환자 또는 사망자 발생 등 심각하게 국민 불안감이 야기된 경우</li> <li>◦원인불명에 의해 전국적으로 대규모 집단식중독 환자 발생</li> <li>◦이슈제기 사항에 대한 부정적 언론보도 확산으로 심각하게 국민 불안감이 야기된 경우</li> </ul>

※ **별표**

- 외국에서 인명피해 위해정보 제품(식중독 제외)
- 국제암연구소(IARC)의 발암기준 그룹 1, 그룹 2A가 검출된 제품(허용기준이 있는 경우 초과 검출)
- 비브리오 패혈증균 등 법정 전염병균(인수공통전염병원체 포함)이 검출된 제품
- 미승인 유전자 재조합 농·수·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
- 소해면상뇌증(BSE), 탄저병,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에 걸린 식육을 사용한 제품
- Codex 등 국제기구, 선진국에도 기준이 없는 화학적 합성 물질을 사용한 제품
-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는 물질이 검출되거나 잔류농약·중금속·방사능·곰팡이독소·식중독균 등이 기준을 10배 초과하여 검출된 제품
- 마황 등 식품위생법 제93조제2항에서 규정한 원료 또는 그 성분 등을 사용한 제품
- 쥐, 유리 조각(7~50mm 크기), 칼날·못(나사못 포함)·바늘 등 유사형태 금속(7~50mm 크기)이 검출되어 혐오감을 주거나 직접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이물이 검출된 제품(다만, 이 경우 연 매출 500억 이상의 업소에서 발생하는 경우에 한함)
- 기타 소비자위해예방국장, 식품안전정책국장, 식품영양안전국장, 농축수산물안전국장이 상기와 유사한 수준으로 판단한 제품



### 1.3.7. 범정부 합동 위기대응 체계도



## 제4절 위기시 언론대응

### □ 모든 관련 사실의 수집

- 정확한 상황 파악과 정보 제공을 위하여 사고 원인, 현재 진행상황, 제외국 조치 동향 등 확인

### □ 핵심 메시지를 전달

- 정확한 사실(fact)과 식약처의 조치, 공식 입장 등을 전달

### □ 관련기관과의 사전협의를 통한 보도시점 결정

- 업무관련 유관 부서 협조 및 언론홍보관련 기관 등과 협의를 통해 보도 시점 결정

### □ 단일화된 창구를 통한 정보 배포

- 위기시 상황이 모순되거나 불필요한 추측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불완전한 정보의 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 대변인' 등 단일화된 채널을 통한 정보 배포

### □ 신속, 정확한 정보제공 및 나쁜 뉴스라도 정직한 제공

- 주요 상황의 변화시 관련기관 및 언론기관에 신속,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추측보도 방지
- 정보은폐에 의한 공신력 실추의 방지를 위해 가장 나쁜 뉴스라도 대변인을 통하여 정직하게 전달
- 언론사의 정보제공 요청을 거부하거나 논평을 거부할 경우에도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 불식

## 제5절 위기대응 지침 및 판단/고려요소

### 1.5.1. 위기대응 지침

- 위해정보가 「경계·심각」에 해당하는 경우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 구성·운영하고, 책임 주관부서를 지정
  - 「관심·주의」 수준에서는 사업부서 중심으로 평상시 업무와 연계하여 대응
- 주관부서를 주축으로 지방청과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 지방청과 관계기관에 상황을 전파, 대응, 연락 및 홍보를 지원
-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는 위해요인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대응이 가능하도록 해당 업무 담당자 이외에 직전 담당자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음
-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주관부서 포함)는 단계별 조치방안에 따라 진행단계에 맞춰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시행
-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는 위해요인별로 청와대, 국무총리실, 농식품부, 해수부, 시·도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지원체계 형성

### 1.5.2. 판단/고려요소

- 접수된 위해정보를 분석·평가 후 대응조치 여부
- 위기의 단계별 평가에 따라 대규모 위기상황이 전개될 경우 관련기관과의 정보공유·대응방안 공동 강구 등 협조체계 구축 여부
- 대국민 홍보체계 구축 및 홍보 역량 확보 여부

## 제6절 위기관리 평가 및 복구

### 1.6.1. 위기관리 과정 평가

- 위기관리가 식약처 차원에서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 지를 평가하고 그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 목적
- 프로그램 및 조직 차원에서 설정된 목표가 실제 달성되었는지를 평가하고 측정
- 평가결과는 위기대응 매뉴얼 수정 및 보완에 활용

### 1.6.2. 위기관리 결과 평가

#### □ 평가항목 및 고려사항

구 분	평가항목	고려사항
프로그램	- 위기관리 계획의 수행 - 언론 대응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목표 달성	- 위기유형 및 단계 - 위기관리 시스템 - 이해관계자별 평가
조직	- 내부 조직의 명성 평가 - 일반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평가 - 언론 평가	- 명성 및 이해관계의 관계변화 - 언론에 대한 내용분석, 서베이 등

### 1.6.3. 복 구

#### □ 청 이미지 개선을 위한 이미지 회복 프로그램 운영

- 조직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관의 비전과 미션을 표방
- 정책 효율성 증대

- 위기관리 능력 함양
- 정책결정의 투명성 향상
- 언론사, 업계, 관련 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소비자포럼, 세미나 등 개최(소통협력과)
  -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적극적 의견 개진 및 여론형성 주도
  - 위기대응 완료 후 사후(wrap-up) 심포지엄 개최 및 결과 홍보
- 신문 및 인터넷 등에 위기대응 및 재발방지 노력에 대한 기고·칼럼 게재 및 공익광고 제작 등 방송매체 활용(대변인실, 소통협력과)
  - 관련 부서 등의 협조를 통해 일관된 목소리 전달
- 내부 전문가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가동
  - 백서 및 보고서를 활용한 내부 직원 교육으로 역량 강화
- 식품안전에 관한 정책연구 활성화 지원
- 위기상황 종료 후 백서 발간

## **제2장 위기대응 업무수행 체계**

**제1절 위해정보 분석·공유**

**제2절 상황점검회의**

**제3절 긴급대응회의**

**제4절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

# 제1절 위해정보 분석·공유

## 2.1.1. 위해정보 상황관리

- 모든 부서는 상시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위해정보과의 위해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에 적극 협조 및 지원
  - 주요 사업부서는 위해정보담당관을 지정·운영
- 위해정보과는 수집정보를 분석하여 관련부서와 공유하고, 필요시 위해정보과장(주관),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관련부서 사무관 등이 참여하는 「정보분석회의」를 개최
  - 수집정보 분석시 신뢰성, 위해정도, 시급성, 국내제조 또는 수입 여부, 국내외 기준, 시험법 유무 등 참조
- 「주의」단계 이상 위해정보 수집 시 관련부서와 정보를 공유하고 신속하게 경보예상정보 전파 발령 및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에 상황점검회의 개최 요청
- 위해정보과 또는 사업부서는 수집정보 분석결과 중요 정보사항은 처·차장에게 보고
- 각 사업부서는 위해정보에 따른 조치결과(수입검사, 수거검사 지시 등)를 소비자위해예방국과 실시간 공유

### 2.1.1.1. 재난 발생 시 위기 대응

- 주관기관과 긴밀한 연락 체계 구축
- 식품사고로 연계 발전 가능 여부 신속히 분석
- 식품피해 발생 대비 위기대응 체계 점검

#### < 재난 발생 시 참고자료 >

##### □ 재난 발생 시 관련 부처 비상연락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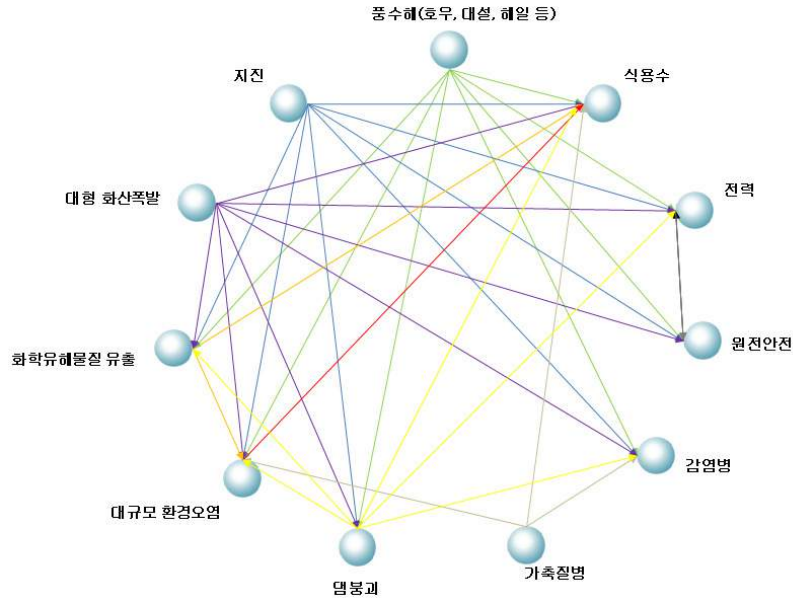
-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02-770-2335)
- 안전행정부
  - 자연 재난 대응(재난총괄과, 02-2100-1815~7)
  - 인적 재난 대응(재난협력과, 02-2100-1836~7)
  - 사회적 재난 대응(재난관리과, 02-2100-1825~6)
  - 중앙안전상황실(02-2100-3119)

구 분	재난 유형	주관기관	담당부서	연락처
자 연 재 난	풍수해	소방방재청	방재대책과	02-2100-5416
	지진	소방방재청	지진방재과	02-2100-5086
	산불	산림청	산불방지과	042-481-4252
	대형화산폭발	소방방재청	방재대책과	02-2100-5421
인 적 재 난	화학 유해물질 유출	환경부(독극물) 산업통상자원부(독성가스) 고용노동부(대형사업장)	화학물질과 에너지안전과 화학사고예방과	044-201-6771 044-203-5134 044-202-7760
	대규모 환경오염	환경부(수질오염) 해양수산부(해양오염)	수질관리과 해양환경정책과	044-201-7068 044-200-5290
	댐붕괴	국토교통부	수자원개발과	044-201-3611
	인접국 방사능 누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재환경과	02-397-7357
사 회 적 재 난	전력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044-203-5253
	식용수	환경부(지역상수도) 국토교통부(광역상수도)	수도정책과 수자원개발과	044-201-7115 044-201-3610
	감염병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보건위기대응과	043-719-7247
	가축질병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044-201-2373
	원전안전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재환경과	02-397-7353



□ 재난 간 연계 피해 가능성

- 재난 발생 시 연계하여 추가 발생하는 재난 상황을 신속히 파악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정보제공시스템(Tox-Info) 참고

- 화학유해물질 유출 사고나 대규모 환경오염의 경우 누출된 화학물질의 독성 정보를 평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독성 DB를 활용([www.nifds.go.kr/toxinfo/index](http://www.nifds.go.kr/toxinfo/index))



※ 환경부 화학물질정보시스템(<http://ncis.nier.go.kr>) 참고

### 2.1.2. 위해정보 전파

- 「주의」 단계 이상 위해정보를 수집한 부서는 즉시 위해정보를 전파
  - 국내·외 위해정보 : 위해정보과
  - 사업부서에서 취득한 정보 : 사업부서
- ‘START-식품의약품안전처 경보예상정보 공유시스템’에 의한 전파
  - ① SMS 문자메시지 발령

**예시) 주의 예상정보 공유, 중국산 장어에서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

- ② 주요공지에 정보분석 게재
  - 정보수집 내용, 수집경로, 국내 제조·수입·유통 여부
  - 유해물질 특성, 인체위해성, 검출원인 및 사용목적(의도적·비의도적)
  - 국내·외 기준, 제외국 관리현황, 과거 유사사례 등 포함
- ※ 제한된 시간내에 정보분석 및 신속한 상황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관련부서간 적극적인 협조체계 유지

### 2.1.3. 상황진행보고

- 경보예상정보 전파 시 상황점검회의 개최
  - 경보예상정보 전파 후 5시간 이내 개최, 조치방향 결정 보고
- 경보예상정보 전파 후 12시간 이내 진행 상황 및 조치 결과를 보고
  - ※ 부득이한 상황으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검토·진행사항 보고

### 2.1.4. 휴일 등 근무시간 이후 대응

- 정보를 수집한 위해정보과 또는 해당과에서 경보발령
- 참석대상부서 과장, 사무관, 관련직원은 즉시 사무실 복귀
  - ※ 사무실 복귀가 어려운 경우 전화통화 가능 유지
  - 상황점검회의는 화상회의로 진행(본부 및 서울지방청)

## 제2절 상황점검회의 개최

### 2.2.1. 개최 요건

- 경보예상정보가 발령된 경우
- 경보예상정보가 발령되지 않았으나 소비자위해예방국장, 식품안전정책국장, 식품영양안전국장, 농축수산물안전국장이 요청한 경우
  - ※ 위해정보 내용에 따라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에서 참석대상을 조정

### 2.2.2. 구성

- 소비자위해예방국장(주재),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장, 소통협력과장, 위해정보과장, 대변인, 해당국 관련 과장, 평가원 식품위해평가부 관련 과장, 그 외 상황관련 과장 등
  - ※ 해당국 관련 과장 예시
    - 식품안전정책국 소관 : 식품정책조정과장, 식품관리총괄과장, 수입식품정책과장, 식품기준기획관실 등 관련 과장
    - 식품영양안전국 소관: 영양안전정책과장, 식품기준기획관실 등 관련 과장
    - 농축수산물안전국 소관 : 농축수산물정책과장, 검사실사과장, 식품기준기획관실 등 관련 과장

### 2.2.3. 검토 사항

- 정보분석 내용 검토
  - 인체위해성, 유해물질 특성, 위해정보, 동일제품 여부
  - 품목수, 제조업체, 수입업체, 제조·수입 물량 등
  - 취약계층(영유아, 임산부, 노인 등) 대상 제품 여부 등
  - 보도가능성, 국민반응 등 검토

- 국내 유통 및 수입단계 수거·검사 범위
  - 제품종류, 대상국가, 검사횟수 등 검토
- 수거·검사 결과 이전 잠정유통·판매 금지조치 여부
- 기준 및 시험법 적용
  - 식품위생법령(식품공전)에 기준이 없을 경우 기준적용 검토
  - 시험법이 없을 경우 시험법 적용 검토
- 관련기관 보고·협조
  - 청와대, 국무조정실 등 보고 등 관계기관 협조·정보 공유
- 보도자료 배포 및 대국민 홍보 시기
  - 검사결과후 유해물질 검출시 배포 여부 및 브리핑 수행 여부
- 위기수준(「관심」, 「주의」, 「경계」, 「심각」) 검토

#### **2.2.4. 조치방향 결정시 판단기준**

##### **□ 수거·검사전 잠정유통 판매 금지 조치 여부**

- 외국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과 동일제품의 수입실적이 있는 경우
  - 수거·검사결과 부적합 제품은 회수·폐기
- 외국의 자국제품 회수 조치된 제품과 동일제품의 수입실적이 있는 경우
  - 동일제품은 회수조치하고 외국에서 회수사유 방지대책 마련시까지 동일 제품 잠정 수입중단 조치
- 식품으로 인한 사망, 환자 발생 등 관련 제품의 수입실적이 있는 경우

□ 위해정보 관련 제품 수거·검사 범위 검토

○ 유통단계 검사

- 위해정보 관련 제품은 원칙적으로 모든 제품 수거·검사
- 원료를 가공식품에 사용한 경우 검출한계를 고려하여 해당 원료 함량 일정 비율 이상 제품 수거

○ 수입단계 검사

- 위해정보 직접관련 제품은 제조회사별, 제품별 또는 포장장소별 3회 실시
  - 직접 관련이 적은 제품은 제조회사별, 제품별, 포장장소별 1회 실시
- ※ 원료함량 일정비율 이상 수거·검사 시 근거 제시

### 2.2.5. 부서별 역할 및 준비사항

부서명	역할 및 준비사항
소비자위해예방 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황점검회의의 주관, 총괄 관리</li> <li>▪상황점검 결과보고</li> </ul>
소통협력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국민 커뮤니케이션 관리</li> </ul>
위해정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보분석 보고 이후 추가정보 수집 및 심층 분석</li> </ul>
식품정책조정과 (농축수산물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치·진행방향 조정</li> <li>▪조치결과 종합 관리</li> </ul>
식품관리총괄과 (축산물위생안전과 농수산물안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 제조 현황 확인(국내 제조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목수, 생산량, 제조업체, 유통·판매 경로 등</li> </ul> </li> </ul>
수입식품정책과 (검사실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입식품 통계 확인(유통기한 남아있는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품목, 수입건수, 수입량, 제조업체, 수입업체 등</li> <li>- 필요한 경우 해당 원료 성분비율 등</li> </ul> </li> <li>※ 유통기한이 2년이상 일때 최근 2년 수입현황</li> </ul>
신소재식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GM 식품 유통 현황 파악</li> <li>▪국내·외 안전성 평가 현황 및 자료</li> </ul>
식품기준기획관 (해당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적용기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공전에 기준이 없을 경우 기준적용 검토</li> </ul> </li> <li>▪제외국 기준 및 관리현황 확인</li> </ul>
식품위해평가부 (해당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험법 적용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험법이 없을 경우 시험법(안) 확립 검토</li> </ul> </li> </ul>
독성평가연구부 (해당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해물질의 특성, 인체 위해성</li> </ul>

< 시험법 적용 확인 >

□ 시험법 부재시 고려사항

○ 대상별 시험법 적용 원칙

- 식품공전 상 시험법이 수재되어 있지 않아 별도의 시험법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항을 순차적으로 적용

- ① Codex 등의 국제관련 기구의 시험법
- ② AOAC(Association of official analytical Chemists)와 같은 공정서나 미국 FDA의 PAM(Pesticide Analytical Manual) 및 BAM(Bacteriological Analytical Manual)과 같은 해외 정부기관 시험법
- ③ 국외 저명 학술지(SCI)에 수록된 논문
- ④ 식약처 자체확립 또는 개발 시험법

대상성분	우선순위			
	1	2	3	4
잔류물질	국제공정서 (AOAC)	국외기관 시험법 (미국 FDA의 PAM, 일본후생노동성)	국외저명학술지 논문(SCI)	자체확립 시험법
오염물질	국제공정서 (AOAC)	국외기관 시험법	국외저명학술지 논문(SCI)	자체확립 시험법
미생물	Codex, AOAC, ISO	국외기관 시험법 (미국 FDA의 PAM, 미국 CDC의 DPDx)	국외저명학술지 논문(SCI)	자체확립 시험법
식품첨가물	국외기관 시험법 (일본후생노동성, 미국 AOAC 등)	-	-	자체확립 시험법 (학술지(SCI) 검토 포함)
용기·포장	국외기관 시험법 (일본후생노동성, 유럽 CEN 등)	-	-	자체확립 시험법 (학술지(SCI) 검토 포함)
이물	국제공정서 (AOAC)	일본후생노동성 시험법	국외저명학술지 논문(SCI)	자체확립 시험법
GMO	국제공정서 (Codex, AOAC, ISO)	국외기관 시험법 (JRC, 일본후생노동성)	국외저명학술지 논문(SCI)	자체확립 시험법

□ 시험법 확립 검증시 고려사항

시험법 검증은 회수율 및 정량한계 제시, 검량선 작성 등을 기본으로 함. 이에 따라 시험대상 검체는 검출된 검체 또는 유사 검체에 한정함

미생물의 경우 정성 및 정량분석에 따른 검증시험 가능(단, 일부 세균 및 노로 바이러스는 정량분석 불가)

### 2.2.6. 최초 조치결과 보고(206쪽 참조)

- 상황점검회의에서 논의한 조치방향 신속 조치 수행
- 기준검토 등 준비시간이 필요한 경우, 수거·검사 등 신속 조치 후에 추가 사항 검토
- 「경계·심각」의 경우 신속히 긴급대응회의 소집 건의

### 2.2.7. 최초 조치결과 보고이후 후속 진행사항 준비

- 검사결과 부적합시 조치할 사항 검토
  - 당해 제품 회수·폐기 또는 수입·제조·유통 판매금지 여부 등
- 유해물질 검출 대비 보도자료 작성 및 Q&A 준비
- 청와대, 국무조정실 등 관계기관 보고
- 농식품부 등 관계기관과 상황진행 및 정보 공유

### 2.2.8. 전문가 자문

-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또는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자문
  - 기준 적용, 잠정 유통·수입 중단 등 법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심의위원회 자문
- 일반적인 참고사항 등 신속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컨퍼런스 콜 활용



### 2.2.9. 보도자료 배포 및 대국민 홍보(208쪽 참조)

- 국내유통 또는 수입단계 위해물질 검출시 보도자료 배포
  - 단, 보도자료 배포시기·배포방법 등은 대변인실과 협의
- 보도자료에 포함할 내용
  - 검사경위 및 수거·검사 결과(총 검사건수 중 부적합 건수)
  - 부적합 제품 내역 및 회수·폐기, 수입·판매 중단 등 조치사항
  -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 당해 제품 구입시 섭취자제 등 소비자 유의사항

### 2.2.10. 언론브리핑(224쪽 참조)

- 국민건강과 밀접한 주요 현안사항 발생으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때 실시
  - 취재진에게 충분한 지식과 이해 전달이 필요한 경우
  - 배경설명을 충분하지 않을 경우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의 경우
- 브리핑 발표자 : 사건사고 관련 국장
  - ※ 반복적 발생 사례가 있는 경우 : 해당과장 수행

### 2.2.11. Q&A 작성(221쪽 참조)

- 새로운 위해물질, 많은 계층이 관련된 경우에는 보도자료와 함께 Q&A 자료 배포
- Q&A 작성시 포함할 주요내용
  - 위해물질 일반적 특성, 인체 위해성 여부
  - 식품중에 사용가능여부 및 안전기준
  - 식품에서 위해물질 검출원인 또는 사용 이유
  - 소비자의 안전한 재료 선택·구입 방법 등

## 제3절 긴급대응회의 개최

### 2.3.1. 개최 요건

- 「상황점검회의」 결과를 보고받은 처·차장이 긴급대응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위해정보분석 결과 위기수준이 「경계」 이상으로 확실한 경우 상황점검회의 없이 긴급대응회의를 개최
-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에서 회의 소집
  - ※ 위해정보 내용에 따라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에서 참석대상을 조정

### 2.3.2. 구성

- 구성 : 차장(주재, 필요시 처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및 각 국 국장, 식품기준기획관, 식품위해평가부장,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장, 소통협력과장, 위해정보과장, 본부 및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관련 부서 과장, 대변인, 운영지원과장

### 2.3.3. 검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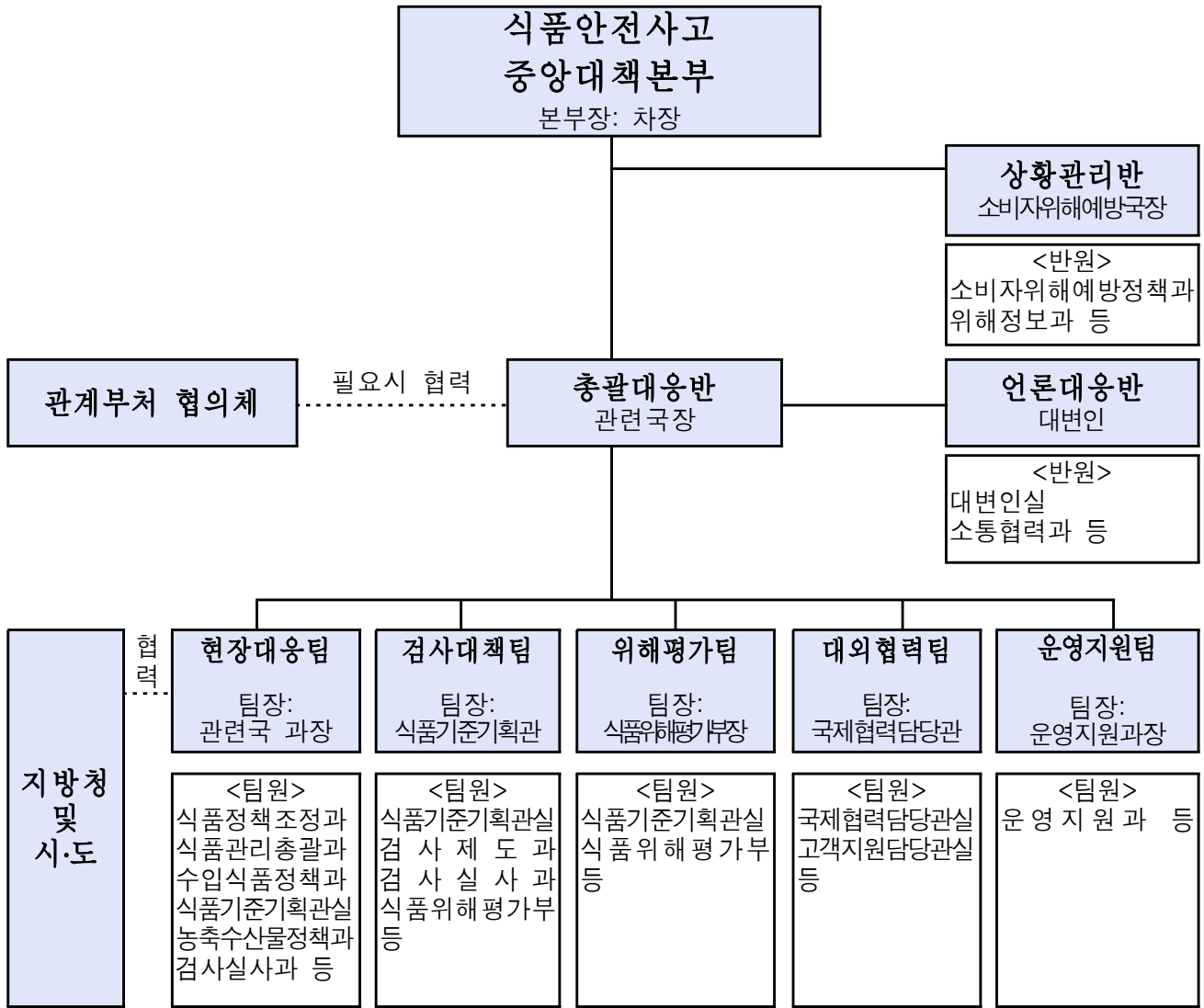
- 정보의 심각성, 예상피해 범위, 확산가능성,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동향 등을 종합 고려하여 위기수준(「관심」, 「주의」, 「경계」, 「심각」) 판단, 대응방향, 위기경보 발령,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 구성·운영방법 검토
  - 「관심」 또는 「주의」 단계로 판단될 경우 관련국장 중심으로 대응조치
  - 「경계」 또는 「심각」 단계로 판단될 경우 위기경보 발령 및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 구성·운영

## 제4절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 운영

### 2.4.1. 설치요건 및 조직

- 설치요건 : 「경계·심각」에 해당하는 경우 구성·운영
- 구성 : 차장(본부장, 필요시 처장), 3반5팀 체제
  - ※ 총괄대응반장은 긴급대응회의에서 관련국장 중 1인 지명을 원칙으로 함
- 역할
  - 위기 시 체계적·효율적 대응을 위한 컨트롤 타워 기능 수행
    - ※ 긴급대응 및 의사결정 기구 역할 수행
- 운영
  - 상황에 따라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 조직을 축소 또는 확대하여 운영 가능
  - 지속적, 체계적 관리 및 대응을 위한 일일상황보고체계 구축
    - 위기 종결 시까지 ‘일일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 각 팀별로 당일 16:00까지 일일상황보고서를 작성하고 상황관리반은 이를 취합하여 전체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당일 조치사항, 주요 부처·여론·제외국 등 동향, 향후 조치계획)
  - 효율적인 위기대응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상주·비상주 등 인사발령
    - 팀장 및 팀원은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와 총괄대응반장이 협의하여 운영지원과에 발령 요청
  - 각 부서 사무관/주무관으로 팀원 구성(필요시 과장 참석)
  - 필요 시 중앙대책본부 전용 합동 사무실, 컴퓨터, 인터넷, 팩스, 전화 등 설치

## 〈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 조직도 〉



- ※ 식중독 사고의 경우 상황점검회의 없이 즉시 대책본부를 가동
- ※ 지방청 및 시도 관련 부서는 각 팀과 협조·협력체계 구축
- ※ 식품등 사고 종류, 위기형태 등에 따라 총괄대응반 아래 대응팀을 확대 또는 축소 등 변경 가능

## 2.4.2.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 팀별 임무

구 분		역 할
본부장(차장) (필요시 처장 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 총괄·지휘</li> <li>■ 위기대응 수위결정 및 관련 부처간 협조 요청</li> </ul>
상황관리반 (소비자위해예방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 내 관련 팀 업무 진행상황 관리</li> <li>■ 일일 상황 작성 및 보고</li> <li>■ 위기경보 발령</li> </ul>
언론대응반 (대변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보계획 수립, 미디어 센터 설치 및 운영</li> <li>■ 위기관련 언론 및 여론 모니터링</li> <li>■ 보도자료 배포 및 대국민 정보 제공</li> <li>■ 유해물질 Q&amp;A 등 교육 홍보 자료 작성 배포</li> </ul>
총괄대응반 (관련국장)	현장대응팀 (관련국 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거·검사, 회수·압류·폐기 총괄</li> <li>■ 수입·유통·판매 (잠정) 금지 조치 및 정보 공개</li> <li>■ 일일 상황관리 및 지방청, 시·도 총괄</li> </ul>
	검사대책팀 (식품기준기획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준 및 시험법 확립</li> <li>■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또는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심의·의결</li> </ul>
	대외협력팀 (국제협력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부처 및 국제통상 등 협력 업무</li> <li>■ 관련 법령 검토, 제도개선 등 법제업무 지원</li> <li>■ 이해관계자와의 정보교류</li> </ul>
	위해평가팀 (식품위해평가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험법 작성 및 교육</li> <li>■ 유해물질에 대한 위해평가 총괄</li> <li>■ 시험분석기관 기술적 지원 및 조정·통제</li> </ul>
	운영지원팀 (운영지원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대응 지원업무 총괄</li> <li>■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시설·인력·물자 지원</li> <li>■ 소비자·산업체 전화대응 업무지원(Hot-line 개설)</li> </ul>

### 2.4.3.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 팀별 주요 조치사항

분야별 주요 대책본부 조직	수입·유통· 판매 금지 조치	홍보 및 전파
상황관리반 (소비자위해예방국장)	- 총괄 파악 - 상부 보고 - 비상 연락	- 인터넷동향 모니터링 및 대응
언론대응반 (대변인)	- 보도자료 배포 - 언론 및 여론 동향 파악	- Q&A 배포 - 주의사항, 올바른 정보 등 게시 - 보도자료 배포 - 부정확한 언론 보도시 신속 대응
총괄대응반 (관련 국장)	- 총괄 대응	- 총괄 대응
현장대응팀 (관련국 주무과장)	- 현장조사 - 대상품목 결정 - 수거·검사 계획수립	- 관련 협회, 업체 등에 사실 통보 - 문자메시지 전파 - TV 자막광고 요청 - 화상회의 개최
검사대책팀 (식품기준기획관)	- 교육 홍보자료 작성 - 보도자료 작성	- 검사기관 현황파악 및 준비
대외협력팀 (국제협력담당관)	- 유관기관통보 - 제외국 동향 파악	- 소비자신고 센터 운영
위해평가팀 (식품위해평가부장)	- 위해평가 실시	
운영지원팀 (운영지원과장)	- 책상, 전화 컴퓨터 등 지원	- 화상회의 지원
지방청 시·도	- 현장확인 및 보고	- 관내 유통업체 등 홍보 및 현장점검

수거·검사	회수, 압류, 폐기 및 행정처분	해제 및 종결
- 총괄관리	- 총괄관리	- 중앙대책본부 해제 - 백서 또는 보고서 작성
- 언론 취재지원 및 대응	- 진행상황 등 대국민 홍보	-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 총괄 대응	- 총괄 대응	- 총괄 대응
- 수거·검사 계획 시행 및 현황 관리	- 회수, 압류, 폐기 대상 현황 파악	- 국회 및 관련기관에 대응상황 종합 보고, - 종합 대책 마련
- 기준 및 시험법 적용 검토 - 검사지원	- 부적합 식품 사진 제공	- 기준·규격 제·개정 현황 종합 보고
- 소비자신고 센터 운영	- 소비자신고 센터 운영	- 제도 개선 검토 - 제외국 동향 파악
- 시험법 교육 및 표준품 분양 - 부적합 결과 취합 분석 - 검사지원 및 검사결과에 대한 위해평가	- 위해평가 보고서 작성	- 제외국 위해평가 동향 파악
- 차량, 인력, 예산 등 지원	- 차량, 인력, 예산 등 지원	- 인력, 물자 등 재배치
- 수거·검사 실시 - 수거·검사 결과 보고	- 행정처분 실시	- 현장정보 입수 및 보고

#### 2.4.4. 관계부처 협의체

○ 위기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부서)에 위기관리활동에 대해 협조 요청

< 관계부처 주요 기능 >

관련부처 (기관)	기 능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긴급대응조치의 결정 및 중대 식품안전 사고의 종합대응방안 수립</li> <li>■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안전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li> <li>■ 부처별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한 조정</li> <li>■ 범정부 ‘식품안전사고 긴급대응단’ 설치 및 운영</li> <li>■ ‘식품안전정책위원회’ 개최 및 위원회의 긴급 대응 지원</li> </ul>
농림축산식품부 (소비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단계 농·축산물 안전관리 및 점검</li> </ul>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관리 및 점검</li> </ul>
교육부 (학생건강안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급식 안전관리 및 학교주변 위해식품 점검</li> </ul>
안전행정부 (자치행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요시 긴급검사, 회수폐기 등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업무 협조</li> </ul>
관세청 (통관기획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우편, 수입통관과정 등 수입 위해식품 확인 및 차단</li> </ul>



## 2.4.5. 위기경보 발령

### 2.4.5.1. 발령 원칙

- 위기경보 수준 평가 시 위기상황의 심각성, 시급성, 확대 가능성, 확산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국내·외 여론, 정부의 대응능력 등을 고려하여 평가
- 「경계」 또는 「심각」 단계 위기경보는 긴급대응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고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에서 내·외부로 발령하며, 「관심」, 「주의」는 외부에는 발령하지 않음
  - 「주의」 단계 이상에 해당하는 위기경보는 ‘START-식품의약품안전처 경보 예상정보 공유시스템’을 활용하여 발령
  - 「관심」 단계는 위해정보과 등 정보수집부서에서 해당 사업부서에 ‘온나라 메모보고’로 통보
    - ※ 식중독 사고 발생 위기형태와 관련한 「관심」, 「주의」 경보는 식중독 예방과에서 자체적으로 발령
- 「경계」 이상 위기경보 발령시 청와대, 국무조정실 및 관련기관에 신속히 보고(통보)하고, 「심각」 단계 위기경보 발령시에는 정부차원의 위기대응이 필요한 경우로서 상급기관(청와대, 국무조정실 등)과 반드시 사전 협의한 후 경보 발령
- 위기경보 수준(「경계」 → 「심각」, 「심각」 → 「경계」)을 수정 또는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청와대, 국무조정실 등과 사전 협의를 통해 조정
- 대국민 위기경보
  - 보도자료 배포, 언론 브리핑
  -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대국민 경보 발령 협조 요청

### 2.4.5.2. 발령 방법 및 절차

#### < 위기경보 발령 주체 및 수단 >

구분	발령주체	수 단	대 상
관심	위해정보과, 정보수집부서	(내부) 온나라 메모보고	관련부서 과장, 사무관, 주무관
주의	위해정보과, 정보수집부서	(내부) 위기경보 발령 - START-식약처 경보예상정보 공유시스템에 의한 공지	전 직원
경계	소비자위해 예방정책과	(외부) 발령문 및 공문 배포(상황관리반) 보도자료 배포(언론대응반)	관련기관, 지자체, 한국소비자원 등 일반국민
		(내부) 위기경보 발령 - START-식약처 정보예상정보 공유시스템에 의한 공지	전 직원
		(보고) 자료작성 및 보고 (상황관리반)	청와대(위기관리센터, 고용복지수석실), 국무조정실
심각	소비자위해 예방정책과	(외부) 발령문 및 공문 배포(상황관리반) 보도자료 배포(언론대응반)	관련기관, 지자체, 한국소비자원 등 일반국민
		(내부) 위기경보 발령 - START-식약처 경보예상정보 공유시스템에 의한 공지	전 직원
		(사전협의) 자료작성 및 협의 (구두, 서면)(상황관리반)	청와대(위기관리센터, 고용복지수석실), 국무조정실

□ 「관심」 단계에 해당하는 경우

- 위해정보를 수집·분석 결과, 사업부서에서 초동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위해정보과 또는 위해정보 수집 부서에서 ‘온나라 메모보고’로 해당 사업  
부서에 신속 전파
- 대상 : 관련 부서 과장, 사무관(연구관), 주무관까지 통보
- 조치사항 : 해당 사업부서에서 판단하여 필요 시 현장점검, 수거·검사,  
수입·유통단계 검사강화 조치 등 실시

□ 「주의」 단계에 해당하는 경우

- ‘START-식품의약품안전처 경보예상정보 공유시스템’을 활용한 위기경보  
발령하고, 「주의」 단계는 위기경보 발령은 내부직원으로 제한

< 참고 : 경보예상정보 전파 >

- 「주의」 단계 이상에 해당되는 위해정보를 수집한 부서는 신속히 경보예상정보 전파
- 국내·외 위해정보는 위해정보과에서, 사업부서에서 취득한 위해정보는 해당정보  
취득부서에서 직접 전파
- 전파대상은 본부의 처·차장, 각 국·부장 및 소속기관 장(이상 고위공무원단)과  
식품분야 모든 부서,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위해정보과, 소통협력과, 대변인실  
(이상 과장 및 사무관), 평가원 식품위해평가부장 및 식품위해평가과(과장 및  
연구관)
- ※ 「주의」 단계 대응회의 : 상황점검회의 개최

□ 「경계」 / 「심각」 단계에 해당하는 경우

- 긴급대응회의에서 「경계」 또는 「심각」 단계로 판단한 경우 위기경보 발령  
및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 구성

- 식품사고 위기경보 발령문 배포

·대상 : 청와대(위기관리센터, 고용복지수석실), 국무조정실, 관계부처

·발령문(부록 1. 공문서 등 서식 제23호) 작성하여 팩스 및 메일로 배포(대책  
본부 상황관리반)

- 공문 발송

·대상 : 지자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및 관련협회(대책본부 상황관리반)

- 보도자료 배포

·대상 : 일반국민(대책본부 언론대응반)

- 청와대, 국무조정실에 보고자료 작성 및 보고(대책본부 상황관리반)

○ 내부 전파는 ‘START-식품의약품안전처 경보예상정보 공유시스템’에 의한  
「주의」 단계 전파방법과 동일

### < 「관심」 단계 온나라 메모보고 >

예시)

메모작성

의견알림 | 서식선택 | 보고 | 임시저장 | 닫기

제목 \* [경보단계 : 관심] ○○산 ○○○에서 ○○○ 검출  긴급

과제카드명 \* 단위: 관리

관련정보

수신자 \* 관련부서 과장, 사무관(연구관), 주무관  수신자변경 가능

보고  참조

FONT 2 | B | I | U | T | H | L | R | S | A | E | M | O | P | S | R | T | F | C | E | R | T | I | F | I | C | A | T | E | D | I | N | T | E | L | L | I | G | E | N | C | E | | 미리보기

□ 제목

□ 정보내용 및 수집경로

□ 정보분석내용(선택사항)

- 국내 제조/수입 및 유통 여부(통계자료 포함), 국내외 기준 유무
- 유해물질의 특성, 인체위해성, 유해물질의 검출원인 및 사용목적
- 제외국 관리현황, 과거 유사사례

공개여부 \* 비공개

공개제한부분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첨부

의견알림 | 서식선택 | 보고 | 임시저장 | 닫기

< 경보예상정보 전파/위기경보 발령 방법 (「주의」, 「경계」, 「심각」) >

- ① START-식품의약품안전처 → 「주요공지」 코너 → 하단의 「글쓰기」 클릭
- ② 제목 : 제목을 보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하게 작성  
예시) [주의 예상정보 공유] ○○산 ○○에서 ○○물질 과다 검출
- ③ 우측상단의 「긴급경보」를 체크하고, 「SMS 내용」에 상기 제목 수준으로 간단히 작성한 후 「SMS 보내기」를 체크
- ④ 본문작성
  - 정보수집 내용, 정보수집 경로
  - 국내 제조/수입 및 유통 여부(수입, 유통 시 통계자료 포함), 국내외 기준 유무
  - 유해물질 특성, 인체위해성, 유해물질의 검출원인 및 사용목적(의도적·비의도적)
  - 제외국 관리현황, 과거 유사사례 등
- ⑤ 하단의 「저장」을 클릭

※ 위기경보 발령은 경보예상정보시스템을 활용 다만, 우측상단의 「긴급 경보」는 체크하지 않고 게재함

예시 1) 내부 경보예상정보 전파

**주요공지**

제목	[주의예상 정보공유] ○○시, ○○○ 물질 유출사고 발생	긴급경보 <input checked="" type="checkbox"/>
SMS 내용	[주의예상 정보공유] ○○시, ○○○ 물질 유출사고 발생	SMS보내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등록일	2013-11-28	
부서	소비자위해예방청	
작성자	조수진	

포맷 | 폰트 Arial | 글자 크기 | 소스

□ 제목 : ○○시, ○○○ 물질 유출사고 발생

□ 정보내용

- 사고발생 지역 및 일시
- 사고발생 원인
- 유해물질 종류 및 유출량 등 피해상황
- 방제조치 현황 등

□ 정보 분석 내용

- 유해물질 특성, 인체위해성
- 국내외 기준 설정 유무 등 관리현황

파일업로드 |  전체선택 | 추가 | 삭제 | **저장** | 목록

예시 2) 내부 위기경보 발령

**주요공지**

제목	[주의] ○○제품에서 ○○○ 물질 과다 검출	긴급경보 <input type="checkbox"/>
등록일	2014-01-17	
부서	소비자위해예방청	

## 2.4.6. 언론대응 조치

### 2.4.6.1. 위기경보 단계별 커뮤니케이션 메시지 맵

대상 \ 단계	목 표	관심	주의
언론	주요 메시지 내용	- 위해우려제품 수거 검사 또는 조사 계획	- 검사결과 및 조치 계획(필요시) - 잠정유통판매 금지 대상 제품 안내
	방법	보도자료 및 인터뷰 ( 담당과장)	보도자료 및 인터뷰 ( 담당과장)
일반 국민	주요 메시지 내용	-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신속 수거 검사(조사) 계획	- 유해물질 검출제품 섭취 중단하고, 검사중 제품은 그 결과 확인 후 섭취
	방법	보도자료 또는 홈페이지 공개 (제품명, 사진)	보도자료 또는 홈페이지, 홍보자료
소비자 단체	주요 메시지 내용	-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신속 수거 검사(조사) 추진	- 잠정유통판매금지 대상제품확인안내 - 안전한 식품 구입 요령 - 단체 홈페이지 활용
	방법	일일상황 보고자료	일일상황 보고자료
관련업체 (제조·판매)	주요 메시지 내용	- 위해우려제품 수거 검사 또는 조사 배경	- 잠정유통판매금지 대상 제품 제조·판매중단 요청 - 자진 회수 권고
	방법	일일상황 보고자료	일일상황 보고자료 문자메시지
관련단체 (협회 등)	주요 메시지 내용	-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신속 수거 검사(조사) 추진	- 관련 제품 제조·판매중단 요청 - 자진 회수 권고
	방법	일일상황 보고자료	일일상황 보고자료, 홍보자료

대상 \ 단계	목 표	경계	심각
언론	주요 메시지 내용	- 중앙대책본부 구성 운영 - 검사결과 및 조치계획	- 중앙대책본부 구성 운영 - 검사결과 및 조치계획
	방법	브리핑(국장)	브리핑(처장)
일반 국민	주요 메시지 내용	- 안전한 식품 구입 요령 - 판매금지 대상 제품 판매 시 제보	- 안전한 식품 구입 요령
	방법	공중파 및 온라인 광고, 보도자료 배포	공중파 및 온라인 광고, 기고문 게재
소비자 단체	주요 메시지 내용	- 안전한 식품 구입 요령 - 포럼 등 개최	- 안전한 식품 구입 요령
	방법	일일상황 보고자료	일일상황 보고자료
관련업체 (제조·판매)	주요 메시지 내용	- 잠정유통판매금지 대상 제품 제조·판매중단 요청 - 회수 권고	- 잠정유통판매금지 대상 제품 제조·판매중단 요청 - 원인 규명 및 개선 요청
	방법	일일상황 보고자료 문자메시지	일일상황 보고자료 문자메시지
관련단체 (협회 등)	주요 메시지 내용	- 관련 제품 제조·판매중단 요청	- 관련 제품 제조·판매중단 요청 - 원인규명 및 개선 요청
	방법	일일상황 보고자료, 홍보행사	일일상황 보고자료

## 2.4.6.2. 위기유형별 커뮤니케이션 메시지 및 홍보 수단

### 위기형태 1 수입전 단계에서 유해 물질에 의한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 ▶ 발생상황

- ○○국가에서 멜라민 함유 이유식을 먹은 영아 신장결석 발생

위기수준	주요 조치사항	핵심 메시지	홍보수단
<b>관심</b>	- 상황 및 조치계획 보고 - 대국민 홍보활동 시작	- 위해정보 설명 - 해당 관련제품 수거검사 진행중 - 검사 결과 확인전까지 잠정 유통판매금지	- 보도자료 배포 - 언론문의에 대한 대응
	- 국내 미디어 동향 파악 및 대응 - 검사결과 발표	- 검사결과 검출 유무 - 위해성 여부 - 수입생산단계에서 검사 강화	- 보도자료 배포 - 홈페이지 공개
<b>주의</b>	- 주기적인 상황 브리핑 - 상담센터 및 대표번호(1399) 운영으로 집중 민원상담	- 검사 및 조치 진행 현황 - 상담센터 및 대표번호 안내	- 언론 브리핑 - Q&A 자료 배포 - 대국민 홍보자료 배포 - 상담센터 및 대표번호(1399) 운영을 통한 민원상담
<b>경계</b>  <b>심각</b>	- 추측성 기사를 통한 언론 오보 대응	- 검사 및 조치 진행 현황 - 안전관리 대책 - 상담센터 및 대표번호 안내	- TV 자막 광고 - 인터넷 포털 광고 - 기고문 게재(내외부 전문가 활용) - 관련 협회, 업계를 통한 홍보행사 개최
<b>상황 종료시</b>	- 사후복구 홍보내용 계획 수립	- 추후 정부는 위해물질 검사를 강화할 것임	- 공중파 인터뷰 및 출연을 통한 상황 종료 전달 (시사정보 프로그램 등) - 유관기관과 합동 브리핑 (필요시)



## 위기형태 2 수입·통관단계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

### ▶ 발생상황

- 수입·통관단계에서 발암물질 아플라톡신 검출 확인

위기수준	주요 조치사항	핵심 메시지	홍보수단
<b>관심</b>	- 상황 및 조치계획 보고 - 대국민 홍보활동 시작	- 위해정보 설명 - 해당 관련제품 수거검사 진행중 - 검사 결과 확인전까지 잠정 유통판매금지	- 보도자료 배포 - 언론문의에 대한 대응
	- 국내 미디어 동향 파악 및 대응 - 검사결과 발표	- 검사결과 검출 유무 - 위해성 여부 - 수입생산단계에서 검사 강화	- 보도자료 배포 - 홈페이지 공개
<b>주의</b>	- 주기적인 상황 브리핑 - 상담센터 및 대표번호(1399) 운영으로 집중 민원상담	- 검사 및 조치 진행 현황 - 상담센터 및 대표번호 안내	- 언론 브리핑 - Q&A 자료 배포 - 대국민 홍보자료 배포 - 상담센터 및 대표번호(1399) 운영을 통한 민원상담
<b>경계</b>  <b>심각</b>	- 추측성 기사를 통한 언론 오보 대응	- 검사 및 조치 진행 현황 - 안전관리 대책 - 상담센터 및 대표번호 안내	- TV 자막 광고 - 인터넷 포털 광고 - 기고문 게재(내외부 전문가 활용) - 관립 협회, 업계를 통한 홍보행사 개최
<b>상황 종료시</b>	- 사후복구 홍보내용 계획 수립	- 추후 정부는 유해물질 검사를 강화할 것임	- 공중파 인터뷰 및 출연을 통한 상황 종료 전달 (시사정보 프로그램 등) - 유관기관과 합동 브리핑 (필요시)

**위기형태 3** 생산단계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

▶ 발생상황

- 농작물 재배단계에서 기준치 초과한 중금속 검출 확인

위기수준	주요 조치사항	핵심 메시지	홍보수단
<b>관심</b>	- 상황 및 조치계획 보고 - 대국민 홍보활동 시작	- 위해정보 설명 - 해당 관련제품 수거검사 진행중 - 검사 결과 확인전까지 잠정 유통판매금지	- 보도자료 배포 - 언론문의에 대한 대응
	- 국내 미디어 동향 파악 및 대응 - 검사결과 발표	- 검사결과 검출 유무 - 위해성 여부 - 수입생산단계에서 검사 강화	- 보도자료 배포 - 홈페이지 공개
<b>주의</b>	- 주기적인 상황 브리핑 - 상담센터 및 대표번호(1399) 운영으로 집중 민원상담	- 검사 및 조치 진행 현황 - 상담센터 및 대표번호 안내	- 언론 브리핑 - Q&A 자료 배포 - 대국민 홍보자료 배포 - 상담센터 및 대표번호(1399) 운영을 통한 민원상담
<b>경계</b>  <b>심각</b>	- 추측성 기사를 통한 언론 오보 대응	- 검사 및 조치 진행 현황 - 안전관리 대책 - 상담센터 및 대표번호 안내	- TV 자막 광고 - 인터넷 포털 광고 - 기고문 게재(내외부 전문가 활용) - 관립 협회, 업계를 통한 홍보행사 개최
<b>상황 종료시</b>	- 사후복구 홍보내용 계획 수립	- 추후 정부는 유해물질 검사를 강화할 것임	- 공중파 인터뷰 및 출연을 통한 상황 종료 전달 (시사정보 프로그램 등) - 유관기관과 합동 브리핑 (필요시)

**위기형태 4** 제조·가공·유통단계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

▶ 발생상황

- 유통단계에서 수단색소 검출 확인

위기수준	주요 조치사항	핵심 메시지	홍보수단
<b>관심</b>	- 상황 및 조치계획 보고 - 대국민 홍보활동 시작	- 위해정보 설명 - 해당 관련제품 수거검사 진행중 - 검사 결과 확인전까지 잠정 유통판매금지	- 보도자료 배포 - 언론문의에 대한 대응
	- 국내 미디어 동향 파악 및 대응 - 검사결과 발표	- 검사결과 검출 유무 - 위해성 여부 - 수입생산단계에서 검사 강화	- 보도자료 배포 - 홈페이지 공개
<b>주의</b>	- 주기적인 상황 브리핑 - 상담센터 및 대표번호(1399) 운영으로 집중 민원상담	- 검사 및 조치 진행 현황 - 상담센터 및 대표번호 안내	- 언론 브리핑 - Q&A 자료 배포 - 대국민 홍보자료 배포 - 상담센터 및 대표번호(1399) 운영을 통한 민원상담
<b>경계</b>  <b>심각</b>	- 추측성 기사를 통한 언론 오보 대응	- 검사 및 조치 진행 현황 - 안전관리 대책 - 상담센터 및 대표번호 안내	- TV 자막 광고 - 인터넷 포털 광고 - 기고문 게재(내외부 전문가 활용) - 관립 협회, 업계를 통한 홍보행사 개최
<b>상황 종료시</b>	- 사후복구 홍보내용 계획 수립	- 추후 정부는 유해물질 검사를 강화할 것임	- 공중파 인터뷰 및 출연을 통한 상황 종료 전달 (시사정보 프로그램 등) - 유관기관과 합동 브리핑 (필요시)

**위기형태 5** 식중독이 다수 발생하거나 식중독 확산우려가 있는 경우

▶ 발생상황

- ○○식자재 공급업소에서 공급받은 학교 및 회사 급식소에서 동일한 증상을 보이는 환자 다수 발생

위기수준	주요 조치사항	핵심 메시지	홍보수단
<b>관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황 및 조치계획 보고</li> <li>- 대국민 홍보활동 시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중독 발생 상황 설명</li> <li>- 원인 규명을 위한 역학 조사 실시중</li> <li>- 공급 제품 수거·검사중</li> <li>- 식자재 공급업소 및 집단 급식소 잠정 급식 중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도자료 배포</li> <li>- 언론문의에 대한 대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미디어 동향 파악 및 대응</li> <li>- 검사결과 발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결과 발표</li> <li>- 향후 조치계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도자료 배포</li> <li>- 홈페이지 공개</li> </ul>
<b>주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기적인 상황 브리핑</li> <li>- 상담센터 및 대표번호(1399) 운영으로 집중 민원상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사 및 조치 진행 현황</li> <li>- 상담센터 및 대표번호 안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론 브리핑</li> <li>- Q&amp;A 자료 배포</li> <li>- 대국민 홍보자료 배포</li> <li>- 상담센터 및 대표번호(1399) 운영을 통한 민원상담</li> </ul>
<b>경계</b> <b>심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측성 기사를 통한 언론 오보 대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사 및 조치 진행 현황</li> <li>- 안전관리 대책</li> <li>- 상담센터 및 대표번호 안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고문 게재(내외부 전문가 활용)</li> </ul>
<b>상황 종료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후복구 홍보내용 계획 수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중독 관리대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중과 인터뷰 및 출연을 통한 상황 종료 전달 (시사정보 프로그램 등)</li> <li>- 유관기관과 합동 브리핑 (필요시)</li> </ul>

**위기형태 6** 언론, 소비자 단체 등에서 식품안전 관련 이슈를 제기한 경우

▶ 발생상황

- 유기농 영유아용 식품에 대한 GMO 성분 검사결과 일부 제품 검출 기획 보도(언론사)

위기수준	주요 조치사항	핵심 메시지	홍보수단
<b>관심</b>	- 상황 및 조치계획 보고 - 대국민 홍보활동 시작	- 해당 관련제품 포함 유기농 제품 수거검사 진행중	- 보도자료 배포 - 언론문의에 대한 대응
	- 국내 미디어 동향 파악 및 대응 - 검사결과 발표	- 검사결과 검출 유무 - 관련 규정 설명(위해성 여부) - 수입생산단계에서 검사 강화	- 보도자료 배포 - 홈페이지 공개
<b>주의</b>	- 주기적인 상황 브리핑 - 상담센터 및 대표번호(1399) 운영으로 집중 민원상담	- 검사 및 조치 진행 현황 - 국내외 관련 동향 - 상담센터 및 대표번호 안내	- 언론 브리핑 - Q&A 자료 배포 - 대국민 홍보자료 배포 - 상담센터 및 대표번호(1399) 운영을 통한 민원상담
<b>경계</b>  <b>심각</b>	- 추측성 기사를 통한 언론 오보 대응	- 검사 및 조치 진행 현황 - 안전관리 대책 - 상담센터 및 대표번호 안내	- TV 자막 광고(필요시) - 인터넷 포털 광고 - 기고문 게재(내외부 전문가 활용)
<b>상황 종료시</b>	- 사후복구 홍보내용 계획 수립	- 추후 정부의 관리 강화 방안	- 공중과 인터뷰 및 출연하여 설명(시사정보 프로그램 등) - 유관기관과 합동 브리핑 (필요시)

### 2.4.6.3. 단계별 언론대응 체크리스트

구 분		체크 리스트	비고
초기단계 (최초 보고)	언론 대응	주요 일간지, 방송 보도 여부, 브리핑/인터뷰 실시 여부	<input type="checkbox"/>
		보도내용의 사실 여부	<input type="checkbox"/>
	여론 반응	국민 / 네티즌의 주요 반응, 업계의 입장 및 동향	<input type="checkbox"/>
		주요 이해관계자(외부전문가/유관기관 등) 반응	<input type="checkbox"/>
대응단계 및 처리단계	언론 대응	부정확한 보도 확산 여부	<input type="checkbox"/>
		해명·설명자료 배포 또는 정정보도 요청 여부 판단	<input type="checkbox"/>
		브리핑 / 인터뷰 실시 여부 판단	<input type="checkbox"/>
	여론 반응	여론 특성(부정적/긍정적/중립적) 확인	<input type="checkbox"/>
		주요 이해관계자의 여론 확산 여부	<input type="checkbox"/>
		국민 / 네티즌 여론 추이 확인	<input type="checkbox"/>
후속조치 단계	언론 대응	해명·설명자료 배포	<input type="checkbox"/>
		정정보도 요청(필요시)	<input type="checkbox"/>
	여론 반응	여론 동향 변화 정도 파악, 정책 홍보 방안	<input type="checkbox"/>
		업계의 반응(행정처분에 대한 수용 정도) 확인	<input type="checkbox"/>



# 제3장 위기상황 및 위기대응 조치사항

제1절 수입전단계 농산물, 가공식품 등에서 유해물질 검출 상황

제2절 수입전단계 수산물, 축산물에서 유해물질 검출 상황

제3절 미승인 GM 검출 상황

제4절 수입단계 농산물, 가공식품 등에서 유해물질 검출 상황

제5절 수입단계 수산물, 축산물에서 유해물질 검출 상황

제6절 이물 검출 상황

제7절 생산단계 유해물질 검출 상황

제8절 제조·가공 단계 축산물에서 유해물질 검출 상황

제9절 제조·가공 단계 가공식품 등에서 유해물질 검출 상황

제10절 식중독 발생 상황

제11절 언론 등에서 이슈제기 상황

제12절 위기대응 조치내용



## [ 위기상황 구분 ]

위기형태	위기상황	비고
수입전 단계 <b>위기형태 1</b>	1. 수입전단계의 농산물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	1절
	2. 수입전단계의 수산물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	2절
	3. 수입전단계의 축산물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	2절
	4. 수입전단계의 가공식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	1절
	5. 수입전단계의 식품첨가물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	1절
	6. 수입전단계의 기구·용기·포장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	1절
	7. 수입전단계에서 미승인 GM 검출된 경우	3절
수입·통관·유통 단계 <b>위기형태 2</b>	8. 수입·통관·유통 단계의 농산물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	4절
	9. 수입·통관·유통 단계의 수산물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	5절
	10. 수입·통관·유통 단계의 축산물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	5절
	11. 수입·통관·유통 단계의 가공식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	4절
	12. 수입·통관·유통 단계의 식품첨가물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	4절
	13. 수입·통관·유통 단계의 기구·용기·포장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	4절
	14. 수입·통관·유통 단계에서 미승인 GM 검출된 경우	3절
	15. 수입·통관·유통 단계에서 이물이 검출된 경우	6절

위기형태	위기상황	비고
생산 단계 <b>위기형태 3</b>	16. 생산 단계의 농산물 또는 수산물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	7절
	17. 생산 단계의 축산물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	7절
	18. 화학유해물질 누출, 대규모 환경오염(해양, 수질)으로 식품에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	7절
제조·가공·유통 단계 <b>위기형태 4</b>	19. 제조·가공·유통 단계의 축산물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	8절
	20. 제조·가공·유통 단계의 가공식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	9절
	21. 제조·가공·유통 단계의 식품첨가물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	9절
	22. 제조·가공·유통 단계의 기구·용기·포장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	9절
	23. 제조·가공·유통 단계에서 미승인 GM 검출된 경우	3절
	24. 제조·가공·유통 단계에서 이물이 검출된 경우	6절
식중독 <b>위기형태 5</b>	25. 대규모 식중독 환자 발생한 경우(풍수해 등 자연재해에 의한 식중독 환자 발생 포함)	10절
언론, 소비자단체 등 이슈제기 <b>위기형태 6</b>	26. 언론, 소비자 단체, 수사기관 등에서 식품안전 관련 이슈를 제기한 경우	11절

※ 6개 위기형태별로 발생될 수 있는 세부분야(가공식품, 농축수산물,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를 26개 위기상황으로 구분 관리

## 제1절 수입 전 단계의 농산물 및 가공식품 등에서 유해물질 검출된 경우

[위기상황 1, 4, 5, 6]

### 4.1.1. 상 황

- 국가의 폐수 방출로 강물이 오염되어 인근 농작물 중금속 과다검출
- 국가에서 멜라민 함유 이유식을 먹은 영아에게 신장결석 발생
- 국가에서 제조 판매되는 폴리카보네이트 재질 주방용구에서 납 과다 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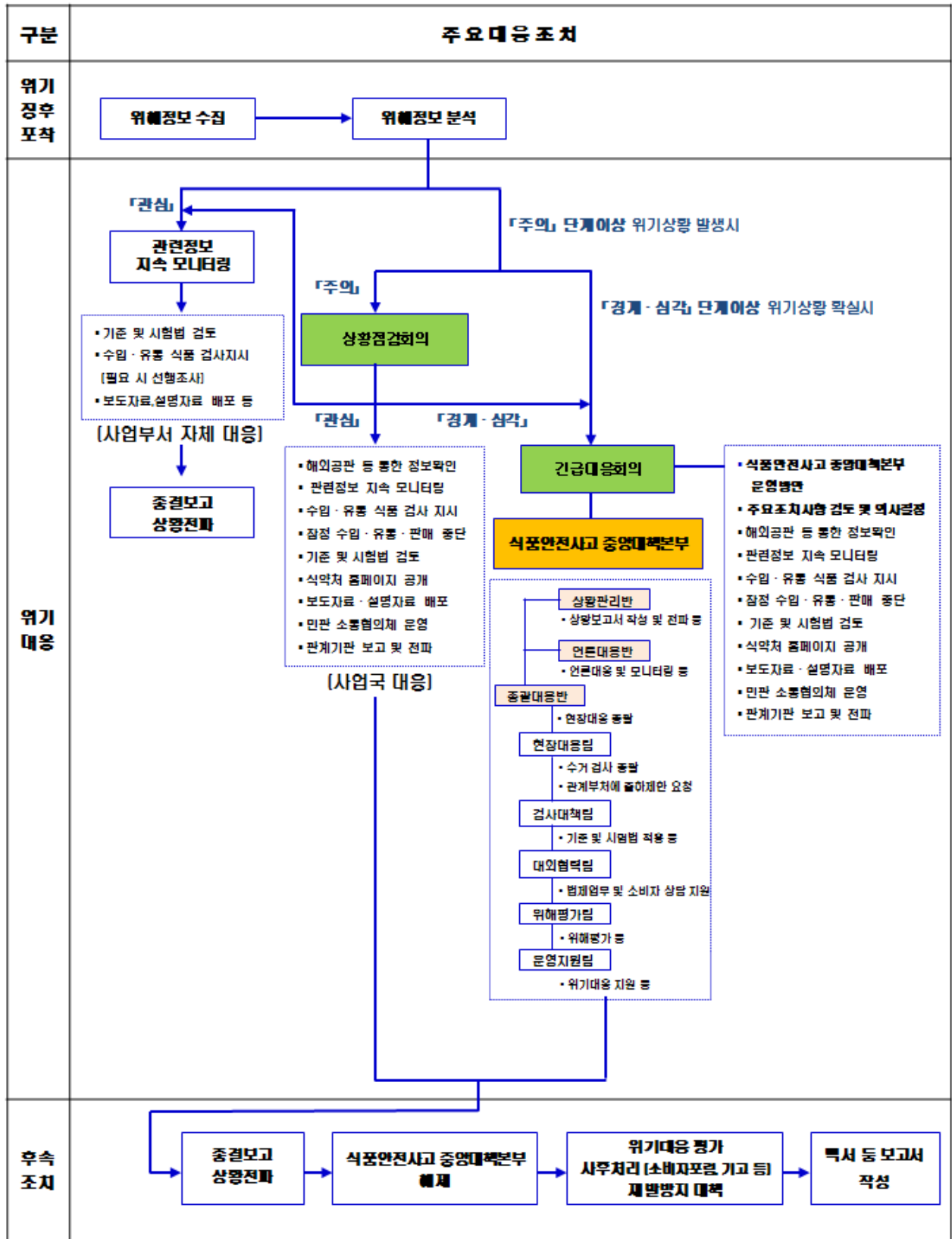
## 4.1.2. 조치사항 및 절차

### 4.1.2.1. 조치목록 총괄

구분	세부내용	담당부서
위기상황접수 및 보고/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해정보 수집·분석</li> <li>○ 경보 예상정보 전파</li> <li>- 위해정보 분석내용 내부 보고 및 전파</li> </ul>	○ 위해정보과, 각 사업부서
대응조치	○ 해외공관을 통한 위해정보 확인 요청	○ 국제협력담당관(위해정보과)
	○ 제외국 동향 등 관련동향 지속 모니터링	○ 위해정보과
	○ 기준미설정 물질인 경우 기준 및 시험법 적용 검토	○ 식품기준기획관
	○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운영(필요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황점검회의 개최</li> <li>○ 선형조사 실시(필요시)</li> <li>○ 긴급대응회의 개최</li> <li>○ 위기경보 발령</li> <li>○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 구성·운영</li> <li>- 국무조정실 식품안전사고 긴급대응단과 동시운영</li> <li>- 관계부처 협의체 회의 개최</li> <li>○ 상황보고(청와대, 국무조정실 등) 및 전파</li> <li>○ 식품위생심의위원회(위해평가 분과) 운영(필요시)</li> </ul>	○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 유통 현황 파악</li> <li>○ 잠정 수입·판매 금지 조치, 수거·검사 실시 및 압류·회수 조치</li> <li>○ 수입·판매·유통 금지 조치 강화</li> <li>○ 일일 상황관리시스템 운영 및 전국 상황 모니터링</li> <li>○ 관계부처에 업무 협조 요청</li> <li>○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또는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운영</li> <li>○ Q&amp;A, 보도자료 등 작성</li> <li>○ 식약처 홈페이지 정보공개</li> </ul>	○ 수입식품정책과, 식품관리총괄과, 농수산물안전과
	○ 소비자 신고센터 운영	○ 고객지원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보계획 수립, 미디어 센터 설치 및 운영</li> <li>○ 언론보도 동향 분석</li> <li>○ 보도자료 배포 및 대국민 대처요령 등 TV, 인터넷 집중홍보</li> <li>○ 해명·설명자료 배포(필요 시)</li> </ul>	○ 대변인실
	○ 민관소통협의체 운영	○ 소통협력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험분석기관 기술 지원</li> <li>○ 시험법안 작성 및 통보</li> <li>○ 위해평가 실시</li> </ul>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구 분	세부내용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거·검사 및 수입단계 검사 실시·보고</li> <li>○ 압류·회수 실시 및 보고</li> </ul>	○ 지방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급식 안전관리 및 학교주변 위해식품 점검</li> </ul>	○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긴급검사, 회수·폐기 등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업무협조</li> </ul>	○ 안행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우편, 수입통관과정 등 수입 위해식품 확인 및 차단</li> </ul>	○ 관세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거·검사 지원 및 부적합 발생 시 신속보고</li> <li>○ 압류·회수 지원 및 보고</li> </ul>	○ 지자체
후속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결보고</li> <li>○ 상황전파</li> <li>○ 위기대응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후처리, 재발방지대책 강구, 백서 또는 보고서 작성</li> </ul> </li> </ul>	○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각 사업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 해제</li> </ul>	○ 운영지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자포럼 운영</li> </ul>	○ 소통협력과

#### 4.1.2.2. 조치절차



### 4.1.2.3. 위기경보 단계별 조치목록

#### < 관 심(Blue) >

○○국가에서 농산물 또는 가공식품 등에서 유해물질 검출 제품의 국내 유통·판매

구 분	담당부서	조치사항	
위기징후 식별	위해정보과 각 사업부서	○ 위해정보 수집·분석	
보고·전파	위해정보과 각 사업부서	○ 위해정보 분석내용 내부 보고 ○ 관련동향 지속 모니터링	
대응조치	본부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 대응체계 점검 ○ 소속기관 및 관계기관과 협조체계 유지 ○ 선행조사(필요시)
		위해정보과	○ 관련 정보 및 동향 지속 모니터링 ○ 제외국 동향 모니터링
		수입식품정책과 (농산물, 가공식품 등)	○ 수입 현황 파악 ○ 수입단계 검사 지시
		식품관리총괄과 (가공식품 등)	○ 유통 현황 파악 ○ 유통 가공식품 등 수거·검사 지시
		식품기준기획관	○ 기준미설정 물질인 경우 기준 및 시험법 적용 검토
		농수산물안전과 (농산물)	○ 국내 농산물 안전성 검사 검토 ○ 유통현황 파악 및 유통가능성 검토 ○ 유통 농산물 수거·검사 지시
		국제협력담당관	○ 해외공관 등 통해 위해정보 내용 확인 요청
		대변인실	○ 언론매체 취재동향 관찰 ○ 언론에 정보제공 및 협조체계 점검 ○ 보도자료 또는 해명·설명자료 배포(필요 시, 소관부서와 협력)
	소속기관	소통협력과	○ 민관소통협의체 운영 검토
	소속기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유해물질 독성자료 등 검토 ○ 시험법 검토
지방청		○ 수거·검사 및 수입단계 검사 실시·보고	
유관기관	관세청	○ 관련제품 정보 공유	
후속조치 (「관심」 단계 종결시)	각 사업부서	○ 종결보고 ○ 상황전파 ○ 위기대응 평가 - 사후처리, 재발방지대책 강구	

< 주 의(Yellow) >

○○국가에서 농산물 또는 가공식품 등에서 유해물질 과다 검출 정보 입수

구 분	담당부서	조치사항	
위기징후 식별	위해정보과 각 사업부서 대변인실	○ 위해정보 수집·분석 ○ 언론보도 동향 분석	
보고·전파	위해정보과 각 사업부서	○ 정보예상정보 전파 - 위해정보 분석내용 내부 보고 및 전파	
대응조치	본부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 상황점검회의 개최 - 기준미설정 물질인 경우 시험법 확립 요청(필요시) - 선형조사 실시(필요시) ○ 상황점검회의 결과 보고 - 상황점검회의에서 「경계」 이상으로 위기 확산 가능성 있는 경우 긴급대응회의 개최 요청 ○ 상황보고 및 전파 ○ 위해평가 분과 식품위생심의위원회운영(필요 시)
		위해정보과	○ 관련동향 지속 모니터링 ○ 제외국 동향 모니터링
		수입식품정책과 (농산물, 가공식품 등)	○ 수입식품 검사 지시 ○ 잠정 수입 중단 조치 필요성 검토 - (잠정) 수입 중단 조치 ○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운영(필요 시)
		식품관리총괄과 (가공식품 등)	○ 잠정 유통 판매 중단 조치 필요성 검토 - (잠정) 유통 판매 중단 조치 ○ 수거·검사 범위 및 계획 검토 - 수거·검사 및 압류·회수 조치 ○ 식약처 홈페이지 정보공개 ○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운영(필요 시)
		식품기준기획관	○ 기준미설정 물질인 경우 기준 및 시험법 검토 ○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운영(필요 시)
		농수산물안전과 (농산물)	○ 수거·검사 범위 및 계획 검토 - 수거·검사 및 압류·회수 조치 ○ 식약처 홈페이지 정보공개 ○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운영(필요 시)
		대변인실	○ 보도자료 배포 또는 해명·설명자료 배포(소관부서와 협력) ○ 언론매체 지원 및 취재동향 관찰
		소통협력과	○ 민관소통협의체 운영
	소속기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유해물질 독성자료 등 특성 검토 ○ 시험법안 작성 및 통보
		지방청	○ 수거·검사 및 수입단계 검사 실시·보고 ○ 압류·회수 실시 및 보고
	유관기관	관세청	○ 국제우편, 수입 통관과정 등 수입 위해식품 확인 및 차단 협조
후속조치 (「주의」 단계 종결시)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각 사업부서	○ 종결보고 ○ 상황전파 ○ 위기대응 평가 - 사후처리, 재발방지대책 강구	



< 경 계(Orange) >

○○국가에서 유해물질 과다 검출된 농산물 또는 가공식품 등이 국내 대량 유통되거나 관련 언론보도가 확산된 경우

구 분	담당부서	조치사항	
위기징후 식별	위해정보과 각 사업부서 대변인실	○ 위해정보 수집·분석 및 위기 확산 정보 파악 ○ 언론보도 동향 파악	
보고·전파	위해정보과 각 사업부서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 경보예상정보 전파 - 위해정보 분석내용 내부 보고 및 전파 ○ 긴급대응회의 개최 요청	
대응조치	본부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 긴급대응회의 개최 ○ 위기경보 발령 ○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 구성 - 국무조정실 식품안전사고 긴급대응단 운영 검토 ○ 긴급대응회의 결과 보고 ○ 상황 보고 및 전파
		위해정보과	○ 관련동향 지속 모니터링 ○ 제외국 동향 모니터링 ○ 위해정보 상시 수집체계 가동
		운영지원과	○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 발령 및 사무실 설치
		상황관리반	○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 내 관련팀 업무 진행상황 관리 ○ 일일 상황 보고서 작성 및 보고 ○ 관계부처 협의체 운영(필요 시) ○ 상황보고 체계 유지 및 협의 - 청와대, 국무조정실 등
		언론대응반	○ 홍보계획 수립, 미디어 센터 설치 및 운영 ○ 언론 및 여론 동향 모니터링 ○ 보도자료 배포 및 대국민 정보 제공 ○ Q&A 등 홍보자료 배포
		총괄대응반	○ 총괄관리
		현장대응팀	○ 수거·검사, 회수·압류·폐기 총괄 ○ (잠정)수입·유통·판매 금지 조치 및 정보공개 ○ 일일 상황 관리시스템 운영 및 지방청, 시도 총괄관리

구 분	담당부서		조치사항
		검사대책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준미설정 물질인 경우 기준 및 시험법 적용 검토</li> <li>○ 검사기관 현황 파악 및 준비 등 검사지원</li> <li>○ 식품위생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결과 보고</li> <li>○ Q&amp;A , 보도자료 등 작성</li> </ul>
		대외협력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통상 등 협력 업무</li> <li>○ 관련 법령 검토, 제도개선 등 법제업무 지원</li> <li>○ 이해관계자와의 정보교류</li> <li>○ 소비자신고 센터 운영</li> </ul>
		위해평가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해평가 실시</li> <li>○ 시험분석기관 기술적 지원</li> <li>○ 부적합 결과 취합 분석 및 확인</li> </ul>
		운영지원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시설·인력·물자 지원</li> <li>○ 소비자·산업체 전화대응(Hot-line) 업무 지원</li> </ul>
	소속 기관	지방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거·검사 및 수입단계 검사 실시·보고</li> <li>○ 압류·회수 실시 및 보고</li> </ul>
	유관 기관	안행부	○ 긴급검사, 회수폐기 등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업무협조
		교육부	○ 학교급식 안전관리 및 학교주변 위해식품 점검
		관세청	○ 국제우편, 수입 통관과정 등 수입 위해식품 확인 및 차단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거·검사 지원 및 부적합 발생 시 신속보고</li> <li>○ 압류·회수 지원 및 보고</li> </ul>	
후속조치 (「경계」 단계 종결시)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각 사업부서 운영지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결보고</li> <li>○ 상황전파</li> <li>○ 위기대응 평가 - 사후처리, 재발방지대책 강구</li> <li>○ 백서 또는 보고서 작성</li> <li>○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 해제</li> </ul>

< 심 각(Red) >

○○국가에서 유해물질 과다 검출된 농산물 또는 가공식품 등으로 인해 국내 환자 또는 사망자 발생 등 심각하게 국민 불안감 야기된 경우

구 분	담당부서	조치사항
위기징후 식별	위해정보과 각 사업부서 대변인실	○ 위해정보 수집·분석 및 위기 확산 정보 파악 ○ 언론보도 동향 파악
보고·전파	위해정보과 각 사업부서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 경보 예상정보 전파 - 위해정보 분석내용 내부 보고 및 전파 ○ 긴급대응회의 개최 요청
대응조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 긴급대응회의 개최 ○ 위기경보 발령 ○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 운영 - 국무조정실 식품안전사고 긴급대응단과 동시 운영 ○ 긴급대응회의 결과 보고 ○ 상황 보고 및 전파
	위해정보과	○ 관련동향 지속 모니터링 ○ 제외국 동향 모니터링 ○ 위해정보 상시 수집체계 가동
	운영지원과	○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 발령 및 사무실 설치
	상황관리반	○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 내 관련팀 업무 진행상황 관리 ○ 일일 상황 보고서 작성 및 보고 ○ 관계부처 협의체 운영(필요 시) ○ 상황보고 체계 유지 및 협의 - 청와대, 국무조정실 등
	언론대응반	○ 홍보계획 수립, 미디어 센터 설치 및 운영 ○ 언론 및 여론 동향 모니터링 ○ 보도자료 배포 및 대국민 정보 제공 ○ Q&A 등 홍보자료 배포
	총괄대응반	○ 총괄관리
	현장대응팀	○ 수거·검사, 회수·압류·폐기 총괄 ○ (잠정)수입·유통·판매 금지 조치 및 정보공개 ○ 일일 상황 관리시스템 운영 및 지방청, 시도 총괄관리 ○ 유관기관, 협회 및 단체와 협조체계 강화
검사대책팀	○ 기준미설정 물질인 경우 기준 및 시험법 적용 검토 ○ 검사기관 현황 파악 및 준비 등 검사지원 ○ 식품위생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결과 보고 ○ Q&A, 보도자료 등 작성	

구 분	담당부서		조치사항
		대외협력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통상 등 협력 업무</li> <li>○ 관련 법령 검토, 제도개선 등 법제업무 지원</li> <li>○ 이해관계자와의 정보교류</li> <li>○ 소비자신고 센터 운영</li> </ul>
		위해평가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해평가 실시</li> <li>○ 시험분석기관 기술적 지원</li> <li>○ 부적합 결과 취합 분석 및 확인</li> </ul>
		운영지원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시설·인력·물자 지원</li> <li>○ 소비자·산업체 전화대응(Hot-line) 업무 지원</li> </ul>
	소속 기관	지방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거·검사 및 수입단계 검사 실시·보고</li> <li>○ 압류·회수 실시 및 보고</li> </ul>
	유관 기관	안행부	○ 긴급검사, 회수폐기 등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업무협조
		교육부	○ 학교급식 안전관리 및 학교주변 위해식품 점검
		관세청	○ 국제우편, 수입통관과정 등 수입 위해식품 확인 및 차단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거·검사 지원 및 부적합 발생 시 신속보고</li> <li>○ 압류·회수 지원 및 보고</li> </ul>
후속조치 (「심각」 단계 종결시)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각 사업부서 운영지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결보고</li> <li>○ 상황전파</li> <li>○ 위기대응 평가 - 사후처리, 재발방지대책 강구</li> <li>○ 백서 또는 보고서 작성</li> <li>○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 해체</li> </ul>	

#### 4.1.3. 유관기관 임무 및 역할

구 분	내 용	비 고
교육부	○ 학교급식 안전관리 및 학교주변 위해식품 점검	
안전행정부	○ 긴급검사, 회수폐기 등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업무 협조(필요 시)	
관세청	○ 국제우편, 수입통관과정 등 수입 위해식품 확인 및 차단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거·검사 실시 및 부적합 발생 시 신속 보고</li> <li>○ 위해정보에 대한 상시 수집 체계 유지</li> </ul>	

## 제2절 수입 전 단계의 수산물 또는 축산물에서 유해물질 검출된 경우 [위기상황 2, 3]

### 4.2.1. 상 황

- 국가에서 장어 중 미승인 동물용의약품 검출
- 국가에서 축산물 중 사용 금지된 농약 검출
- 국가에서 식육가공품 중 아질산염 과다 검출

## 4.2.2. 조치사항 및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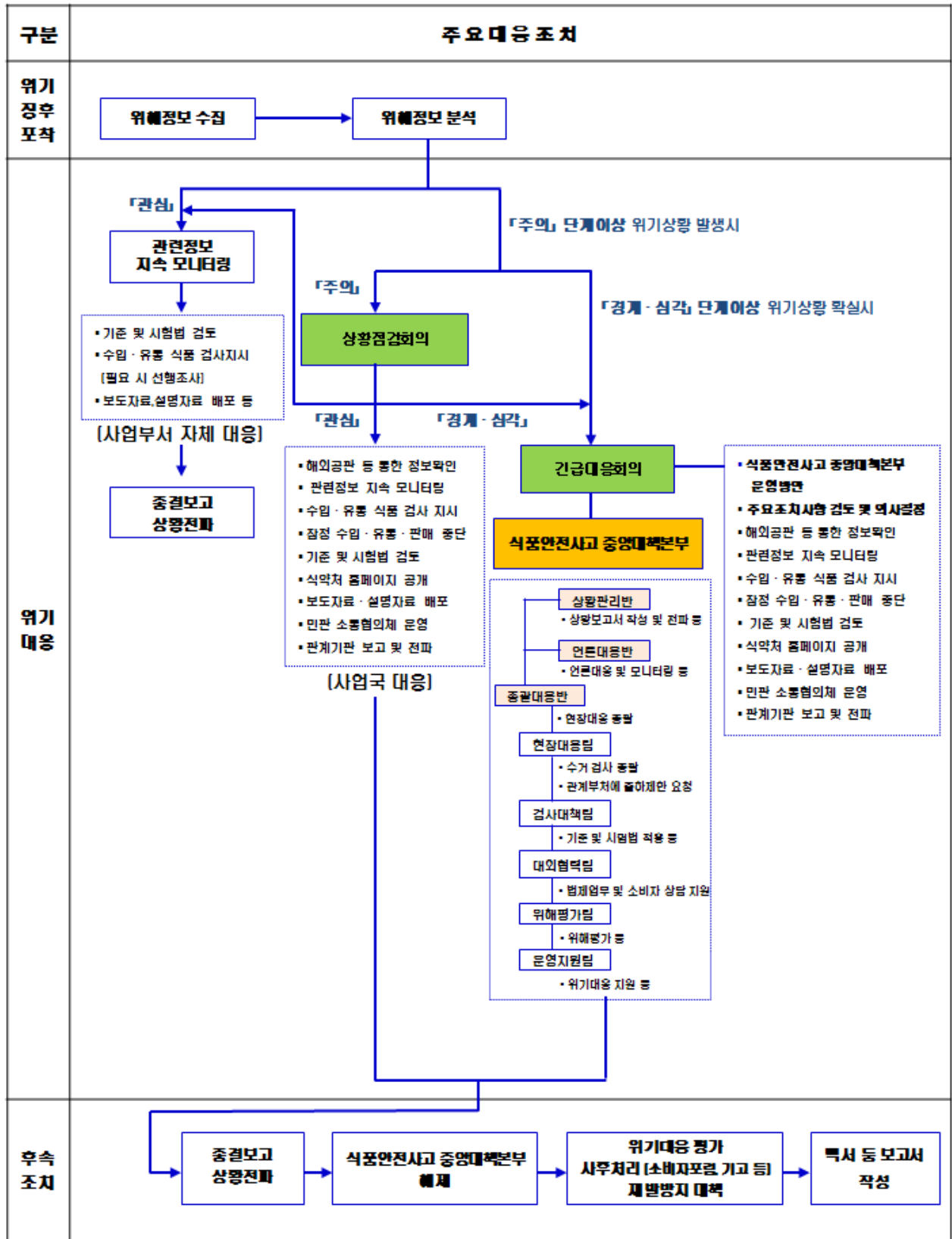
### 4.2.2.1. 조치목록 총괄

구분	세부내용	담당부서
위기상황접수 및 보고/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해정보 수집·분석</li> <li>○ 경보 예상정보 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해정보 분석내용 내부 보고 및 전파</li> </ul> </li> </ul>	○ 위해정보과, 각 사업부서
대응조치	○ 해외공관을 통한 위해정보 확인 요청	○ 국제협력담당관(위해정보과)
	○ 제외국 동향 등 관련동향 지속 모니터링	○ 위해정보과
	○ 기준미설정 물질인 경우 기준 및 시험법 적용 검토 ○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또는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운영	○ 식품기준기획관
	○ 상황점검회의 개최 ○ 선행조사 실시(필요시) ○ 긴급대응회의 개최 ○ 위기경보 발령 ○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 구성·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무조정실 식품안전사고 긴급대응단과 동시 운영</li> <li>- 관계부처 협의체 회의 개최</li> </ul>	○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 상황보고(청와대, 국무조정실 등) 및 전파 ○ 식품위생심의위원회(위해평가 분과) 운영	
	○ 수입, 유통 현황 파악 ○ 잠정 수입·판매 금지 조치, 수거·검사 실시 및 압류·회수 조치 ○ 수입·판매·유통 금지 조치 강화 ○ 일일 상황관리시스템 운영 및 전국 상황 모니터링 ○ 관계부처에 업무 협조 요청 ○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또는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운영 ○ Q&A, 보도자료 등 작성 ○ 식약처 홈페이지 정보공개	○ 검사실사과, 축산물위생안전과, 농수산물안전과
	○ 소비자 신고센터 운영	○ 고객지원담당관
	○ 홍보계획 수립, 미디어 센터 설치 및 운영 ○ 언론보도 동향 분석 ○ 보도자료 배포 및 대국민 대처요령 등 TV, 인터넷 집중 홍보 ○ 해명·설명자료 배포(필요 시)	○ 대변인실

구 분	세부내용	담당부서
	○ 민관소통협의체 운영	○ 소통협력과
	○ 시험분석기관 기술 지원 ○ 시험법안 작성 및 통보 ○ 위해평가 실시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수거·검사 및 수입단계 검사 실시·보고 ○ 압류·회수 실시 및 보고	○ 지방청
	○ 학교급식 안전관리 및 학교주변 위해식품 점검	○ 교육부
	○ 긴급검사, 회수·폐기 등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업무협조	○ 안행부
	○ 국제우편, 수입통관과정 등 수입 위해식품 확인 및 차단	○ 관세청
	○ 수거·검사 지원 및 부적합 발생 시 신속보고 ○ 압류·회수 지원 및 보고	○ 지자체
후속조치	○ 종결보고 ○ 상황전파 ○ 위기대응 평가 - 사후처리, 재발방지대책 강구, 백서 또는 보고서 작성	○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각 사업부서
	○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 해제	○ 운영지원과
	○ 소비자포럼 운영	○ 소통협력과

※ 수입식품정책과 : 농산물, 가공식품 등 수입단계 검사 방안 검토  
 ※ 식품관리총괄과 : 농산물, 가공식품 등 유통단계 검사 방안 검토

#### 4.2.2.2. 조치목록 총괄





### 4.2.2.3. 위기경보 단계별 조치목록

#### < 관 심(Blue) >

○○국가에서 장어 중 동물용의약품 기준 초과 검출된 제품의 국내 유통·판매

구 분	담당부서	조치사항	
위기징후 식별	위해정보과 각 사업부서	○ 위해정보 수집·분석	
보고·전파	위해정보과 각 사업부서	○ 위해정보 분석내용 내부 보고 ○ 관련동향 지속 모니터링	
대응조치	본부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 대응체계 점검 ○ 소속기관 및 관계기관과 협조체계 유지 ○ 선행조사(필요시)
		위해정보과	○ 관련 정보 및 동향 지속 모니터링 ○ 제외국 동향 모니터링
		검사실사과 (수산물, 축산물)	○ 수입 현황 파악 ○ 수입단계 검사 지시
		식품기준기획관	○ 기준미설정 물질인 경우 기준 및 시험법 적용 검토
		축산물위생안전과 (축산물)	○ 유통 현황 파악 및 유통가능성 검토 ○ 유통 축산물 수거·검사 지시
		농수산물안전과 (농산물)	○ 국내 농산물 안전성 검사 검토 ○ 유통현황 파악 및 유통가능성 검토 ○ 유통 농산물 수거·검사 지시
		국제협력담당관	○ 해외공관 등 통해 위해정보 내용 확인 요청
		대변인실	○ 언론매체 취재동향 관찰 ○ 언론에 정보제공 및 협조체계 점검 ○ 보도자료 또는 해명설명자료 배포(필요 시, 소관부서와 협력)
		소통협력과	○ 민관소통협의체 운영 검토
	소속기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유해물질 독성자료 등 검토 ○ 시험법 검토
	지방청	○ 수거·검사 및 수입단계 검사 실시·보고	
	유관기관	관세청	○ 관련제품 정보 공유
후속조치 (「관심」 단계 종결시)	각 사업부서	○ 종결보고 ○ 상황진과 ○ 위기대응 평가 - 사후처리, 재발방지대책 강구	

< 주 의(Yellow) >

○○국가에서 미승인 동물용의약품 검출 제품과 동일제품의 국내 유통·판매

구 분	담당부서	조치사항		
위기징후 식별	위해정보과 각 사업부서 대변인실	○ 위해정보 수집·분석 ○ 언론보도 동향 분석		
보고·전파	위해정보과 각 사업부서	○ 경보예상정보 전파 - 위해정보 분석내용 내부 보고 및 전파		
대응조치	본부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 상황점검회의 개최 - 기준미설정 물질인 경우 시험법 확립 요청 - 선행조사 실시(필요시) ○ 상황점검회의 결과 보고 - 상황점검회의에서 「경계」 이상으로 위기 확산 가능성 있는 경우 긴급대응회의 개최 요청 ○ 상황보고 및 전파 ○ 위해평가 분과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운영(필요 시)	
		위해정보과	○ 관련동향 지속 모니터링 ○ 체외국 동향 모니터링	
		검사실사과 (수산물, 축산물)	○ 수입식품 검사 지시 ○ 잠정 수입 중단 조치 필요성 검토 - (잠정) 수입 중단 조치 ○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또는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운영(필요 시)	
		식품기준기획관	○ 기준미설정 물질인 경우 기준 및 시험법 검토 ○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또는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운영(필요 시)	
		축산물위생안전과 (축산물)	○ 잠정 유통 판매 중단 조치 필요성 검토 - (잠정) 유통 판매 중단 조치 ○ 수거·검사 범위 및 계획 검토 - 수거·검사 및 압류 회수 조치 ○ 식약처 홈페이지 정보공개 ○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운영(필요 시)	
		농수산물안전과 (수산물)	○ 잠정 유통 판매 중단 조치 필요성 검토 - (잠정) 유통 판매 중단 조치 ○ 수거·검사 범위 및 계획 검토 - 수거·검사 및 압류 회수 조치 ○ 식약처 홈페이지 정보공개 ○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운영(필요 시)	
		대변인실	○ 보도자료 배포 또는 해명·설명자료 배포(소관부서와 협력) ○ 언론매체 지원 및 취재동향 관찰	
		소통협력과	○ 민관소통협의체 운영	
		소속기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유해물질 독성자료 등 특성 검토 ○ 시험법안 작성 및 통보
			지방청	○ 수거·검사 및 수입단계 검사 실시·보고 ○ 압류·회수 실시 및 보고
유관기관	관세청	○ 국제우편, 수입통관과정 등 수입 위해식품 확인 및 차단 협조		
후속조치 (「주의」 단계 종결시)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각 사업부서	○ 종결보고 ○ 상황전파 ○ 위기대응 평가 - 사후처리, 재발방지대책 강구		

< 경 계(Orange) >

○○국가에서 유해물질 과다 검출된 수산물 또는 축산물이 국내 대량 유통되거나 관련 언론보도가 확산된 경우

구 분	담당부서	조치사항	
위기징후 식별	위해정보과 각 사업부서 대변인실	○ 위해정보 수집·분석 및 위기 확산 정보 파악 ○ 언론보도 동향 파악	
보고·전파	위해정보과 각 사업부서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 경보예상정보 전파 - 위해정보 분석내용 내부 보고 및 전파 ○ 긴급대응회의 개최 요청	
대응조치	본부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 긴급대응회의 개최 ○ 위기경보 발령 ○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 구성 - 국무조정실 식품안전사고 긴급대응단 운영 검토 ○ 긴급대응회의 결과 보고 ○ 상황보고 및 전파
		위해정보과	○ 관련동향 지속 모니터링 ○ 제외국 동향 모니터링 ○ 위해정보 상시 수집체계 가동
		운영지원과	○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 발령 및 사무실 설치
		상황관리반	○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 내 관련팀 업무 진행상황 관리 ○ 일일 상황 보고서 작성 및 보고 ○ 관계부처 협의체 운영(필요 시) ○ 상황보고 체계 유지 및 협의 - 청와대, 국무조정실 등
		언론대응반	○ 홍보계획 수립, 미디어 센터 설치 및 운영 ○ 언론 및 여론 동향 모니터링 ○ 보도자료 배포 및 대국민 정보 제공 ○ Q&A 등 홍보자료 배포
		총괄대응반	○ 총괄관리
		현장대응팀	○ 수거·검사, 회수·압류·폐기 총괄 ○ (잠정)수입·유통·판매 금지 조치 및 정보공개 ○ 일일 상황 관리시스템 운영 및 지방청, 시도 총괄관리

구 분	담당부서		조치사항
		검사대책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준미설정 물질인 경우 기준 및 시험법 적용 검토</li> <li>○ 검사기관 현황 파악 및 준비 등 검사지원</li> <li>○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또는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결과 보고</li> <li>○ Q&amp;A , 보도자료 등 작성</li> </ul>
		대외협력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통상 등 협력 업무</li> <li>○ 관련 법령 검토, 제도개선 등 법제업무 지원</li> <li>○ 이해관계자와의 정보교류</li> <li>○ 소비자신고 센터 운영</li> </ul>
		위해평가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해평가 실시</li> <li>○ 시험분석기관 기술적 지원</li> <li>○ 부적합 결과 취합 분석 및 확인</li> </ul>
		운영지원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시설·인력·물자 지원</li> <li>○ 소비자·산업체 전화대응(Hot-line) 업무 지원</li> </ul>
	소속 기관	지방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거·검사 및 수입단계 검사 실시·보고</li> <li>○ 압류·회수 실시 및 보고</li> </ul>
	유관 기관	안행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긴급검사, 회수·폐기 등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업무 협조</li> </ul>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급식 안전관리 및 학교주변 위해식품 점검</li> </ul>
		관세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우편, 수입통관과정 등 수입 위해식품 확인 및 차단</li> </ul>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거·검사 지원 및 부적합 발생 시 신속보고</li> <li>○ 압류·회수 지원 및 보고</li> </ul>	
후속조치 (「경계」 단계 종결시)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각 사업부서 운영지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결보고</li> <li>○ 상황전파</li> <li>○ 위기대응 평가 - 사후처리, 재발방지대책 강구</li> <li>○ 백서 또는 보고서 작성</li> <li>○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 해제</li> </ul>

< 심 각(Red) >

○○국가에서 유해물질 과다 검출된 수산물 또는 축산물로 인해 국내 환자 또는 사망자 발생 등 심각하게 국민 불안감 야기된 경우

구 분	담당부서	조치사항	
위기징후 식별	위해정보과 각 사업부서 대변인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해정보 수집·분석 및 위기 확산 정보 파악</li> <li>○ 언론보도 동향 파악</li> </ul>	
보고·전파	위해정보과 각 사업부서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예상정보 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해정보 분석내용 내부 보고 및 전파</li> </ul> </li> <li>○ 긴급대응회의 개최 요청</li> </ul>	
대응조치	본부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긴급대응회의 개최</li> <li>○ 위기경보 발령</li> <li>○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무조정실 식품안전사고 긴급대응단과 동시운영</li> </ul> </li> <li>○ 긴급대응회의 결과 보고</li> <li>○ 상황 보고 및 전파</li> </ul>
		위해정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동향 지속 모니터링</li> <li>○ 제외국 동향 모니터링</li> <li>○ 위해정보 상시 수집체계 가동</li> </ul>
		운영지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 발령 및 사무실 설치</li> </ul>
		상황관리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 내 관련팀 업무 진행상황 관리</li> <li>○ 일일 상황 보고서 작성 및 보고</li> <li>○ 관계부처 협의체 운영(필요 시)</li> <li>○ 상황보고 체계 유지 및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와대, 국무조정실 등</li> </ul> </li> </ul>
		언론대응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보계획 수립, 미디어 센터 설치 및 운영</li> <li>○ 언론 및 여론 동향 모니터링</li> <li>○ 보도자료 배포 및 대국민 정보 제공</li> <li>○ Q&amp;A 등 홍보자료 배포</li> </ul>
		총괄대응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괄관리</li> </ul>
		현장대응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거·검사, 회수·압류·폐기 총괄</li> <li>○ (잠정)수입·유통·판매 금지 조치 및 정보공개</li> <li>○ 일일 상황 관리시스템 운영 및 지방청, 시도 총괄관리</li> <li>○ 유관기관, 협회 및 단체와 협조체계 강화</li> </ul>
		검사대책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준미설정 물질인 경우 기준 및 시험법 적용 검토</li> <li>○ 검사기관 현황 파악 및 준비 등 검사지원</li> <li>○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또는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결과 보고</li> <li>○ Q&amp;A, 보도자료 등 작성</li> </ul>

구 분	담당부서		조치사항
		대외협력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통상 등 협력 업무</li> <li>○ 관련 법령 검토, 제도개선 등 법제업무 지원</li> <li>○ 이해관계자와의 정보교류</li> <li>○ 소비자신고 센터 운영</li> </ul>
		위해평가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해평가 실시</li> <li>○ 시험분석기관 기술적 지원</li> <li>○ 부적합 결과 취합 분석 및 확인</li> </ul>
		운영지원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시설·인력·물자 지원</li> <li>○ 소비자·산업체 전화대응(Hot-line) 업무 지원</li> </ul>
	소속 기관	지방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거·검사 및 수입단계 검사 실시·보고</li> <li>○ 압류·회수 실시 및 보고</li> </ul>
	유관 기관	안행부	○ 긴급검사, 회수·폐기 등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업무 협조
		교육부	○ 학교급식 안전관리 및 학교주변 위해식품 점검
		관세청	○ 국제우편, 수입통관과정 등 수입 위해식품 확인 및 차단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거·검사 지원 및 부적합 발생 시 신속보고</li> <li>○ 압류·회수 지원 및 보고</li> </ul>
후속조치 (「심각」 단계 종결시)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각 사업부서 운영지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결보고</li> <li>○ 상황전파</li> <li>○ 위기대응 평가 - 사후처리, 재발방지대책 강구</li> <li>○ 백서 또는 보고서 작성</li> <li>○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 해제</li> </ul>	

#### 4.2.3. 유관기관 임무 및 역할

구 분	내 용	비 고
교육부	○ 학교급식 안전관리 및 학교주변 위해식품 점검	
안전행정부	○ 긴급검사, 회수·폐기 등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업무 협조(필요 시)	
관세청	○ 국제우편, 수입통관과정 등 수입 위해식품 확인 및 차단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거·검사 실시 및 부적합 발생 시 신속 보고</li> <li>○ 위해정보에 대한 상시 수집 체계 유지</li> </ul>	

### **제3절 수입 전, 수입·통관·유통 및 제조·가공·유통단계에서 미승인 GM 검출된 경우(위기상황 7, 14, 23)**

#### **4.3.1. 상 황**

- 국가에서 미승인 GM 농산물이 재배되고 있다는 정보 입수
- 수입단계 검사 결과, 미승인 GM 농산물 검출
- 유통단계 가공식품에서 미승인 GM 검출

## 4.3.2. 조치사항 및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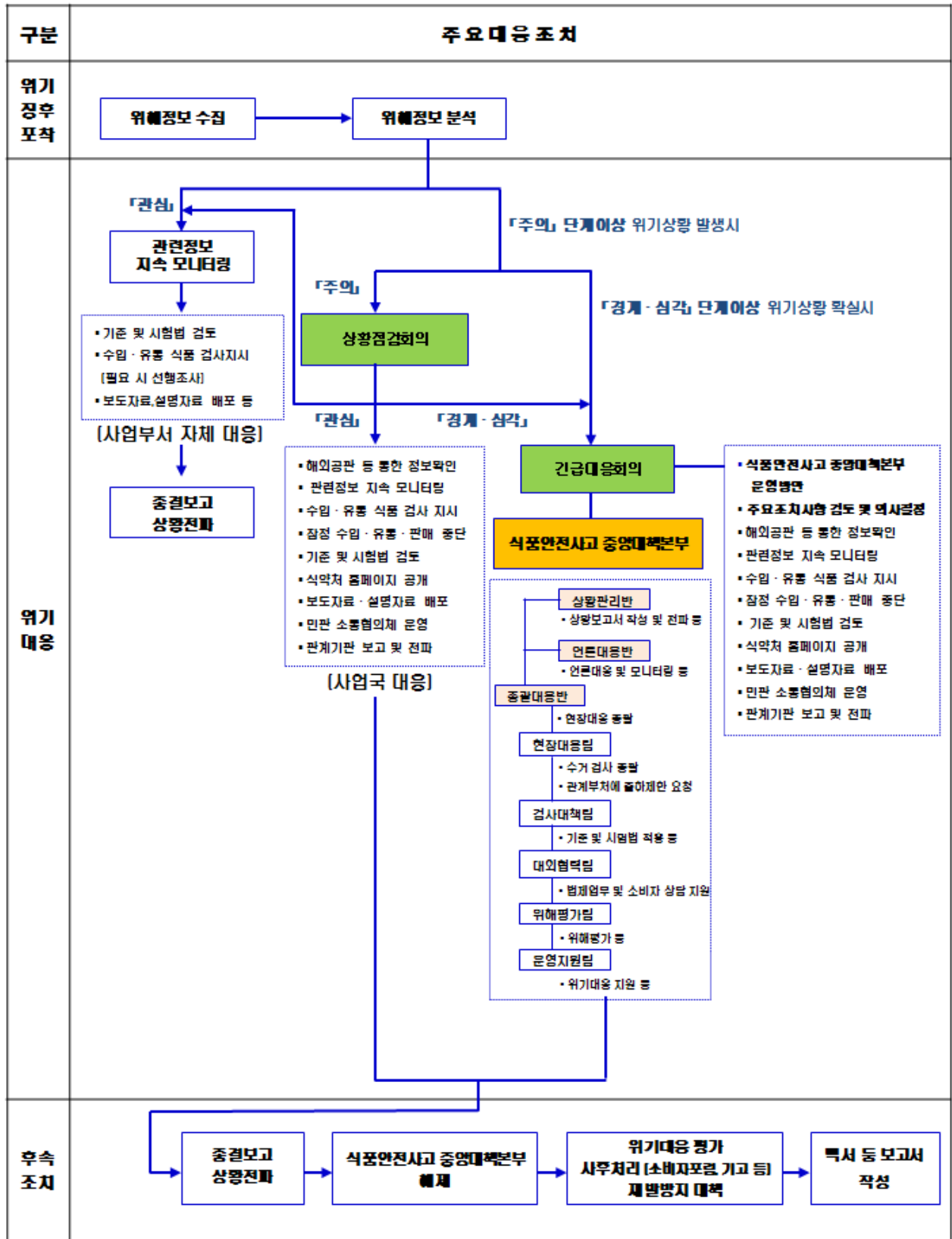
### 4.3.2.1. 조치목록 총괄

구분	세부내용	담당부서
위기상황접수 및 보고/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해정보 수집·분석</li> <li>○ 경보 예상정보 전파</li> <li>- 위해정보 분석내용 내부 보고 및 전파</li> </ul>	○ 위해정보과, 각 사업부서
대응조치	○ 해외공관을 통한 위해정보 확인 요청	○ 국제협력담당관(위해정보과)
	○ 제외국 동향 등 관련동향 지속 모니터링	○ 위해정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황점검회의 개최</li> <li>○ 긴급대응회의 개최</li> <li>○ 위기경보 발령</li> <li>○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 구성·운영</li> <li>- 국무조정실 식품안전사고 긴급대응단과 동시운영</li> <li>- 관계부처 협의체 회의 개최</li> <li>○ 상황보고(청와대, 국무조정실 등) 및 전파</li> </ul>	○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 현황 파악</li> <li>○ 수입단계 조치 검토 결정에 따라</li> <li>- 잠정 수입·판매 금지 조치 또는 수입단계 검사 실시</li> <li>○ 지방청 및 수입단계 조치사항 이행 확인</li> </ul>	○ 수입식품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유통단계 조치 필요성 검토 및 결정</li> <li>○ 유통 현황 파악</li> <li>○ 잠정 유통·판매 금지 조치, 수거·검사 실시 및 압류·회수 조치</li> <li>○ 유통·판매 금지 조치 강화</li> <li>○ 관계부처에 업무 협조 요청</li> <li>○ 개발사에 사실 확인 및 검사법 자료 등 정보 요청</li> <li>○ 시험법 적용 검토</li> <li>○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운영</li> <li>○ Q&amp;A, 보도자료 등 작성</li> <li>○ 식약처 홈페이지 정보공개</li> </ul>	○ 신소재식품과
	○ 소비자 신고센터 운영	○ 고객지원담당관



구 분	세부내용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도자료 또는 해명·설명자료 배포(필요 시)</li> <li>○ 홍보계획 수립 , 미디어 센터 설치 및 운영</li> <li>○ 언론보도 동향 분석</li> <li>○ 보도자료 배포 및 대국민 대처요령 등 TV, 인터넷 집중 홍보</li> </ul>	○ 대변인실
	○ 민관소통협의체 운영	○ 소통협력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험법안 작성 및 통보</li> <li>○ 표준물질, 시약 공급 등 검사기관 검사 지원</li> </ul>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거·검사 및 수입단계 검사 실시·보고</li> <li>○ 압류·회수 실시 및 보고</li> </ul>	○ 지방청
	○ 정보공유	○ 농식품부
	○ 정보공유	○ 관세청
후속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결보고</li> <li>○ 상황전파</li> <li>○ 위기대응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후처리, 재발방지대책 강구, 백서 또는 보고서 작성</li> </ul> </li> <li>○ 관련 국가 및 개발사에 재발 방지 요구</li> </ul>	○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신소재식품과
	○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 해체	○ 운영지원과
	○ 소비자포럼 운영	○ 소통협력과

#### 4.3.2.2. 조치절차



### 4.3.2.3. 위기경보 단계별 조치목록

#### < 관 심(Blue) >

미승인 GM 검출에 대한 미확인 정보 입수

구 분	담당부서	조치사항	
위기징후 식별	위해정보과 각 사업부서	○ 위해정보 수집·분석	
보고·전파	위해정보과 각 사업부서	○ 위해정보 분석내용 내부 보고 ○ 관련동향 지속 모니터링	
대응조치	본부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 대응체계 점검 ○ 소속기관 및 관계기관과 협조체계 유지
		위해정보과	○ 관련 정보 및 동향 지속 모니터링 ○ 제외국 동향 모니터링
		국제협력담당관	○ 해외공관 등 통해 위해정보 내용 확인 요청
		수입식품정책과	○ 동일 품목 국내 수입현황 파악 ○ 수입단계 검토 결정에 따라 - (잠정) 수입 중단 조치 또는 수입식품 검사 지시
		신소재식품과	○ (잠정) 수입 중단 또는 수입단계 조치 필요성 검토 및 결정 ○ 유통현황 파악 및 유통가능성 검토 ○ (잠정) 유통 판매 중단 조치 필요성 검토 ○ 개발사에 사실 확인 및 검사법 자료 등 정보 요청
	대변인실	○ 보도자료 또는 해명·설명자료 배포 필요성 검토(소관 부서와 협력)	
	소속 기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과	○ 시험법 자료 수집 및 검토
	유관 기관	농식품부	○ 관련정보 공유
관세청		○ 관련정보 공유	
후속조치 (「관심」 단계 종결시)	각 사업부서	○ 상황전파	

< 주 의(Yellow) >

미승인 GM 검출에 대한 확인 정보 입수(해당국가 정부 미발표)

구 분	담당부서	조치사항	
위기징후 식별	위해정보과 각 사업부서	○ 위해정보 수집·분석	
보고·전파	위해정보과 각 사업부서	○ 경보 예상정보 전파 - 위해정보 분석내용 내부 보고 및 전파 ○ 관련동향 지속 모니터링	
대응조치	본부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 대응체계 점검 ○ 소속기관 및 관계기관과 협조체계 유지
		위해정보과	○ 관련 정보 및 동향 지속 모니터링 ○ 제외국 동향 모니터링
		국제협력담당관	○ 해외공관 등 통해 위해정보 내용 확인 요청
		수입식품정책과	○ 동일 품목 국내 수입현황 파악 ○ 수입단계 검토 결정에 따라 - (잠정) 수입 중단 조치 또는 수입식품 검사 지시
		신소재식품과	○ (잠정) 수입 중단 또는 수입단계 조치 필요성 검토 및 결정 - 수입식품 검사 강화 및 (잠정) 수입 중단 조치 요청 ○ 유통현황 파악 및 유통가능성 검토 - 유통식품 수거·검사 지시 ○ (잠정) 유통 판매 중단 조치 필요성 검토 - (잠정) 유통 판매 중단 조치 ○ 개발사에 사실 확인 및 검사법 자료 등 정보 요청
		대변인실	○ 보도자료 배포 또는 해명·설명자료 배포 (소관부서와 협력) ○ 언론매체 지원 및 취재동향 관찰
		소통협력과	○ 민관소통협의체 운영
	소속 기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과	○ 시험법안 작성 및 통보 ○ 표준물질 및 시약 마련
		지방청	○ 수거·검사 및 수입단계 검사 실시·보고 ○ 압류·회수 실시 및 보고
	유관 기관	농식품부	○ 관련정보 공유
관세청		○ 관련정보 공유	
후속조치 (「주의」 단계 종결시)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각 사업부서	○ 종결보고 ○ 상황전파 ○ 위기대응 평가 - 사후처리, 재발방지대책 강구	

< 경 계(Orange) >

미승인 GM 검출에 대한 해당국가 공식 발표 및 국내 유통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구 분	담당부서	조치사항	
위기징후 식별	위해정보과 각 사업부서 대변인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해정보 수집분석 및 위기 확산 정보 파악</li> <li>○ 언론보도 동향 파악</li> </ul>	
보고·전파	위해정보과 각 사업부서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보예상정보 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해정보 분석내용 내부 보고 및 전파</li> </ul> </li> <li>○ 긴급대응회의 개최 요청</li> </ul>	
대응조치	본부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긴급대응회의 개최</li> <li>○ 위기경보 발령</li> <li>○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 구성·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무조정실 식품안전사고 긴급대응단 운영 검토</li> </ul> </li> <li>○ 긴급대응회의 결과 보고</li> <li>○ 상황 보고 및 전파</li> </ul>
		위해정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동향 지속 모니터링</li> <li>○ 제외국 동향 모니터링</li> <li>○ 위해정보 상시 수집체계 가동</li> </ul>
		운영지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 발령 및 사무실 설치</li> </ul>
		상황관리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 내 관련팀 업무 진행상황 관리</li> <li>○ 일일 상황 보고서 작성 및 보고</li> <li>○ 관계부처 협의체 운영(필요 시)</li> <li>○ 상황보고 체계 유지 및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와대, 국무조정실 등</li> </ul> </li> </ul>
		언론대응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보계획 수립, 미디어 센터 설치 및 운영</li> <li>○ 언론 및 여론 동향 모니터링</li> <li>○ 보도자료 배포 및 대국민 정보 제공</li> <li>○ Q&amp;A 등 홍보자료 배포</li> </ul>
		총괄대응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괄관리</li> </ul>
		현장대응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거·검사, 회수·압류·폐기 총괄</li> <li>○ (잠정)수입·유통·판매 금지 조치 및 정보공개</li> <li>○ 일일 상황 관리시스템 운영 및 지방청, 시도 총괄관리</li> </ul>

구 분	담당부서		조치사항
		검사대책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험법 적용 검토</li> <li>○ 검사기관 현황 파악 및 표준물질 준비 등 검사지원</li> <li>○ 식품위생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결과 보고</li> <li>○ Q&amp;A , 보도자료 등 작성</li> </ul>
		대외협력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통상 등 협력 업무</li> <li>○ 관련 법령 검토, 제도개선 등 법제업무 지원</li> <li>○ 이해관계자와의 정보교류</li> <li>○ 소비자신고 센터 운영</li> </ul>
		운영지원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시설·인력·물자 지원</li> <li>○ 소비자·산업체 전화대응(Hot-line) 업무 지원</li> </ul>
	소속 기관	지방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거·검사 및 수입단계 검사 실시·보고</li> <li>○ 압류·회수 실시 및 보고</li> </ul>
	유관 기관	농식품부	○ 관련정보 공유
		교육부	○ 관련정보 공유
		관세청	○ 관련정보 공유
<p>후속조치 (「경계」 단계 종결시)</p>	<p>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각 사업부서 운영지원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결보고</li> <li>○ 상황전파</li> <li>○ 위기대응 평가 - 사후처리, 재발방지대책 강구</li> <li>○ 관련 국가 및 개발사에 재발 방지 요구</li> <li>○ 개발사에 안전성 평가 심사 신청토록 독려</li> <li>○ 백서 또는 보고서 작성</li> <li>○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 해제</li> </ul>

< 심 각(Red) >

미승인 GM 검출에 대한 해당국가 공식 발표 및 국내 유통 확인

구 분	담당부서	조치사항	
위기징후 식별	위해정보과 각 사업부서 대변인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해정보 수집·분석 및 위기 확산 정보 파악</li> <li>○ 언론보도 동향 파악</li> </ul>	
보고·전파	위해정보과 각 사업부서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보예상정보 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해정보 분석내용 내부 보고 및 전파</li> </ul> </li> <li>○ 긴급대응회의 개최 요청</li> </ul>	
대응조치	본부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긴급대응회의 개최</li> <li>○ 위기경보 발령</li> <li>○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 구성·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무조정실 식품안전사고 긴급대응단 운영</li> </ul> </li> <li>○ 긴급대응회의 결과 보고</li> <li>○ 상황 보고 및 전파</li> </ul>
		위해정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동향 지속 모니터링</li> <li>○ 제외국 동향 모니터링</li> <li>○ 위해정보 상시 수집체계 가동</li> </ul>
		운영지원과	○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 발령 및 사무실 설치
		상황관리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 내 관련팀 업무 진행 상황 관리</li> <li>○ 일일 상황 보고서 작성 및 보고</li> <li>○ 관계부처 협의체 운영(필요 시)</li> <li>○ 상황보고 체계 유지 및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와대, 국무조정실 등</li> </ul> </li> </ul>
		언론대응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보계획 수립, 미디어 센터 설치 및 운영</li> <li>○ 언론 및 여론 동향 모니터링</li> <li>○ 보도자료 배포 및 대국민 정보 제공</li> <li>○ Q&amp;A 등 홍보자료 배포</li> </ul>
		총괄대응반	○ 총괄관리
		현장대응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거·검사, 회수·압류·폐기 총괄</li> <li>○ (잠정)수입·유통·판매 금지 조치 및 정보공개</li> <li>○ 일일 상황 관리시스템 운영 및 지방청, 시도 총괄 관리</li> </ul>
		검사대책팀	○ 시험법 적용 검토

구 분	담당부서		조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사기관 현황 파악 및 표준물질 준비 등 검사지원</li> <li>○ 식품위생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결과 보고</li> <li>○ Q&amp;A , 보도자료 등 작성</li> </ul>
		대외협력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통상 등 협력 업무</li> <li>○ 관련 법령 검토, 제도개선 등 법제업무 지원</li> <li>○ 이해관계자와의 정보교류</li> <li>○ 소비자신고 센터 운영</li> </ul>
		운영지원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시설·인력·물자 지원</li> <li>○ 소비자·산업체 전화대응(Hot-line) 업무 지원</li> </ul>
	소속 기관	지방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거·검사 및 수입단계 검사 실시·보고</li> <li>○ 압류·회수 실시 및 보고</li> </ul>
	유관 기관	농식품부	○ 관련정보 공유
		교육부	○ 관련정보 공유
		관세청	○ 관련정보 공유
후속조치 (「심각」 단계 종결시)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각 사업부서 운영지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결보고</li> <li>○ 상황전파</li> <li>○ 위기대응 평가 - 사후처리, 재발방지대책 강구</li> <li>○ 관련 국가 및 개발사에 재발 방지 요구</li> <li>○ 개발사에 안전성 평가 심사 신청토록 독려</li> <li>○ 백서 또는 보고서 작성</li> <li>○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 해제</li> </ul>	

#### 4.3.3. 유관기관 임무 및 역할

구 분	내 용	비 고
교육부	○ 학교급식 안전관리 및 학교주변 위해식품 점검	
안전행정부	○ 긴급검사, 회수폐기 등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업무 협조(필요 시)	
농식품부	○ 안전성 조사결과 등 GM 관리 현황 파악	
관세청	○ 국제우편, 수입통관과정 등 수입 위해식품 확인 및 차단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거·검사 실시 및 부적합 발생 시 신속 보고</li> <li>○ 위해정보에 대한 상시 수집 체계 유지</li> </ul>	



## 제4절 수입·통관·유통 단계의 농산물 및 가공식품 등에서 유해물질 검출된 경우(위기상황 8, 11, 12, 13)

### 4.4.1. 상 황

- 수입 옥수수에서 아플라톡신 B1이 기준치 초과 검출
- 수입 과자에서 수단색소 검출
- 수입 금속제 주방용기에서 6가크롬 과다 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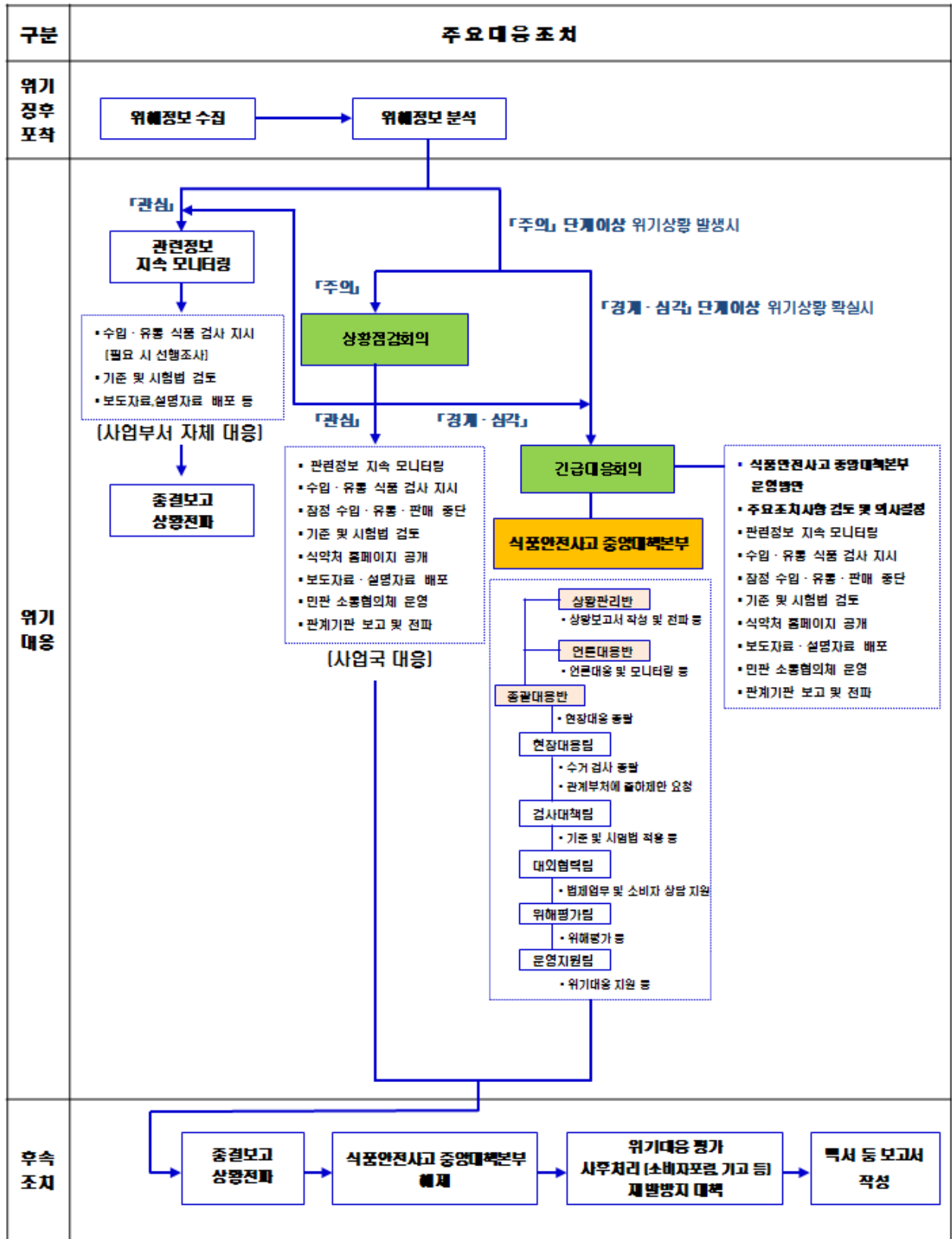
## 4.4.2. 조치사항 및 절차

### 4.4.2.1. 조치목록 총괄

구분	세부내용	담당부서
위기상황접수 및 보고/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해정보 수집·분석</li> <li>○ 정보예상정보 전파</li> <li>- 위해정보 분석내용 내부 보고 및 전파</li> </ul>	○ 위해정보과, 각 사업부서
대응조치	○ 해외공관을 통한 위해정보 확인 요청	○ 국제협력담당관(위해정보과)
	○ 제외국 동향 등 관련동향 지속 모니터링	○ 위해정보과
	○ 기준미설정 물질인 경우 기준 및 시험법 적용 검토	○ 식품기준기획관
	○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운영	
	○ 상황점검회의 개최	○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 선행조사 실시(필요시)	
	○ 긴급대응회의 개최	
	○ 위기경보 발령	
○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 구성·운영		
○ 국무조정실 식품안전사고 긴급대응단과 동시운영	○ 수입식품정책과, 식품관리총괄과, 농수산물안전과	
○ 관계부처 협의체 회의 개최		
○ 상황보고(청와대, 국무조정실 등) 및 전파		
○ 식품위생심의위원회(위해평가) 운영		
○ 수입, 유통 현황 파악		
○ 잠정 수입·판매 금지 조치, 수거·검사 실시 및 압류·회수 조치		
○ 수입·판매·유통 금지 조치 강화		
○ 일일 상황관리시스템 운영 및 전국 상황 모니터링		
○ 관계부처에 업무 협조 요청	○ 고객지원담당관	
○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운영		
○ Q&A, 보도자료 등 작성	○ 대변인실	
○ 식약처 홈페이지 정보공개		
○ 소비자 신고센터 운영		
○ 보도자료 또는 해명·설명자료 배포(필요 시)		
○ 홍보계획 수립, 미디어 센터 설치 및 운영		
○ 언론보도 동향 분석	○ 대변인실	
○ 보도자료 배포 및 대국민 대처요령 등 TV, 인터넷 집중 홍보		

구 분	세부내용	담당부서
	○ 민관소통협의체 운영	○ 소통협력과
	○ 시험분석기관 기술 지원 ○ 시험법안 작성 및 통보 ○ 위해평가 실시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수거·검사 및 수입단계 검사 실시·보고 ○ 압류·회수 실시 및 보고	○ 지방청
	○ 긴급검사, 회수폐기 등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업무협조	○ 안행부
	○ 학교급식 안전관리 및 학교주변 위해식품 점검	○ 교육부
	○ 국제우편, 수입통관과정 등 수입 위해식품 확인 및 차단	○ 관세청
	○ 수거·검사 지원 및 부적합 발생 시 신속보고 ○ 압류·회수 지원 및 보고	○ 지자체
후속조치	○ 종결보고 ○ 상황전파 ○ 위기대응 평가 - 사후처리, 재발방지대책 강구, 백서 또는 보고서 작성	○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각 사업부서
	○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 해제	○ 운영지원과
	○ 소비자포럼 운영	○ 소통협력과

#### 4.4.2.2. 조치절차



### 4.4.2.3. 위기경보 단계별 조치목록

#### < 관 심(Blue) >

수입 농산물 및 가공식품 등에서 기준치 초과 제품과 유사제품이 유통·판매

구 분	담당부서		조치사항
위기징후 식별	위해정보과 각 사업부서		○ 위해정보 수집·분석
보고·전파	위해정보과 각 사업부서		○ 위해정보 분석내용 내부 보고 ○ 관련동향 지속 모니터링
대응조치	본부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 대응체계 점검 ○ 소속기관 및 관계기관과 협조체계 유지 ○ 선행조사(필요시)
		위해정보과	○ 관련 정보 및 동향 지속 모니터링 ○ 제외국 동향 모니터링
		수입식품정책과 (농산물, 가공식품 등)	○ 수입 현황 파악 ○ 수입단계 검사 지시
		식품관리총괄과 (가공식품 등)	○ 유통 현황 파악 및 유통가능성 검토 ○ 유통 가공식품 등 수거·검사 지시
		식품기준기획관	○ 기준미설정 물질인 경우 기준 및 시험법 적용 검토
		농수산물안전과 (농산물)	○ 국내 농산물 안전성 검사 검토 ○ 유통현황 파악 및 유통가능성 검토 ○ 유통 농산물 수거·검사 지시
		국제협력담당관	○ 해외공관 등 통해 위해정보 내용 확인 요청
		대변인실	○ 언론매체 취재동향 관찰 ○ 언론에 정보제공 및 협조체계 점검 ○ 보도자료 또는 해명·설명자료 배포(필요 시, 소관부서와 협력)
	소통협력과	○ 민관소통협의체 운영 검토	
	소속 기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유해물질 독성자료 등 검토 ○ 시험법 검토
지방청		○ 수거·검사 및 수입단계 검사 실시·보고	
유관 기관	관세청	○ 관련제품 정보 공유	
후속조치 (「관심」 단계 종결시)	각 사업부서		○ 종결보고 ○ 상황전파 ○ 위기대응 평가 - 사후처리, 재발방지대책 강구

< 주 의(Yellow) >

수입 농산물 및 가공식품 등에서 유해물질 과다 검출된 제품이 유통·판매

구 분	담당부서	조치사항	
위기징후 식별	위해정보과 각 사업부서 대변인실	○ 위해정보 수집·분석 ○ 언론보도 동향 분석	
보고·전파	위해정보과 각 사업부서	○ 경보예상정보 전파 - 위해정보 분석내용 내부 보고 및 전파	
대응조치	본부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 상황점검회의 개최 - 기준미설정 물질인 경우 시험법 확립 요청 - 선행조사 실시(필요시) ○ 상황점검회의 결과 보고 - 상황점검회의에서 「경계」 이상으로 위기 확산 가능성 있는 경우 긴급대응회의 개최 요청 ○ 상황보고 및 전파 ○ 식품위생심의위원회(위해평가 분과) 운영(필요 시)
		위해정보과	○ 관련동향 지속 모니터링 ○ 제외국 동향 모니터링
		수입식품정책과 (농산물, 가공식품 등)	○ 수입식품 검사 지시 ○ 잠정 수입 중단 조치 필요성 검토 - (잠정) 수입 중단 조치 ○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운영(필요 시)
		식품관리총괄과 (가공식품 등)	○ 잠정 유통 판매 중단 조치 필요성 검토 - (잠정) 유통 판매 중단 조치 ○ 수거·검사 범위 및 계획 검토 - 수거·검사 및 압류·회수 조치 ○ 식약처 홈페이지 정보공개 ○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운영(필요 시)
		식품기준기획관	○ 기준미설정 물질인 경우 기준 및 시험법 검토 ○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운영(필요 시)
		농수산물안전과 (농산물)	○ 수거·검사 범위 및 계획 검토 - 수거·검사 및 압류·회수 조치 ○ 식약처 홈페이지 정보공개 ○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운영(필요 시)

구 분	담당부서		조치사항
		대변인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도자료 배포 또는 해명·설명자료 배포 (소관부서와 협력)</li> <li>○ 언론매체 지원 및 취재동향 관찰</li> </ul>
		소통협력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관소통협의체 운영</li> </ul>
	소속 기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해물질 독성자료 등 특성 검토</li> <li>○ 시험법안 작성 및 통보</li> </ul>
		지방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거·검사 및 수입단계 검사 실시·보고</li> <li>○ 압류·회수 실시 및 보고</li> </ul>
	유관 기관	관세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우편, 수입통관과정 등 수입 위해식품 확인 및 차단 협조</li> </ul>
<p>후속조치 (「주의」 단계 종결시)</p>	<p>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각 사업부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결보고</li> <li>○ 상황전파</li> <li>○ 위기대응 평가 - 사후처리, 재발방지대책 강구</li> </ul>

< 경 계(Orange) >

유해물질 과다 검출된 수입 농산물 및 가공식품 등이 국내 대량 유통되거나 관련 언론 보도가 확산된 경우

구 분	담당부서	조치사항	
위기징후 식별	위해정보과 각 사업부서 대변인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해정보 수집·분석 및 위기 확산 정보 파악</li> <li>○ 언론보도 동향 파악</li> </ul>	
보고·전파	위해정보과 각 사업부서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보예상정보 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해정보 분석내용 내부 보고 및 전파</li> </ul> </li> <li>○ 긴급대응회의 개최 요청</li> </ul>	
대응조치	본부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긴급대응회의 개최</li> <li>○ 위기경보 발령</li> <li>○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 구성·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무조정실 식품안전사고 긴급대응단 운영 검토</li> </ul> </li> <li>○ 긴급대응회의 결과 보고</li> <li>○ 상황 보고 및 전파</li> </ul>
		위해정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동향 지속 모니터링</li> <li>○ 제외국 동향 모니터링</li> <li>○ 위해정보 상시 수집체계 가동</li> </ul>
		운영지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 발령 및 사무실 설치</li> </ul>
		상황관리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 내 관련팀 업무 진행상황 관리</li> <li>○ 일일 상황 보고서 작성 및 보고</li> <li>○ 관계부처 협의체 운영(필요 시)</li> <li>○ 상황보고 체계 유지 및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와대, 국무조정실 등</li> </ul> </li> </ul>
		언론대응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보계획 수립, 미디어 센터 설치 및 운영</li> <li>○ 언론 및 여론 동향 모니터링</li> <li>○ 보도자료 배포 및 대국민 정보 제공</li> <li>○ Q&amp;A 등 홍보자료 배포</li> </ul>
		총괄대응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괄관리</li> </ul>



구 분	담당부서		조치사항
		현장대응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거·검사, 회수·압류·폐기 총괄</li> <li>○ (잠정)수입·유통·판매 금지 조치 및 정보공개</li> <li>○ 일일 상황 관리시스템 운영 및 지방청, 시도 총괄관리</li> </ul>
		검사대책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준미설정 물질인 경우 기준 및 시험법 적용 검토</li> <li>○ 검사기관 현황 파악 및 준비 등 검사지원</li> <li>○ 식품위생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결과 보고</li> <li>○ Q&amp;A , 보도자료 등 작성</li> </ul>
		대외협력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통상 등 협력 업무</li> <li>○ 관련 법령 검토, 제도개선 등 법제업무 지원</li> <li>○ 이해관계자와의 정보교류</li> <li>○ 소비자신고 센터 운영</li> </ul>
		위해평가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해평가 실시</li> <li>○ 시험분석기관 기술적 지원</li> <li>○ 부적합 결과 취합 분석 및 확인</li> </ul>
		운영지원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시설·인력·물자 지원</li> <li>○ 소비자·산업체 전화대응(Hot-line) 업무 지원</li> </ul>
	소속 기관	지방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거·검사 및 수입단계 검사 실시·보고</li> <li>○ 압류·회수 실시 및 보고</li> </ul>
	유관 기관	안행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긴급검사, 회수·폐기 등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업무 협조</li> </ul>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급식 안전관리 및 학교주변 위해식품 점검</li> </ul>
		관세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우편, 수입통관과정 등 수입 위해식품 확인 및 차단</li> </ul>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거·검사 지원 및 부적합 발생 시 신속보고</li> <li>○ 압류·회수 지원 및 보고</li> </ul>
후속조치 (「경계」 단계 종결시)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각 사업부서 운영지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결보고</li> <li>○ 상황전파</li> <li>○ 위기대응 평가 - 사후처리, 재발방지대책 강구</li> <li>○ 백서 또는 보고서 작성</li> <li>○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 해체</li> </ul>

< 심 각(Red) >

유해물질 과다 검출된 수입 농산물 및 가공식품 등으로 인해 국내 환자 또는 사망자 발생 등 심각하게 국민 불안감 야기된 경우

구 분	담당부서	조치사항
위기징후 식별	위해정보과 각 사업부서 대변인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해정보 수집·분석 및 위기 확산 정보 파악</li> <li>○ 언론보도 동향 파악</li> </ul>
보고·전파	위해정보과 각 사업부서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예상정보 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해정보 분석내용 내부 보고 및 전파</li> </ul> </li> <li>○ 긴급대응회의 개최 요청</li> </ul>
대응조치	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긴급대응회의 개최</li> <li>○ 위기경보 발령</li> <li>○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무조정실 식품안전사고 긴급대응단과 동시운영</li> </ul> </li> <li>○ 긴급대응회의 결과 보고</li> <li>○ 상황 보고 및 전파</li> </ul>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긴급대응회의 개최</li> <li>○ 위기경보 발령</li> <li>○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무조정실 식품안전사고 긴급대응단과 동시운영</li> </ul> </li> <li>○ 긴급대응회의 결과 보고</li> <li>○ 상황 보고 및 전파</li> </ul>
	위해정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동향 지속 모니터링</li> <li>○ 제외국 동향 모니터링</li> <li>○ 위해정보 상시 수집체계 가동</li> </ul>
	운영지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 발령 및 사무실 설치</li> </ul>
	상황관리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 내 관련팀 업무 진행상황 관리</li> <li>○ 일일 상황 보고서 작성 및 보고</li> <li>○ 관계부처 협의체 운영(필요 시)</li> <li>○ 상황보고 체계 유지 및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와대, 국무조정실 등</li> </ul> </li> </ul>
	언론대응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보계획 수립, 미디어 센터 설치 및 운영</li> <li>○ 언론 및 여론 동향 모니터링</li> <li>○ 보도자료 배포 및 대국민 정보 제공</li> <li>○ Q&amp;A 등 홍보자료 배포</li> </ul>
	총괄대응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괄관리</li> </ul>
	현장대응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거·검사, 회수·압류·폐기 총괄</li> <li>○ (잠정)수입·유통·판매 금지 조치 및 정보공개</li> <li>○ 일일 상황 관리시스템 운영 및 지방청, 시도 총괄관리</li> <li>○ 유관기관, 협회 및 단체와 협조체계 강화</li> </ul>
	검사대책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준미설정 물질인 경우 기준 및 시험법 적용 검토</li> <li>○ 검사기관 현황 파악 및 준비 등 검사지원</li> </ul>

구 분	담당부서	조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위생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결과 보고</li> <li>○ Q&amp;A , 보도자료 등 작성</li> </ul>	
		대외협력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통상 등 협력 업무</li> <li>○ 관련 법령 검토, 제도개선 등 법제업무 지원</li> <li>○ 이해관계자와의 정보교류</li> <li>○ 소비자신고 센터 운영</li> </ul>	
		위해평가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해평가 실시</li> <li>○ 시험분석기관 기술적 지원</li> <li>○ 부적합 결과 취합 분석 및 확인</li> </ul>	
		운영지원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시설·인력·물자 지원</li> <li>○ 소비자·산업체 전화대응(Hot-line) 업무 지원</li> </ul>	
	소속 기관	지방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거·검사 및 수입단계 검사 실시·보고</li> <li>○ 압류·회수 실시 및 보고</li> </ul>
	유관 기관	안행부	○ 긴급검사, 회수·폐기 등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업무 협조
		교육부	○ 학교급식 안전관리 및 학교주변 위해식품 점검
		관세청	○ 국제우편, 수입통관과정 등 수입 위해식품 확인 및 차단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거·검사 지원 및 부적합 발생 시 신속보고</li> <li>○ 압류·회수 지원 및 보고</li> </ul>
	후속조치 (「심각」 단계 종결시)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각 사업부서 운영지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결보고</li> <li>○ 상황전파</li> <li>○ 위기대응 평가 - 사후처리, 재발방지대책 강구</li> <li>○ 백서 또는 보고서 작성</li> <li>○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 해제</li> </ul>

#### 4.4.3. 유관기관 임무 및 역할

구 분	내 용	비 고
교육부	○ 학교급식 안전관리 및 학교주변 위해식품 점검	
안전행정부	○ 긴급검사, 회수·폐기 등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업무 협조(필요 시)	
관세청	○ 국제우편, 수입통관과정 등 수입 위해식품 확인 및 차단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거·검사 실시 및 부적합 발생 시 신속 보고</li> <li>○ 위해정보에 대한 상시 수집 체계 유지</li> </ul>	

## **제5절 수입·통관·유통 단계의 수산물 또는 축산물에서 유해물질 검출된 경우(위기상황 9, 10)**

### **4.5.1. 상 황**

- 수입 냉동새우에서 클로람페니콜 검출
  
- 수입 축산물(햄)에서 다이옥신 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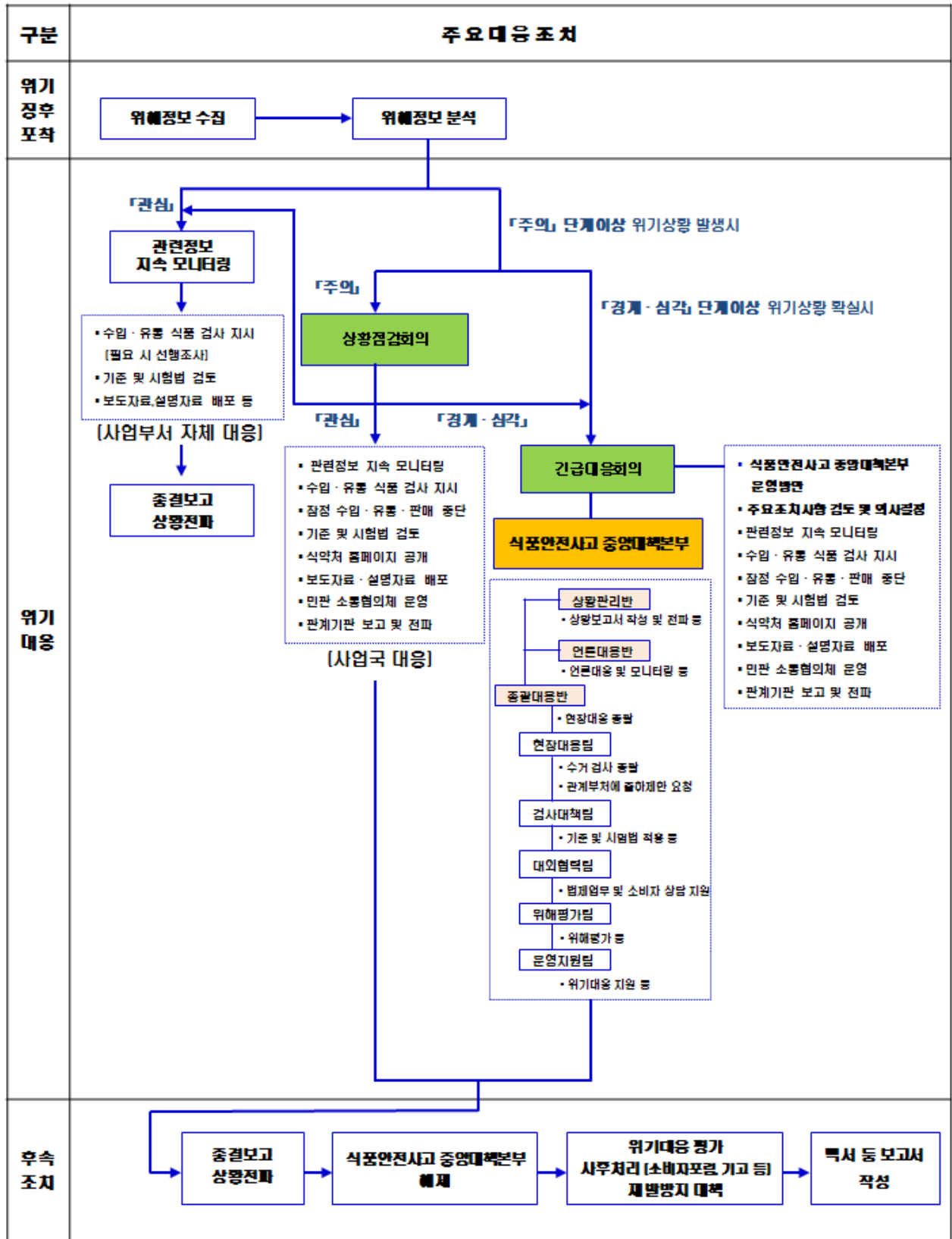
## 4.5.2. 조치사항 및 절차

### 4.5.2.1. 조치목록 총괄

구분	세부내용	담당부서
위기상황접수 및 보고/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해정보 수집·분석</li> <li>○ 정보예상정보 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해정보 분석내용 내부 보고 및 전파</li> </ul> </li> </ul>	○ 위해정보과, 각 사업부서
대응조치	○ 해외공관을 통한 위해정보 확인 요청	○ 국제협력담당관
	○ 제외국 동향 등 관련동향 지속 모니터링	○ 위해정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준미설정 물질인 경우 기준 및 시험법 적용 검토</li> <li>○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또는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운영</li> </ul>	○ 식품기준기획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황점검회의 개최</li> <li>○ 선행조사 실시(필요시)</li> <li>○ 긴급대응회의 개최</li> <li>○ 위기경보 발령</li> <li>○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 구성·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무조정실 식품안전사고 긴급대응단과 동시운영</li> <li>- 관계부처 협의체 회의 개최</li> </ul> </li> <li>○ 상황보고(청와대, 국무조정실 등) 및 전파</li> <li>○ 식품위생심의위원회(위해평가 분과) 운영</li> </ul>	○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 유통 현황 파악</li> <li>○ 잠정 수입·판매 금지 조치, 수거·검사 실시 및 압류·회수 조치</li> <li>○ 식약처 홈페이지 정보공개</li> <li>○ 수입·판매·유통 금지 조치 강화</li> <li>○ 일일 상황관리시스템 운영 및 전국 상황 모니터링</li> <li>○ 관계부처에 업무 협조 요청</li> <li>○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또는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운영</li> <li>○ Q&amp;A , 보도자료 등 작성</li> <li>○ 식약처 홈페이지 정보공개</li> </ul>	○ 검사실사과, 축산물위생안전과, 농수산물안전과
	○ 소비자 신고센터 운영	○ 고객지원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도자료 또는 해명·설명자료 배포(필요 시)</li> <li>○ 홍보계획 수립 , 미디어 센터 설치 및 운영</li> </ul>	○ 대변인실

구 분	세부내용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론보도 동향 분석</li> <li>○ 보도자료 배포 및 대국민 대처요령 등 TV, 인터넷 집중 홍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관소통협의체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통협력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해물질 독성자료 등 검토</li> <li>○ 시험범안 작성 및 통보</li> <li>○ 시험분석기관 기술 지원</li> <li>○ 위해평가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거·검사 및 수입단계 검사 실시·보고</li> <li>○ 압류·회수 실시 및 보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긴급검사, 회수·폐기 등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업무협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행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급식 안전관리 및 학교주변 위해식품 점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우편, 수입통관과정 등 수입 위해식품 확인 및 차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세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거·검사 지원 및 부적합 발생 시 신속보고</li> <li>○ 압류·회수 지원 및 보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li> </ul>
<p style="text-align: center;">후속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결보고</li> <li>○ 상황전파</li> <li>○ 위기대응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후처리, 재발방지대책 강구, 백서 또는 보고서 작성</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각 사업부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 해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지원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자포럼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통협력과</li> </ul>

#### 4.5.2.2. 조치절차



### 4.5.2.3. 위기경보 단계별 조치목록

#### < 관 심(Blue) >

수입 수산물 또는 축산물에서 기준치 초과 제품과 유사제품이 유통·판매

구 분	담당부서	조치사항	
위기징후 식별	위해정보과 각 사업부서	○ 위해정보 수집·분석	
보고·전파	위해정보과 각 사업부서	○ 위해정보 분석내용 내부 보고 ○ 관련동향 지속 모니터링	
대응조치	본부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 대응체계 점검 ○ 소속기관 및 관계기관과 협조체계 유지 ○ 선행조사(필요시)
		위해정보과	○ 관련 정보 및 동향 지속 모니터링 ○ 제외국 동향 모니터링
		검사실사과 (수산물, 축산물)	○ 수입 현황 파악 ○ 수입단계 검사 지시
		식품기준기획관	○ 기준미설정 물질인 경우 기준 및 시험법 적용 검토
		축산물위생안전과 (축산물)	○ 유통 현황 파악 및 유통가능성 검토 ○ 유통 축산물 수거·검사 지시
		농수산물안전과 (수산물)	○ 국내 농산물 안전성 검사 검토 ○ 유통현황 파악 및 유통가능성 검토 ○ 유통 농산물 수거·검사 지시
		국제협력담당관	○ 해외공관을 통한 위해정보 내용 확인 요청
		대변인실	○ 언론매체 취재동향 관찰 ○ 언론에 정보제공 및 협조체계 점검 ○ 보도자료 또는 해명·설명자료 배포(필요 시, 소관부서와 협력)
	소통협력과	○ 민관소통협의체 운영 검토	
	소속 기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유해물질 독성자료 등 검토 ○ 시험법 검토
		지방청	○ 수거·검사 및 수입단계 검사 실시·보고
유관 기관	관세청	○ 관련제품 정보 공유	
후속조치 (「관심」 단계 종결시)	각 사업부서	○ 종결보고 ○ 상황전파 ○ 위기대응 평가 - 사후처리, 재발방지대책 강구	



< 주 의(Yellow) >

수입 수산물 또는 축산물에서 유해물질 과다 검출된 제품이 유통·판매

구 분	담당부서	조치사항
위기징후 식별	위해정보과 각 사업부서 대변인실	○ 위해정보 수집·분석 ○ 언론보도 동향 분석
보고·전파	위해정보과 각 사업부서	○ 경보예상정보 전파 - 위해정보 분석내용 내부 보고 및 전파
대응조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 상황점검회의 개최 - 기준미설정 물질인 경우 시험법 확립 요청 - 선행조사 실시(필요시) ○ 상황점검회의 결과 보고 - 상황점검회의에서 「경계」 이상으로 위기 확산 가능성 있는 경우 긴급대응회의 개최 요청 ○ 상황보고 ○ 식품위생심의위원회(위해평가 분과) 운영(필요 시)
	위해정보과	○ 관련동향 지속 모니터링 ○ 제외국 동향 모니터링
	검사실사과 (수산물, 축산물)	○ 수입식품 검사 지시 ○ 잠정 수입 중단 조치 필요성 검토 - (잠정) 수입 중단 조치 ○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운영(필요 시)
	식품기준기획관	○ 기준미설정 물질인 경우 기준 및 시험법 검토 ○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또는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운영 (필요 시)
	축산물위생안전과 (축산물)	○ 잠정 유통 판매 중단 조치 필요성 검토 - (잠정) 유통 판매 중단 조치 ○ 수거·검사 범위 및 계획 검토 - 수거·검사 및 압류·회수 조치 ○ 식약처 홈페이지 정보공개 ○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운영(필요 시)

구 분	담당부서		조치사항
		농수산물안전과 (수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잠정 유통 판매 중단 조치 필요성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잠정) 유통 판매 중단 조치</li> </ul> </li> <li>○ 수거·검사 범위 및 계획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거·검사 및 압류·회수 조치</li> </ul> </li> <li>○ 식약처 홈페이지 정보공개</li> <li>○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운영(필요 시)</li> </ul>
		대변인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도자료 배포 또는 해명·설명자료 배포 (소관부서와 협력)</li> <li>○ 언론매체 지원 및 취재동향 관찰</li> </ul>
		소통협력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관소통협의체 운영</li> </ul>
	소속 기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해물질 독성자료 등 특성 검토</li> <li>○ 시험법안 작성 및 통보</li> </ul>
		지방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거·검사 및 수입단계 검사 실시·보고</li> <li>○ 압류·회수 실시 및 보고</li> </ul>
	유관 기관	관세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우편, 수입통관과정 등 수입 위해식품 확인 및 차단 협조</li> </ul>
	후속조치 (「주의」 단계 종결시)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각 사업부서	

< 경 계(Orange) >

○○국가에서 유해물질 과다 검출된 수산물 또는 축산물이 국내 대량 유통되거나  
관련 언론보도가 확산된 경우

구 분	담당부서	조치사항	
위기징후 식별	위해정보과 각 사업부서 대변인실	○ 위해정보 수집·분석 및 위기 확산 정보 파악 ○ 언론보도 동향 파악	
보고·전파	위해정보과 각 사업부서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 경보예상정보 전파 - 위해정보 분석내용 내부 보고 및 전파 ○ 긴급대응회의 개최 요청	
대응조치	본부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 긴급대응회의 개최 ○ 위기경보 발령 ○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 구성·운영 - 국무조정실 식품안전사고 긴급대응단 운영 검토 ○ 긴급대응회의 결과 보고 및 상황 보고
		위해정보과	○ 관련동향 지속 모니터링 ○ 제외국 동향 모니터링 ○ 위해정보 상시 수집체계 가동
		운영지원과	○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 발령 및 사무실 설치
		상황관리반	○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 내 관련팀 업무 진행상황 관리 ○ 일일 상황 보고서 작성 및 보고 ○ 관계부처 협의체 운영(필요 시) ○ 상황보고 체계 유지 및 협의 - 청와대, 국무조정실 등
		언론대응반	○ 홍보계획 수립, 미디어 센터 설치 및 운영 ○ 언론 및 여론 동향 모니터링 ○ 보도자료 배포 및 대국민 정보 제공 ○ Q&A 등 홍보자료 배포
		총괄대응반	○ 총괄관리

구 분	담당부서		조치사항
		현장대응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거·검사, 회수·압류·폐기 총괄</li> <li>○ (잠정)수입·유통·판매 금지 조치 및 정보공개</li> <li>○ 일일 상황 관리시스템 운영 및 지방청, 시·도 총괄관리</li> </ul>
		검사대책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준미설정 물질인 경우 기준 및 시험법 적용 검토</li> <li>○ 검사기관 현황 파악 및 준비 등 검사지원</li> <li>○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또는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결과 보고</li> <li>○ Q&amp;A , 보도자료 등 작성</li> </ul>
		대의협력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통상 등 협력 업무</li> <li>○ 관련 법령 검토, 제도개선 등 법제업무 지원</li> <li>○ 이해관계자와의 정보교류</li> <li>○ 소비자신고 센터 운영</li> </ul>
		위해평가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해평가 실시</li> <li>○ 시험분석기관 기술적 지원</li> <li>○ 부적합 결과 취합 분석 및 확인</li> </ul>
		운영지원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시설·인력·물자 지원</li> <li>○ 소비자·산업체 전화대응(Hot-line) 업무 지원</li> </ul>
	소속 기관	지방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거·검사 및 수입단계 검사 실시·보고</li> <li>○ 압류·회수 실시 및 보고</li> </ul>
	유관 기관	안행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긴급검사, 회수·폐기 등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업무 협조</li> </ul>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급식 안전관리 및 학교주변 위해식품 점검</li> </ul>
		관세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우편, 수입통관과정 등 수입 위해식품 확인 및 차단</li> </ul>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거·검사 지원 및 부적합 발생 시 신속보고</li> <li>○ 압류·회수 지원 및 보고</li> </ul>
<p>후속조치 (「경계」 단계 종결시)</p>	<p>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각 사업부서 운영지원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결보고</li> <li>○ 상황진과</li> <li>○ 위기대응 평가 - 사후처리, 재발방지대책 강구</li> <li>○ 백서 또는 보고서 작성</li> <li>○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 해제</li> </ul>

< 심 각(Red) >

유해물질 과다 검출된 수입 수산물 또는 축산물로 인해 국내 환자 또는 사망자 발생 등 심각하게 국민 불안감 야기된 경우

구 분	담당부서	조치사항	
위기징후 식별	위해정보과 각 사업부서 대변인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해정보 수집·분석 및 위기 확산 정보 파악</li> <li>○ 언론보도 동향 파악</li> </ul>	
보고·전파	위해정보과 각 사업부서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보예상정보 전파</li> <li>- 위해정보 분석내용 내부 보고 및 전파</li> <li>○ 긴급대응회의 개최 요청</li> </ul>	
대응조치	본부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긴급대응회의 개최</li> <li>○ 위기경보 발령</li> <li>○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무조정실 식품안전사고 긴급대응단과 동시운영</li> </ul> </li> <li>○ 긴급대응회의 결과 보고 및 상황 보고</li> </ul>
		위해정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동향 지속 모니터링</li> <li>○ 제외국 동향 모니터링</li> <li>○ 위해정보 상시 수집체계 가동</li> </ul>
		운영지원과	○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 발령 및 사무실 설치
		상황관리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 내 관련팀 업무 진행상황 관리</li> <li>○ 일일 상황 보고서 작성 및 보고</li> <li>○ 관계부처 협의체 운영(필요 시)</li> <li>○ 상황보고 체계 유지 및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와대, 국무조정실 등</li> </ul> </li> </ul>
		언론대응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보계획 수립, 미디어 센터 설치 및 운영</li> <li>○ 언론 및 여론 동향 모니터링</li> <li>○ 보도자료 배포 및 대국민 정보 제공</li> <li>○ Q&amp;A 등 홍보자료 배포</li> </ul>
		총괄대응반	○ 총괄관리
		현장대응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거·검사, 회수·압류·폐기 총괄</li> <li>○ (잠정)수입·유통·판매 금지 조치 및 정보공개</li> <li>○ 일일 상황 관리시스템 운영 및 지방청, 시·도 총괄관리</li> <li>○ 유관기관, 협회 및 단체와 협조체계 강화</li> </ul>
		검사대책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준미설정 물질인 경우 기준 및 시험법 적용 검토</li> <li>○ 검사기관 현황 파악 및 준비 등 검사지원</li> <li>○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또는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결과 보고</li> <li>○ Q&amp;A, 보도자료 등 작성</li> </ul>

구 분	담당부서		조치사항
		대외협력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통상 등 협력 업무</li> <li>○ 관련 법령 검토, 제도개선 등 범제업무 지원</li> <li>○ 이해관계자와의 정보교류</li> <li>○ 소비자신고 센터 운영</li> </ul>
		위해평가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해평가 실시</li> <li>○ 시험분석기관 기술적 지원</li> <li>○ 부적합 결과 취합 분석 및 확인</li> </ul>
		운영지원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시설·인력·물자 지원</li> <li>○ 소비자산업체 전화대응(Hot-line) 업무 지원</li> </ul>
	소속 기관	지방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거·검사 및 수입단계 검사 실시·보고</li> <li>○ 압류·회수 실시 및 보고</li> </ul>
	유관 기관	안행부	○ 긴급검사, 회수·폐기 등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업무 협조
		교육부	○ 학교급식 안전관리 및 학교주변 위해식품 점검
		관세청	○ 국제우편, 수입통관과정 등 수입 위해식품 확인 및 차단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거·검사 지원 및 부적합 발생 시 신속보고</li> <li>○ 압류·회수 지원 및 보고</li> </ul>
후속조치 (「심각」 단계 종결시)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각 사업부서 운영지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결보고</li> <li>○ 상황전파</li> <li>○ 위기대응 평가 - 사후처리, 재발방지대책 강구</li> <li>○ 백서 또는 보고서 작성</li> <li>○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 해제</li> </ul>	

#### 4.5.3. 유관기관 임무 및 역할

구 분	내 용	비 고
교육부	○ 학교급식 안전관리 및 학교주변 위해식품 점검	
안전행정부	○ 긴급검사, 회수·폐기 등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업무 협조(필요 시)	
관세청	○ 국제우편, 수입통관과정 등 수입 위해식품 확인 및 차단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거·검사 실시 및 부적합 발생 시 신속 보고</li> <li>○ 위해정보에 대한 상시 수집 체계 유지</li> </ul>	

## **제6절 수입·통관·유통 및 제조·가공·유통 단계에서 이물이 검출된 경우**

### **4.6.1. 상 황**

- 수입 냉동야채 가공품에서 쥐 사체 혼입
  
- 국내 제조·가공되어 유통 중 참치캔에서 칼날 검출

## 4.6.2. 조치사항 및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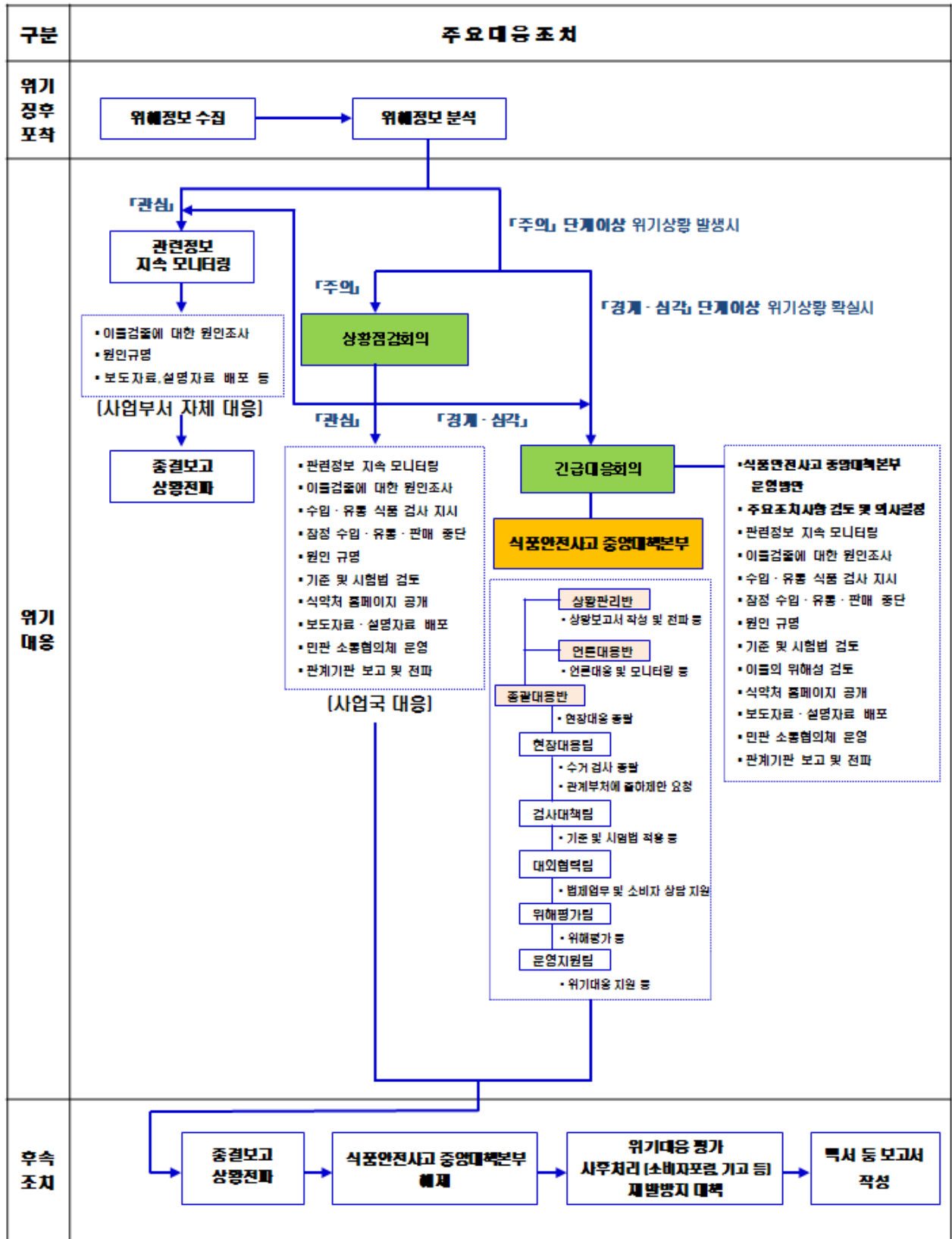
### 4.6.2.1. 조치목록 총괄

구분	세부내용	담당부서
위기상황접수 및 보고/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물 검출에 대한 신고 접수</li> <li>○ 위해정보 수집·분석</li> <li>○ 경보예상정보 전파</li> </ul>	○ 위해정보과, 각 사업부서
대응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황점검회의 개최</li> <li>○ 긴급대응회의 개최</li> <li>○ 위기경보 발령</li> <li>○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 구성·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무조정실 식품안전사고 긴급대응단과 동시운영</li> <li>- 관계부처 협의체 회의 개최</li> </ul> </li> <li>○ 상황보고(청와대, 국무조정실 등) 및 전파</li> <li>○ 식품위생심의위원회(위해평가 분과) 운영</li> </ul>	○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물관리시스템 접수, 처리</li> <li>○ 수입, 유통 현황 파악</li> <li>○ 이물 검출에 대한 원인조사</li> <li>○ 잠정 수입·유통·판매 금지 조치, 수거·검사 실시 및 압류·회수 조치</li> <li>○ 식약처 홈페이지 위해식품 정보공개</li> <li>○ 수입·판매·유통 금지 조치 강화</li> <li>○ 일일 상황관리시스템 운영 및 전국 상황 모니터링</li> <li>○ 관계부처에 업무 협조 요청</li> <li>○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또는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운영</li> <li>○ Q&amp;A, 보도자료 등 작성</li> <li>○ 식약처 홈페이지 정보공개</li> </ul>	○ 식품관리총괄과, 수입식품정책과, 축산물위생안전과, 검사실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자 신고센터 운영</li> </ul>	○ 고객지원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도자료 또는 해명·설명자료 배포(필요 시)</li> <li>○ 홍보계획 수립, 미디어 센터 설치 및 운영</li> <li>○ 언론보도 동향 분석</li> <li>○ 보도자료 배포 및 대국민 대처요령 등 TV, 인터넷 집중 홍보</li> </ul>	○ 대변인실



구 분	세부내용	담당부서
	○ 민관소통협의체 운영	○ 소통협력과
	○ 원인규명 ○ 시험범안 작성 및 통보 ○ 시험분석기관 기술 지원 ○ 이물의 위해성 검토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신중유해물질팀
	○ 유통제품 수거·검사(원인 조사) ○ 위해식품 압류·회수·폐기 실시 및 보고	○ 지방청
	○ 긴급검사, 회수·폐기 등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업무협조	○ 안행부
	○ 학교급식 안전관리 및 학교주변 위해식품 점검	○ 교육부
	○ 위해식품 압류·회수·폐기 지원	○ 지자체
	후속조치	○ 종결보고 ○ 상황전파 ○ 위기대응 평가 - 사후처리, 재발방지대책 강구, 백서 또는 보고서 작성
○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 해체		○ 운영지원과
○ 소비자포럼 운영		○ 소통협력과

#### 4.6.2.2. 조치절차



### 4.6.2.3. 위기경보 단계별 조치목록

#### < 관 심(Blue) >

이물 검출에 대한 신고 접수

구 분	담당부서	조치사항	
위기징후 식별	각 사업부서	○ 이물 검출에 대한 신고 접수	
보고·전파	각 사업부서	○ 위해정보 분석내용 내부 보고	
대응조치	수입식품정책과 (가공식품 등)	○ 수입현황 파악 및 수입가능성 검토	
	식품관리총괄과 (가공식품 등)	○ 이물관리시스템 접수, 처리 ○ 유통현황 파악 및 유통가능성 검토 ○ 유통 제품 수거·검사(원인조사) ○ 위해식품 홈페이지 공개 및 문자메세지 전파	
	축산물위생안전과 (축산물)	○ 유통현황 파악 및 유통가능성 검토 ○ 유통 축산물 수거·검사(원인조사) ○ 위해축산물 홈페이지 공개 및 문자메세지 전파	
	검사실사과 (축산물)	○ 수입현황 파악 및 수입가능성 검토	
	대변인실	○ 언론매체 취재동향 관찰 ○ 언론에 정보제공 및 협조체계 점검	
	소속 기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신중유해물질팀	○ 원인규명(필요 시)
		지방청	○ 유통 제품 수거·검사(원인조사)
	유관 기관	지자체	○ 유통 제품 수거·검사(원인조사)
후속조치 (「관심」 단계 종결시)	각 사업부서	○ 종결보고	

< 주 의(Yellow) >

수입 또는 유통단계에서 혐오감을 주거나 직접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이물이 검출되는 경우

구 분	담당부서	조치사항	
위기징후 식별	위해정보과 대변인실 각 사업부서	○ 위해정보 수집·분석 ○ 언론보도 동향 파악	
보고·전파	위해정보과 각 사업부서	○ 경보예상정보 전파 - 위해정보 분석내용 내부 보고 및 전파	
대응조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 상황점검회의 개최 및 결과보고 - 상황점검회의에서 「경계」 이상으로 위기 확산 가능성이 있는 경우 긴급대응회의 개최 요청	
	위해정보과	○ 식품위생심의위원회(위해평가 분과) 운영(필요 시)	
	수입식품정책과 (가공식품 등)	○ (잠정) 중단 조치 필요성 검토 - (잠정) 수입 중단 조치 ○ 해당국에 원인규명 요청 ○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운영(필요 시)	
	식품관리총괄과 (가공식품 등)	○ 이물 검출에 대한 원인조사 ○ (잠정) 중단 조치 필요성 검토 - (잠정) 유통 판매 중단 조치 ○ 수거·검사 범위 및 계획 검토 - 수거·검사 및 압류·회수 조치 ○ 위해식품 홈페이지 정보공개 ○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운영(필요 시)	
	축산물위생안전과 (축산물)	○ 이물 검출에 대한 원인조사 ○ (잠정) 중단 조치 필요성 검토 - (잠정) 유통 판매 중단 조치 ○ 수거·검사 범위 및 계획 검토 - 수거·검사 및 압류·회수 조치 ○ 위해식품 홈페이지 정보공개 ○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운영(필요 시)	
	검사실사과 (축산물)	○ (잠정) 중단 조치 필요성 검토 - (잠정) 수입 중단 조치 ○ 해당국에 원인규명 요청 ○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운영(필요 시)	
	대변인실	○ 보도자료 또는 해명설명자료 배포(필요 시, 소관부서와 협력)	
	소통협력과	○ 민관소통협의체 운영 검토	
	소속기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신종유해물질팀	○ 원인규명(필요 시)
	지방청	○ 유통 제품 수거·검사(원인조사) ○ 위해식품 압류·회수·폐기 실시 및 보고	
유관기관	지자체	○ 위해식품 압류·회수·폐기 지원	
후속조치 (「주의」 단계 종결시)	○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 각 사업부서	○ 종결보고 ○ 상황전파	

< 경 계(Orange) >

수입 또는 유통단계에서 혐오감을 주거나 직접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이물이 검출된 제품이 국내 대량 유통되거나 관련 언론보도가 확산된 경우

구 분	담당부서	조치사항
위기징후 식별	위해정보과 대변인실 각 사업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해정보 수집·분석</li> <li>○ 언론보도 동향 파악</li> </ul>
보고·전파	위해정보과 각 사업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보예상정보 전파</li> <li>- 위해정보 분석내용 내부 보고 및 전파</li> </ul>
대응조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긴급대응회의 개최</li> <li>○ 위기경보 발령</li> <li>○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무조정실 식품안전사고 긴급대응단 운영 검토</li> </ul> </li> <li>○ 긴급대응회의 결과 보고 및 상황 보고</li> </ul>
	운영지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 발령 및 사무실 설치</li> </ul>
	상황관리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 내 관련팀 업무 진행상황 관리</li> <li>○ 일일 상황 작성 및 보고</li> <li>○ 관계부처 협의체 운영(필요 시)</li> <li>○ 상황보고 체계 유지 및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와대, 국무조정실 등</li> </ul> </li> </ul>
	언론대응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보계획 수립, 미디어 센터 설치 및 운영</li> <li>○ 언론 및 여론 동향 모니터링</li> <li>○ 보도자료 배포 및 대국민 정보 제공</li> <li>○ Q&amp;A 등 홍보자료 배포</li> </ul>
	총괄대응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괄관리</li> </ul>
	현장대응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거·검사, 회수·압류·폐기 총괄</li> <li>○ (잠정)수입·유통·판매 금지 조치 및 정보공개</li> <li>○ 일일 상황 관리시스템 운영 및 지방청, 시·도 총괄관리</li> </ul>

구 분	담당부서		조치사항
		검사대책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사기관 현황 파악 및 준비 등 검사지원</li> <li>○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또는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결과 보고</li> <li>○ Q&amp;A , 보도자료 등 작성</li> </ul>
		대의협력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해관계자와의 정보교류</li> <li>○ 소비자신고 센터 운영</li> </ul>
		위해평가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물의 위해성 검토</li> <li>○ 원인규명(필요 시)</li> </ul>
		운영지원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시설·인력·물자 지원</li> <li>○ 소비자·산업체 전화대응(Hot-line) 업무 지원</li> </ul>
	소속 기관	지방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통 제품 수거·검사(원인조사)</li> <li>○ 위해식품 압류·회수·폐기 실시 및 보고</li> </ul>
	유관 기관	안행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긴급검사, 회수·폐기 등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업무 협조</li> </ul>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급식 안전관리 및 학교주변 위해식품 점검</li> </ul>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해식품 압류·회수·폐기 지원</li> </ul>
<p>후속조치 (「경계」 단계 종결시)</p>	<p>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각 사업부서 운영지원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결보고</li> <li>○ 상황전파</li> <li>○ 위기대응 평가 - 사후처리, 재발방지대책 강구</li> <li>○ 백서 또는 보고서 작성</li> <li>○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 해체</li> </ul>

< 심 각(Red) >

수입 또는 유통단계에서 혐오감을 주거나 직접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이물이 검출된 제품으로 인한 환자 또는 사망자 발생 등 심각하게 국민 불안감 야기된 경우

구 분	담당부서	조치사항
위기징후 식별	위해정보과 대변인실 각 사업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해정보 수집·분석</li> <li>○ 언론보도 동향 파악</li> </ul>
보고·전파	위해정보과 각 사업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보 예상정보 전파</li> <li>- 위해정보 분석내용 내부 보고 및 전파</li> </ul>
대응조치	본부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긴급대응회의 개최</li> <li>○ 위기경보 발령</li> <li>○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무조정실 식품안전사고 긴급대응단 동시운영</li> </ul> </li> <li>○ 긴급대응회의 결과 보고 및 상황 보고</li> </ul>
		운영지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 발령 및 사무실 설치</li> </ul>
		상황관리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 내 관련팀 업무 진행상황 관리</li> <li>○ 일일 상황 작성 및 보고</li> <li>○ 관계부처 협의체 운영(필요 시)</li> <li>○ 상황보고 체계 유지 및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와대, 국무조정실 등</li> </ul> </li> </ul>
		언론대응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보계획 수립, 미디어 센터 설치 및 운영</li> <li>○ 언론 및 여론 동향 모니터링</li> <li>○ 보도자료 배포 및 대국민 정보 제공</li> <li>○ Q&amp;A 등 홍보자료 배포</li> </ul>
		총괄대응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괄관리</li> </ul>
		현장대응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거·검사, 회수·압류·폐기 총괄</li> <li>○ (잠정)수입·유통·판매 금지 조치 및 정보공개</li> <li>○ 일일 상황 관리시스템 운영 및 지방청, 시도 총괄관리</li> </ul>

구 분	담당부서		조치사항
		검사대책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사기관 현황 파악 및 준비 등 검사지원</li> <li>○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또는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결과 보고</li> <li>○ Q&amp;A , 보도자료 등 작성</li> </ul>
		대외협력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해관계자와의 정보교류</li> <li>○ 소비자신고 센터 운영</li> </ul>
		위해평가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물의 위해성 검토</li> <li>○ 원인규명(필요 시)</li> </ul>
		운영지원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시설·인력·물자 지원</li> <li>○ 소비자·산업체 전화대응(Hot-line) 업무 지원</li> </ul>
	소속 기관	지방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통 제품 수거·검사(원인조사)</li> <li>○ 위해식품 압류·회수·폐기 실시 및 보고</li> </ul>
	유관 기관	안행부	○ 긴급검사, 회수·폐기 등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업무 협조
		교육부	○ 학교급식 안전관리 및 학교주변 위해식품 점검
		지자체	○ 위해식품 압류·회수·폐기 지원
후속조치 (「심각」 단계 종결시)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각 사업부서 운영지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결보고</li> <li>○ 상황전파</li> <li>○ 위기대응 평가 - 사후처리, 재발방지대책 강구</li> <li>○ 백서 또는 보고서 작성</li> <li>○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 해제</li> </ul>	

#### 4.6.3. 유관기관 임무 및 역할

구 분	내 용	비 고
교육부	○ 학교급식 안전관리 및 학교주변 위해식품 점검	
안전행정부	○ 긴급검사, 회수·폐기 등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업무 협조(필요 시)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거·검사 실시 및 부적합 발생 시 신속 보고</li> <li>○ 위해정보에 대한 상시 수집 체계 유지</li> </ul>	



## 제7절 생산단계 농·수·축산물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경우(위기 상황 16, 17, 18)

### 4.7.1. 상 황

- 폐광지역 농산물에서 중금속 기준치 초과 검출
- 심해성 어류에서 메틸수은이 기준치 초과 검출
- 돼지고기에서 허용되지 않은 동물용 의약품 검출
- 지역 공단 내 화학공장 탱크로리에서 불산이 누출되어 인근 농산물 및 가축 피해 발생
- 서해안 원유수송선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으로 인근 수산물 유해 물질 오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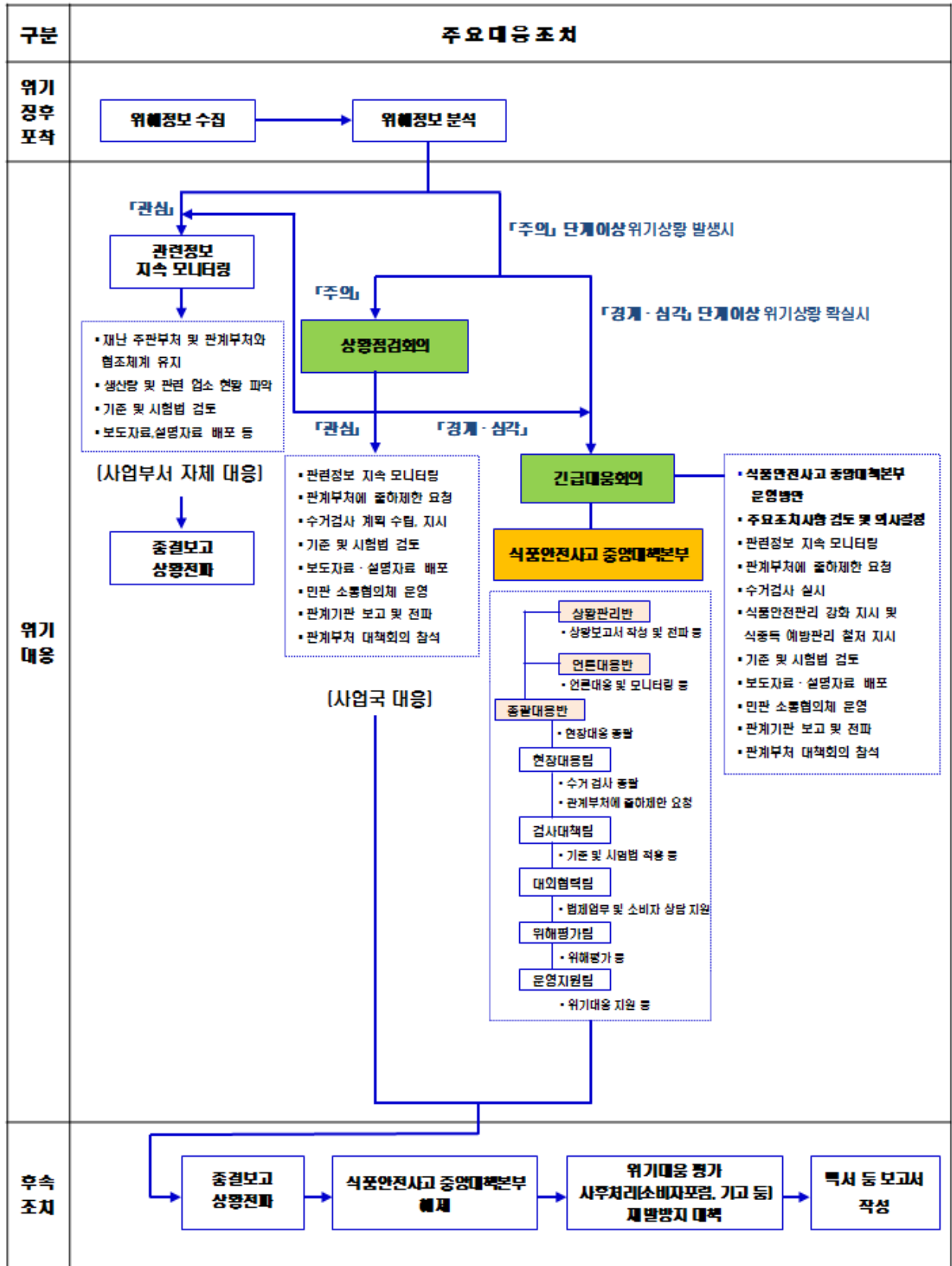
## 4.7.2. 조치사항 및 절차

### 4.7.2.1. 조치목록 총괄

구분	세부내용	담당부서
위기상황접수 및 보고/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해정보 수집·분석 및 확산 정보 파악</li> <li>○ 위해정보 분석내용 내부 보고 및 전파</li> </ul>	○ 위해정보과, 각 사업부서
대응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정보 및 동향 지속 모니터링</li> <li>○ 재난 주관기관에 관련정보 확인</li> <li>○ 위해정보 상시 수집체계 가동</li> </ul>	○ 위해정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부처 협의체 점검 및 운영(필요 시)</li> <li>○ 사업부서 조치내역 확인</li> <li>○ 상황점검회의 개최 및 결과 보고</li> <li>○ 선행조사 계획 검토</li> <li>○ 긴급대응회의 개최 및 결과보고</li> <li>○ 위기경보 발령</li> <li>○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무조정실 식품안전사고 긴급대응단과 동시운영</li> </ul> </li> <li>○ 상황보고 체계 유지 및 협의(청와대, 국무조정실 등)</li> <li>○ 관계부처 대책회의 참석 및 결과보고</li> <li>○ 식품위생심의위원회(위해평가 분과) 운영(필요 시)</li> </ul>	○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 발령 및 사무실 설치</li> <li>○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 설치에 따른 시설·인력·물자 지원</li> </ul>	○ 운영지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준 및 시험법 적용 검토</li> <li>○ 시험법 확립·통보</li> <li>○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또는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결과 보고(필요 시)</li> </ul>	○ 식품기준기획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 현황 파악</li> <li>○ 수거·검사 등을 위한 장비현황 검토</li> <li>○ 농·수산물 수거·검사 지시</li> <li>○ 시험법 통보(지방청, 지자체)</li> <li>○ 관계부처에 농·수산물 출하제한 요청</li> <li>○ 식품위생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결과 보고(필요 시)</li> <li>○ 일일 상황 관리 및 지방청, 시·도 총괄관리</li> <li>○ Q&amp;A, 보도자료 등 작성</li> </ul>	○ 농수산물안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 현황 파악</li> <li>○ 관련부처에 축산물 출하제한 요청</li> </ul>	○ 축산물위생안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가공 업소 현황 파악</li> <li>○ 해당 지역 지방청 및 지자체에 식품안전관리강화 지시</li> </ul>	○ 식품관리총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급식소 현황 파악</li> </ul>	○ 식중독예방과

구 분	세부내용	담당부서
	○ 해당 지역 지방청 및 지자체에 식중독 예방관리 철저 지시	
	○ 검사기관 현황 파악 및 준비 등 검사지원	○ 검사제도과
	○ 소비자 신고센터 운영	○ 고객지원담당관
	○ 언론매체 취재동향 관찰 ○ 언론에 정보제공 및 협조체계 점검 ○ 보도자료 또는 해명·설명자료 배포(필요 시) ○ 홍보계획 수립, 브리핑 센터 설치 및 운영 ○ 언론보도 및 여론 동향 모니터링 ○ 대국민 정보제공 ○ Q&A 등 홍보자료 배포	○ 대변인실
	○ 위해소통 민관협의회 운영	○ 소통협력과
	○ 유해화학물질의 독성자료 등 검토 ○ 시험법안 작성 및 통보 ○ 위해평가 실시 및 위해평가 보고서 작성 ○ 시험분석기관 기술 지원 ○ 부적합 결과 취합 분석 및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피해현장 상황 파악 및 보고 ○ 농·축·수산물 생산 현황 및 업소 현황 파악 ○ 선행조사 실시 및 결과보고 ○ 분석장비 시약 등 보유여부 확인 및 긴급구매 ○ 수거·검사 실시 및 결과 보고	○ 지방청
	○ 재난으로 인한 농·축산물 유해화학물질 오염 관련 정보 공유 ○ 관계부처 협의체 회의 참여 ○ 농산물, 축산물의 생산, 유통량 파악 협조 ○ 해당 농·축산물 출하제한 조치	○ 농식품부
	○ 재난으로 인한 수산물 유해화학물질 오염 관련 정보 공유 ○ 관계부처 협의체 참여 ○ 수산물 생산, 유통량 파악 협조 ○ 해당 수산물 출하제한 조치	○ 해수부
	○ 재난으로 인한 농·축·수산물 유해화학물질 오염 관련 정보 공유 ○ 관계부처 협의체 회의 참여 ○ 재배환경 오염 현황 등 자료 협조	○ 환경부
	○ 피해현장 상황 파악 및 보고 ○ 사고 발생 지역 내 농·축·수산물 생산 및 식품관련 업소 현황 제공 ○ 분석장비 시약 등 보유여부 확인 및 긴급구매 ○ 수거·검사 실시 및 결과 보고	○ 지자체
후속조치	○ 종결보고 및 상황전파 ○ 백서 또는 보고서 작성 ○ 위기대응 평가, 사후처리 강구	○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 각 사업부서
	○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 해제	○ 운영지원과
	○ 소비자포럼 운영	○ 소통협력과

#### 4.7.2.2. 조치절차



### 4.7.2.3. 위기경보 단계별 조치목록

#### < 관 심(Blue) >

생산단계 농·수·축산물에서 유해물질 검출 또는 재난(유해화학물질 유출 및 대규모 환경오염) 발생 정보 입수

구 분	담당부서		조치사항
위기징후 식별	위해정보과 각 사업부서		○ 위해정보 수집·분석
보고·전파	위해정보과 각 사업부서		○ 위해정보 분석내용 내부 보고
대응조치	본부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 선행조사 계획 수립 검토 ○ 관계부처 협의체 점검 ○ 사업부서 조치내역 확인
		위해정보과	○ 관련 정보 및 동향 지속 모니터링 ○ 재난 주관기관에 관련정보 확인
		식품기준기획관	○ 기준 및 시험법 적용 검토
		농수산물안전과 (농·수산물)	○ 생산 현황 파악 ○ 수거·검사 등을 위한 검체채취 장비 현황 검토
		축산물위생안전과 (축산물)	○ 생산 현황 파악
		식품관리총괄과	○ 제조·가공 업소 현황 파악
		식중독예방과	○ 집단급식소 현황 파악
		대변인실	○ 언론매체 취재동향 관찰 ○ 언론에 정보제공 및 협조체계 점검 ○ 보도자료 또는 해명설명자료 배포(필요 시, 소관부서와 협력)
		소통협력과	○ 위해소통 민관협의회 운영 검토
	소속기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독성자료 등 검토 ○ 시험법 검토
		지방청	○ 피해현장 상황 파악 및 보고 ○ 농·축·수산물 생산 현황 및 업소 현황 파악 보고 ○ 선행조사 실시 및 결과 보고(필요 시)
	유관기관	농식품부	○ 관련정보 공유 ○ 농산물, 축산물 생산량 파악 협조
		해수부	○ 관련정보 공유 ○ 수산물 생산량 파악 협조
		환경부	○ 재배환경 오염 현황 등 관련 자료 제공
		지자체	○ 유출사고 관련정보 수집 보고 ○ 사고 발생 지역 내 농·축·수산물 생산 및 식품관련 업소 현황 제공
	후속조치 (「관심」 단계 종결시)	사업부서	○ 종결보고 및 상황전파

< 주 의(Yellow) >

생산단계 농·수축산물에서 유해물질 과다 검출 또는 재난으로 농·수축산물 유해물질 오염 가능성 정보 입수

구 분	담당부서	조치사항
위기징후 식별	위해정보과 각 사업부서 대변인실	○ 위해정보 수집·분석 ○ 언론보도 동향 분석
보고·전파	위해정보과 각 사업부서	○ 위해정보 분석내용 내부 보고 및 전파
대응조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 상황점검회의 개최 ○ 상황점검회의 결과 보고 - 상황점검회의에서 「경계」 이상으로 위기 확산 가능성 있는 경우 긴급대응회의 개최 요청 ○ 관계부처 대책회의 참석 및 관계부처와 수거·검사 협의 ○ 선행조사 계획 검토 ○ 식품위생심의위원회(위해평가 분과) 운영(필요 시)
	위해정보과	○ 관련 정보 및 동향 지속 모니터링 ○ 재난 주관기관 등에 관련정보 확인
	식품기준기획관	○ 기준시험법 검토 및 시험법 확립·통보 ○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또는 축산물심의위원회 운영(필요 시)
	농수산물안전과 (농수산물)	○ 농·수산물 수거·검사 지시 ○ 시험법 통보(지방청, 지자체) ○ 관련부처에 해당 농·수산물 출하제한 요청 ○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운영(필요 시)
	축산물위생안전과 (축산물)	○ 관련부처에 해당 축산물 출하제한 요청
	식품관리총괄과	○ 해당 지역 지방청 및 지자체에 식품안전관리 지시
	식중독예방과	○ 해당 지역 지방청 및 지자체에 식중독 예방관리 지시
	대변인실	○ 보도자료 또는 해명·설명자료 배포

구 분	담당부서		조치사항	
			(소관부서와 협력) ○ 언론매체 지원 및 취재동향 관찰	
		소통협력과	○ 위해소통 민관협의회 운영 검토	
	소속 기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시험법안 작성 및 통보 ○ 위해평가 실시(필요 시)	
		지방청	○ 피해현장 상황 파악 및 보고 ○ 분석장비 시약 등 보유여부 확인 및 긴급구매 ○ 수거·검사 실시 및 결과 보고	
	유관 기관	농식품부	○ 재난으로 인한 농·축산물 유해화학물질 오염 관련정보 공유 ○ 국내산 농산물, 축산물 생산, 유통량 파악 협조 ○ 해당 농·축산물 출하제한 조치	
		해수부	○ 재난으로 인한 수산물 유해화학물질 오염 관련정보 공유 ○ 국내산 수산물 생산, 유통량 파악 협조 ○ 해당 수산물 출하제한 조치	
		환경부	○ 재난으로 인한 농·축·수산물 유해화학물질 오염 관련정보 공유 ○ 재배환경 오염 현황 등 자료 협조	
		지자체	○ 피해현장 상황 파악 및 보고 ○ 분석장비 시약 등 보유여부 확인 및 긴급구매 ○ 수거·검사 실시 및 결과 보고	
	후속조치 (「주의」 단계 종결시)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 종결보고 및 상황전파

< 경 계(Orange) >

생산단계 유해물질 과다 검출된 농·수·축산물의 대량유통 또는 재난으로 농·수·축산물 유해물질 오염 확산

구 분	담당부서	조치사항
위기징후 식별	위해정보과 각 사업부서 대변인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해정보 수집·분석 및 위기 확산 정보 파악</li> <li>○ 언론보도 동향 파악</li> </ul>
보고·전파	위해정보과 각 사업부서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 분석 내용 내부 보고 및 전파</li> <li>○ 위해정보 보고 및 긴급대응회의 개최 요청</li> </ul>
대응조치	본부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긴급대응회의 개최</li> <li>○ 긴급대응회의 결과 보고</li> <li>○ 위기경보 발령</li> <li>○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각」 단계)국무조정실 식품안전사고 긴급대응단 동시운영</li> </ul> </li> </ul>
		위해정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동향 지속 모니터링</li> <li>○ 위해정보 상시 수집체계 가동</li> </ul>
		운영지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 발령 및 사무실 설치</li> </ul>
		상황관리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 내 관련팀 업무 진행상황 관리</li> <li>○ 일일 상황 보고서 작성 및 보고</li> <li>○ 상황보고 체계 유지 및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와대, 국무조정실 등</li> </ul> </li> <li>○ 관계부처 대책회의 참석 및 결과 보고, 관계부처 협의체 운영(필요 시)</li> </ul>
		언론대응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보계획 수립, 브리핑 센터 설치 및 운영</li> <li>○ 언론 및 여론 동향 모니터링</li> <li>○ 보도자료 배포 및 대국민 정보 제공</li> <li>○ Q&amp;A 등 홍보자료 배포</li> <li>○ 민관 협의회 운영</li> </ul>
		총괄대응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괄관리</li> </ul>
		현장대응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거·검사 총괄</li> <li>○ 일일 상황 관리 및 지방청, 시도 총괄관리</li> <li>○ 해당 지방청 및 지자체에 식품안전관리 강화 및 식중독 예방관리 철저 지시</li> </ul>
		검사대책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준미설정 물질인 경우 기준 및 시험법 적용 검토</li> </ul>



구 분	담당부서		조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사기관 현황 파악 및 준비 등 검사지원</li> <li>○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축산물심의위원회 운영 개최 및 심의결과 보고</li> <li>○ Q&amp;A, 보도자료 등 작성</li> </ul>
		대외협력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법령 검토, 제도개선 등 법제업무 지원</li> <li>○ 소비자신고 센터 운영</li> </ul>
		위해평가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해화학물질의 독성자료 등 검토</li> <li>○ 위해평가 실시(필요 시)</li> <li>○ 위해평가 보고서 작성</li> <li>○ 시험분석기관 기술적 지원</li> <li>○ 부적합 결과 취합 분석 및 확인</li> </ul>
		운영지원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인력·물자 지원</li> </ul>
	소속 기관	지방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현장 상황 파악 및 보고</li> <li>○ 수거·검사 실시 및 결과 보고</li> <li>○ 분석장비, 시약 등 보유여부 확인 및 긴급구매</li> </ul>
	유관 기관	농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으로 인한 농·축산물 유해화학물질 오염 관련정보 공유</li> <li>○ 관계부처 협의체 회의 참여</li> <li>○ 국내산 농산물, 축산물 생산, 유통량 파악</li> <li>○ 해당 농·축산물 출하제한 조치</li> </ul>
		해수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으로 인한 수산물 유해화학물질 오염 관련정보 공유</li> <li>○ 관계부처 협의체 회의 참여</li> <li>○ 국내산 수산물 생산, 유통량 파악 협조</li> <li>○ 해당 수산물 출하제한 조치</li> </ul>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으로 인한 농·축·수산물 유해화학물질 오염 관련정보 공유</li> <li>○ 관계부처 협의체 회의 참여</li> <li>○ 재배환경 오염 현황 등 자료 협조</li> </ul>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현장 상황 파악 및 보고</li> <li>○ 분석장비, 시약 등 보유여부 확인 및 긴급구매</li> <li>○ 수거·검사 실시 및 결과 보고</li> </ul>
	후속조치 (「경계」 단계 종결시)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각 사업부서 운영지원과 소통협력과	

< 심 각(Red) >

생산단계 유해물질 과다 검출된 농·수·축산물로 인해 국내 환자 또는 사망자 발생 등 심각하게 국민불안감 야기된 경우

구 분	담당부서	조치사항	
위기징후 식별	위해정보과 각 사업부서 대변인실	○ 위해정보 수집·분석 및 위기 확산 정보 파악 ○ 언론보도 동향 파악	
보고·전파	위해정보과 각 사업부서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 정보 분석 내용 내부 보고 및 전파 ○ 위해정보 보고 및 긴급대응회의 개최 요청	
대응조치	본부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 긴급대응회의 개최 ○ 긴급대응회의 결과 보고 ○ 위기경보 발령 ○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 구성 - (「심각」 단계)국무조정실 식품안전사고 긴급대응단 동시운영
		위해정보과	○ 관련동향 지속 모니터링 ○ 위해정보 상시 수집체계 가동
		운영지원과	○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 발령 및 사무실 설치
		상황관리반	○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 내 관련팀 업무 진행상황 관리 ○ 일일 상황 보고서 작성 및 보고 ○ 상황보고 체계 유지 및 협의 - 청와대, 국무조정실 등 ○ 관계부처 대책회의 참석 및 결과 보고, 관계부처 협의체 운영(필요 시)
		언론대응반	○ 홍보계획 수립, 브리핑 센터 설치 및 운영 ○ 언론 및 여론 동향 모니터링 ○ 보도자료 배포 및 대국민 정보 제공 ○ Q&A 등 홍보자료 배포 ○ 민관 협의회 운영
		총괄대응반	○ 총괄관리
		현장대응팀	○ 수거·검사 총괄 ○ 일일 상황 관리 및 지방청, 시도 총괄관리 ○ 해당 지방청 및 지자체에 식품안전관리 강화 및 식중독 예방관리 철저 지시
		검사대책팀	○ 기준미설정 물질인 경우 기준 및 시험법 적용 검토

구 분	담당부서		조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사기관 현황 파악 및 준비 등 검사지원</li> <li>○ 식품위생심의위원회 개최 축산물심의위원회 운영 및 심의결과 보고</li> <li>○ Q&amp;A, 보도자료 등 작성</li> </ul>
		대외협력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법령 검토, 제도개선 등 법제업무 지원</li> <li>○ 소비자신고 센터 운영</li> </ul>
		위해평가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해화학물질의 독성자료 등 검토</li> <li>○ 위해평가 실시(필요 시)</li> <li>○ 위해평가 보고서 작성</li> <li>○ 시험분석기관 기술적 지원</li> <li>○ 부적합 결과 취합 분석 및 확인</li> </ul>
		운영지원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인력·물자 지원</li> </ul>
	소속 기관	지방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현장 상황 파악 및 보고</li> <li>○ 수거·검사 실시 및 결과 보고</li> <li>○ 분석장비, 시약 등 보유여부 확인 및 긴급구매</li> </ul>
	유관 기관	농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으로 인한 농·축산물 유해화학물질 오염 관련정보 공유</li> <li>○ 관계부처 협의체 회의 참여</li> <li>○ 국내산 농산물, 축산물 생산, 유통량 파악</li> <li>○ 해당 농·축산물 출하제한 조치</li> </ul>
		해수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으로 인한 수산물 유해화학물질 오염 관련정보 공유</li> <li>○ 관계부처 협의체 회의 참여</li> <li>○ 국내산 수산물 생산, 유통량 파악 협조</li> <li>○ 해당 수산물 출하제한 조치</li> </ul>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으로 인한 농·축·수산물 유해화학물질 오염 관련정보 공유</li> <li>○ 관계부처 협의체 회의 참여</li> <li>○ 재배환경 오염 현황 등 자료 협조</li> </ul>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현장 상황 파악 및 보고</li> <li>○ 분석장비, 시약 등 보유여부 확인 및 긴급구매</li> <li>○ 수거·검사 실시 및 결과 보고</li> </ul>
	후속조치 (「경계」 단계 종결시)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각 사업부서 운영지원과 소통협력과	

### 4.7.3. 유관기관 임무 및 역할

구 분	내 용	비 고
안전행정부	○ 긴급검사, 회수폐기 등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업무 협조(필요 시)	
농식품부	○ 농·축산물 생산·유통량 파악 ○ 피해지역 농·축산물 출하제한	
해수부	○ 수산물 생산·유통량 파악 ○ 피해지역 수산물 출하제한 ○ 대규모 환경오염(해양오염)에 대한 주관부처	
환경부	○ 피해지역 재배환경 오염현황 자료 협조 ○ 화학유해물질 누출 및 대규모 환경오염(수질오염)에 대한 주관부처	
지자체	○ 수거·검사 실시 및 부적합 발생 시 신속 보고 ○ 위해정보에 대한 상시 수집 체계 유지	

## **제8절 제조·가공·유통 단계의 축산물에서 유해물질 검출된 경우(위기 상황 19)**

### **4.8.1. 상 황**

- 국내 제조·유통 중인 햄에서 아질산이온 기준 초과 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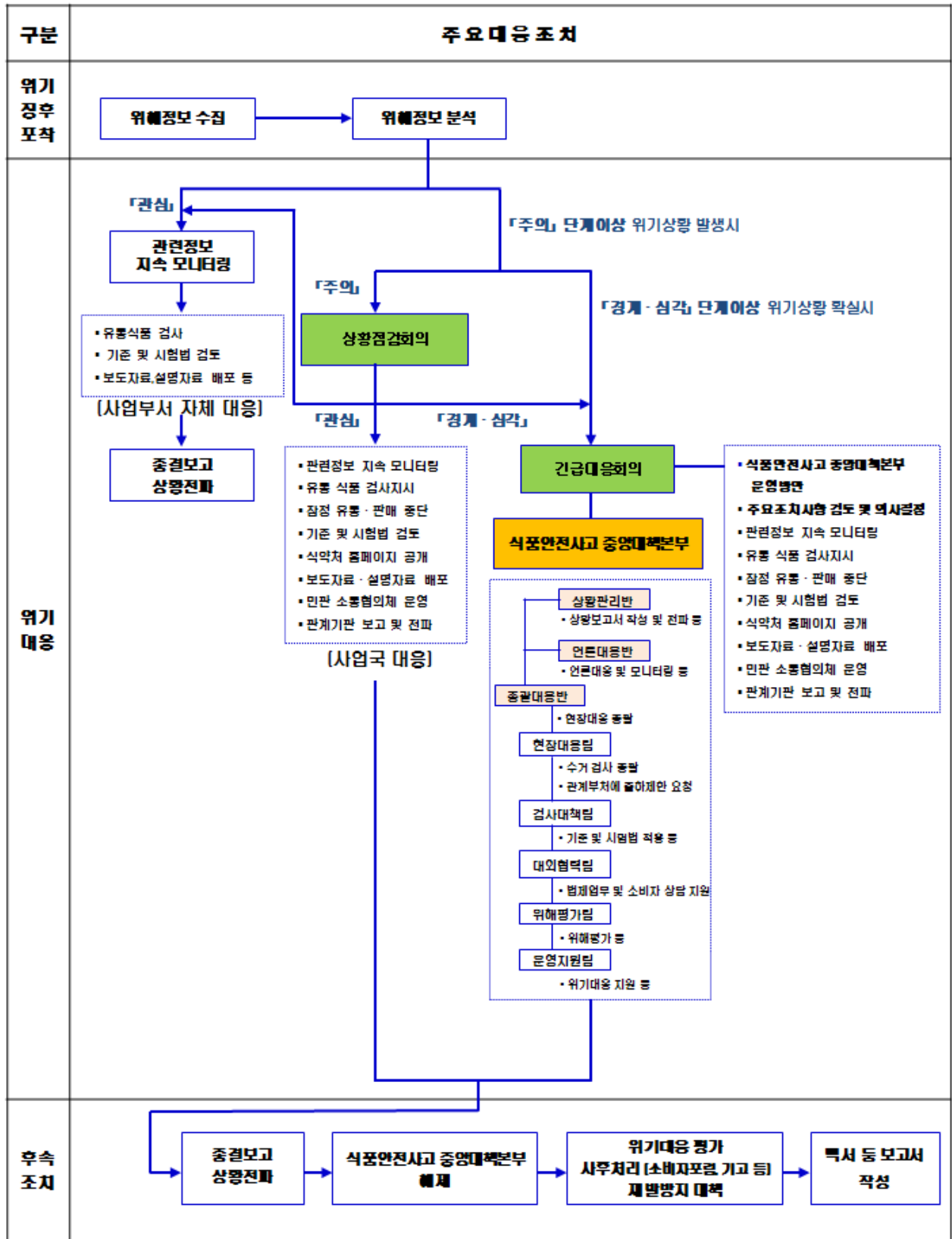
## 4.8.2. 조치사항 및 절차

### 4.8.2.1. 조치목록 총괄

구분	세부내용	담당부서
위기상황접수 및 보고/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해정보 수집·분석</li> <li>○ 경보예상정보 전파</li> <li>- 위해정보 분석내용 내부 보고 및 전파</li> </ul>	○ 위해정보과, 각 사업부서
대응조치	○ 관련동향 지속 모니터링	○ 위해정보과, 각 사업부서
	○ 기준미설정 물질인 경우 기준 및 시험법 적용 검토	○ 식품기준기획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황점검회의 개최</li> <li>○ 선행조사 실시(필요시)</li> <li>○ 긴급대응회의 개최</li> <li>○ 위기경보 발령</li> <li>○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 구성·운영</li> <li>- 국무조정실 식품안전사고 긴급대응단과 동시운영</li> <li>- 관계부처 협의체 회의 개최</li> <li>○ 상황보고(청와대, 국무조정실 등) 및 전파</li> </ul>	○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제조·유통 현황 파악</li> <li>○ 잠정 유통·판매 금지 조치, 수거·검사 실시 및 압류·회수 조치</li> <li>○ 위해식품 식약처 홈페이지 정보공개</li> <li>○ 위해식품 정보 관련부서 및 허가기관에 제공</li> <li>○ 유통·판매 금지 조치 강화</li> <li>○ 일일 전국 상황 모니터링</li> <li>○ 관계부처에 업무 협조 요청</li> <li>○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운영</li> <li>○ Q&amp;A , 보도자료 등 작성</li> <li>○ 식약처 홈페이지 정보공개</li> </ul>	○ 축산물위생안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준 및 시험법 검토</li> <li>○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운영</li> </ul>	○ 축산물기준과
	○ 소비자 신고센터 운영	○ 고객지원담당관

구 분	세부내용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보계획 수립 , 미디어 센터 설치 및 운영</li> <li>○ 언론보도 동향 분석</li> <li>○ 보도자료 배포 및 대국민 대처요령 등 TV, 인터넷 집중 홍보</li> </ul>	○ 대변인실
	○ 민관소통협의체 운영	○ 소통협력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해물질 독성자료 등 검토</li> <li>○ 시험법안 작성 및 통보</li> <li>○ 시험분석기관 기술 지원</li> <li>○ 위해평가 실시</li> </ul>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거·검사 실시·보고</li> <li>○ 압류·회수 실시 및 보고</li> </ul>	○ 지방청
	○ 긴급검사, 회수·폐기 등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업무 협조	○ 안행부
	○ 학교급식 안전관리 및 학교주변 위해식품 점검	○ 교육부
	○ 국제우편, 수입통관과정 등 수입 위해식품 확인 및 차단	○ 관세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거·검사 지원 및 부적합 발생 시 신속보고</li> <li>○ 압류·회수 지원 및 보고</li> </ul>	○ 지자체
후속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결보고</li> <li>○ 상황전파</li> <li>○ 위기대응 평가</li> <li>- 사후처리, 재발방지대책 강구, 백서 또는 보고서 작성</li> </ul>	○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축산물위생안전과
	○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 해제	○ 운영지원과
	○ 소비자포럼 운영	○ 소통협력과

#### 4.8.2.2. 조치절차





### 4.8.2.3. 위기경보 단계별 조치목록

#### < 관 심(Blue) >

국내 제조·유통 축산물에서 유해물질 검출 정보 입수

구 분	담당부서	조치사항	
위기징후 식별	위해정보과 각 사업부서	○ 위해정보 수집·분석	
보고·전파	위해정보과 각 사업부서	○ 위해정보 분석내용 내부 보고 ○ 관련동향 지속 모니터링	
대응조치	본부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 사업부서 조치내역 확인 ○ 선행조사 실시(필요시) ○ 관계부처 협의체 운영(필요 시)
		위해정보과	○ 관련 정보 및 동향 지속 모니터링
		축산물위생안전과	○ 생산, 제조, 유통현황 파악 ○ 관련제품 및 유사제품 수거·검사 필요성 검토 - 수거·검사 지시 ○ 위해식품 정보 관련부서 및 허가기관에 제공
		축산물기준과	○ 기준미설정 물질인 경우 기준 및 시험법 검토
		대변인실	○ 언론매체 취재동향 관찰 ○ 언론에 정보제공 및 협조체계 점검 ○ 보도자료 또는 해명설명자료 배포(필요 시, 소관부서와 협력)
		소통협력과	○ 민관소통협의체 운영 검토
	소속 기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유해물질 독성자료 등 검토 ○ 시험법 검토
		지방청	○ 수거·검사 실시·보고 ○ 압류·회수 실시 및 보고
	유관 기관	농식품부	○ 관련정보 공유
		지자체	○ 관련 정보 제공 ○ 압류·회수 실시 및 보고
후속조치 (「관심」 단계 종결시)	축산물위생안전과	○ 종결보고 ○ 상황전파	

## < 주 의(Yellow) >

국내 제조·유통 축산물에서 유해물질 과다 검출 정보 입수

구 분	담당부서	조치사항	
위기징후 식별	위해정보과 각 사업부서 대변인실	○ 위해정보 수집·분석 ○ 언론보도 동향 분석	
보고·전파	위해정보과 각 사업부서	○ 정보예상정보 전파 - 위해정보 분석내용 내부 보고 및 전파	
대응조치	본부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 상황점검회의 개최 - 기준미설정 물질인 경우 시험법 확립 요청 - 선행조사 실시(필요시) ○ 상황점검회의 결과 보고 - 상황점검회의에서 「경계」 이상으로 위기 확산 가능성 있는 경우 긴급대응회의 개최 요청 ○ 상황보고
		위해정보과	○ 관련동향 지속 모니터링
		축산물위생안전과	○ 잠정 유통 판매 중단 조치 필요성 검토 - (잠정) 유통 판매 중단 조치 ○ 수거·검사 범위 및 계획 검토 - 수거·검사 및 압류·회수 지시 ○ 식약처 홈페이지 정보공개 ○ 위해식품 정보 관련부서 및 허가기관에 제공 ○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운영(필요 시)
		축산물기준과	○ 기준미설정 물질인 경우 기준 및 시험법 검토 ○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운영(필요 시)
		대변인실	○ 보도자료 배포 또는 해명·설명자료 배포 (소관부서와 협력) ○ 언론매체 지원 및 취재동향 관찰
		소통협력과	○ 민관소통협의체 운영(필요 시)
	소속 기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유해물질 독성자료 등 검토 ○ 시험법 검토
		지방청	○ 수거·검사 실시·보고 ○ 압류·회수 실시 및 보고
	유관 기관	농식품부	○ 관련정보 공유
		지자체	○ 관련 정보 제공 ○ 압류·회수 실시 및 보고
후속조치 (「주의」 단계 종결시)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축산물위생안전과	○ 종결보고 ○ 상황전파 ○ 위기대응 평가 - 사후처리, 재발방지대책 강구	

< 경 계(Orange) >

국내 제조·유통 축산물에서 유해물질 과다 검출된 제품이 국내 대량 유통되거나 관련 언론보도가 확산된 경우

구 분	담당부서	조치사항
위기징후 식별	위해정보과 각 사업부서 대변인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해정보 수집·분석 및 위기 확산 정보 파악</li> <li>○ 언론보도 동향 파악</li> </ul>
보고·전파	위해정보과 각 사업부서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보예상정보 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해정보 분석내용 내부 보고 및 전파</li> </ul> </li> <li>○ 긴급대응회의 개최 요청</li> </ul>
대응조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긴급대응회의 개최</li> <li>○ 위기경보 발령</li> <li>○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 구성·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무조정실 식품안전사고 긴급대응단 운영 검토</li> </ul> </li> <li>○ 긴급대응회의 결과 보고 및 상황 보고</li> </ul>
	위해정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동향 지속 모니터링</li> <li>○ 제외국 동향 모니터링</li> <li>○ 위해정보 상시 수집체계 가동</li> </ul>
	운영지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 발령 및 사무실 설치</li> </ul>
	상황관리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 내 관련팀 업무 진행상황 관리</li> <li>○ 일일 상황 보고서 작성 및 보고</li> <li>○ 관계부처 협의체 운영(필요 시)</li> <li>○ 상황보고 체계 유지 및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와대, 국무조정실 등</li> </ul> </li> </ul>
	언론대응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보계획 수립, 미디어 센터 설치 및 운영</li> <li>○ 언론 및 여론 동향 모니터링</li> <li>○ 보도자료 배포 및 대국민 정보 제공</li> <li>○ Q&amp;A 등 홍보자료 배포</li> </ul>
	총괄대응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괄관리</li> </ul>

구 분	담당부서		조치사항
		현장대응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거·검사, 회수·압류·폐기 총괄</li> <li>○ (잠정)수입·유통·판매 금지 조치 및 정보공개</li> <li>○ 일일 상황 관리시스템 운영 및 지방청, 시도 총괄관리</li> </ul>
		검사대책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준미설정 물질인 경우 기준 및 시험법 적용 검토</li> <li>○ 검사기관 현황 파악 및 준비 등 검사지원</li> <li>○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결과 보고</li> <li>○ Q&amp;A , 보도자료 등 작성</li> </ul>
		대외협력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통상 등 협력 업무</li> <li>○ 관련 법령 검토, 제도개선 등 법제업무 지원</li> <li>○ 이해관계자와의 정보교류</li> <li>○ 소비자신고 센터 운영</li> </ul>
		위해평가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해평가 실시</li> <li>○ 시험분석기관 기술적 지원</li> <li>○ 부적합 결과 취합 분석 및 확인</li> </ul>
		운영지원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시설·인력·물자 지원</li> <li>○ 소비자·산업체 전화대응(Hot-line) 업무 지원</li> </ul>
	소속 기관	지방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거·검사 실시·보고</li> <li>○ 압류·회수 실시 및 보고</li> </ul>
	유관 기관	안행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긴급검사, 회수·폐기 등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업무 협조</li> </ul>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급식 안전관리 및 학교주변 위해식품 점검</li> </ul>
		농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관리</li> </ul>
		관세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우편, 수입통관과정 등 수입 위해식품 확인 및 차단</li> </ul>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거·검사 지원 및 부적합 발생 시 신속보고</li> <li>○ 압류·회수 지원 및 보고</li> </ul>
<p>후속조치 (「경계」 단계 종결시)</p>	<p>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축산물위생안전과 운영지원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결보고</li> <li>○ 상황전파</li> <li>○ 위기대응 평가 - 사후처리, 재발방지대책 강구</li> <li>○ 백서 또는 보고서 작성</li> <li>○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 해체</li> </ul>

< 심 각(Red) >

국내 제조·유통 축산물에서 유해물질 과다 검출된 제품으로 환자 및 사망자 발생 등 심각하게 국민 불안감 야기

구 분	담당부서	조치사항
위기징후 식별	위해정보과 각 사업부서 대변인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해정보 수집·분석 및 위기 확산 정보 파악</li> <li>○ 언론보도 동향 파악</li> </ul>
보고·전파	위해정보과 각 사업부서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보예상정보 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해정보 분석내용 내부 보고 및 전파</li> </ul> </li> <li>○ 긴급대응회의 개최 요청</li> </ul>
대응조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긴급대응회의 개최</li> <li>○ 위기경보 발령</li> <li>○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 구성·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무조정실 식품안전사고 긴급대응단 동시운영</li> </ul> </li> <li>○ 긴급대응회의 결과 보고 및 상황 보고</li> </ul>
	위해정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동향 지속 모니터링</li> <li>○ 제외국 동향 모니터링</li> <li>○ 위해정보 상시 수집체계 가동</li> </ul>
	운영지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 발령 및 사무실 설치</li> </ul>
	상황관리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 내 관련팀 업무 진행상황 관리</li> <li>○ 일일 상황 보고서 작성 및 보고</li> <li>○ 관계부처 협의체 운영(필요 시)</li> <li>○ 상황보고 체계 유지 및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와대, 국무조정실 등</li> </ul> </li> </ul>
	언론대응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보계획 수립, 미디어 센터 설치 및 운영</li> <li>○ 언론 및 여론 동향 모니터링</li> <li>○ 보도자료 배포 및 대국민 정보 제공</li> <li>○ Q&amp;A 등 홍보자료 배포</li> </ul>
	총괄대응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괄관리</li> </ul>
	현장대응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거·검사, 회수·압류·폐기 총괄</li> <li>○ (잠정)수입·유통·판매 금지 조치 및 정보공개</li> <li>○ 일일 상황 관리시스템 운영 및 지방청, 시도 총괄관리</li> </ul>

구 분	담당부서		조치사항
		검사대책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준미설정 물질인 경우 기준 및 시험법 적용 검토</li> <li>○ 검사기관 현황 파악 및 준비 등 검사지원</li> <li>○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결과 보고</li> <li>○ Q&amp;A , 보도자료 등 작성</li> </ul>
		대외협력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통상 등 협력 업무</li> <li>○ 관련 법령 검토, 제도개선 등 법제업무 지원</li> <li>○ 이해관계자와의 정보교류</li> <li>○ 소비자신고 센터 운영</li> </ul>
		위해평가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해평가 실시</li> <li>○ 시험분석기관 기술적 지원</li> <li>○ 부적합 결과 취합 분석 및 확인</li> </ul>
		운영지원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시설·인력·물자 지원</li> <li>○ 소비자·산업체 전화대응(Hot-line) 업무 지원</li> </ul>
	소속 기관	지방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거·검사 실시·보고</li> <li>○ 압류·회수 실시 및 보고</li> </ul>
	유관 기관	안행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긴급검사, 회수·폐기 등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업무 협조</li> </ul>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급식 안전관리 및 학교주변 위해식품 점검</li> </ul>
		농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관리</li> </ul>
		관세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우편, 수입통관과정 등 수입 위해식품 확인 및 차단</li> </ul>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거·검사 지원 및 부적합 발생 시 신속보고</li> <li>○ 압류·회수 지원 및 보고</li> </ul>
<p>후속조치 (「심각」 단계 종결시)</p>	<p>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축산물위생안전과 운영지원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결보고</li> <li>○ 상황전파</li> <li>○ 위기대응 평가 - 사후처리, 재발방지대책 강구</li> <li>○ 백서 또는 보고서 작성</li> <li>○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 해제</li> </ul>

### 4.8.3. 유관기관 임무 및 역할

구 분	내 용	비 고
교육부	○ 학교급식 안전관리 및 학교주변 위해식품 점검	
안전행정부	○ 긴급검사, 회수폐기 등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업무 협조(필요 시)	
농식품부	○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관리(필요 시)	
관세청	○ 국제우편, 수입통관과정 등 수입 위해식품 확인 및 차단	
지자체	○ 수거·검사 실시 및 부적합 발생 시 신속 보고 ○ 위해정보에 대한 상시 수집 체계 유지	

## **제9절 제조·가공·유통 단계의 가공식품 등에서 유해물질 검출된 경우 [위기상황 20, 21, 22]**

### **4.9.1. 상 황**

- 라면스프에서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벤조피렌이 과다 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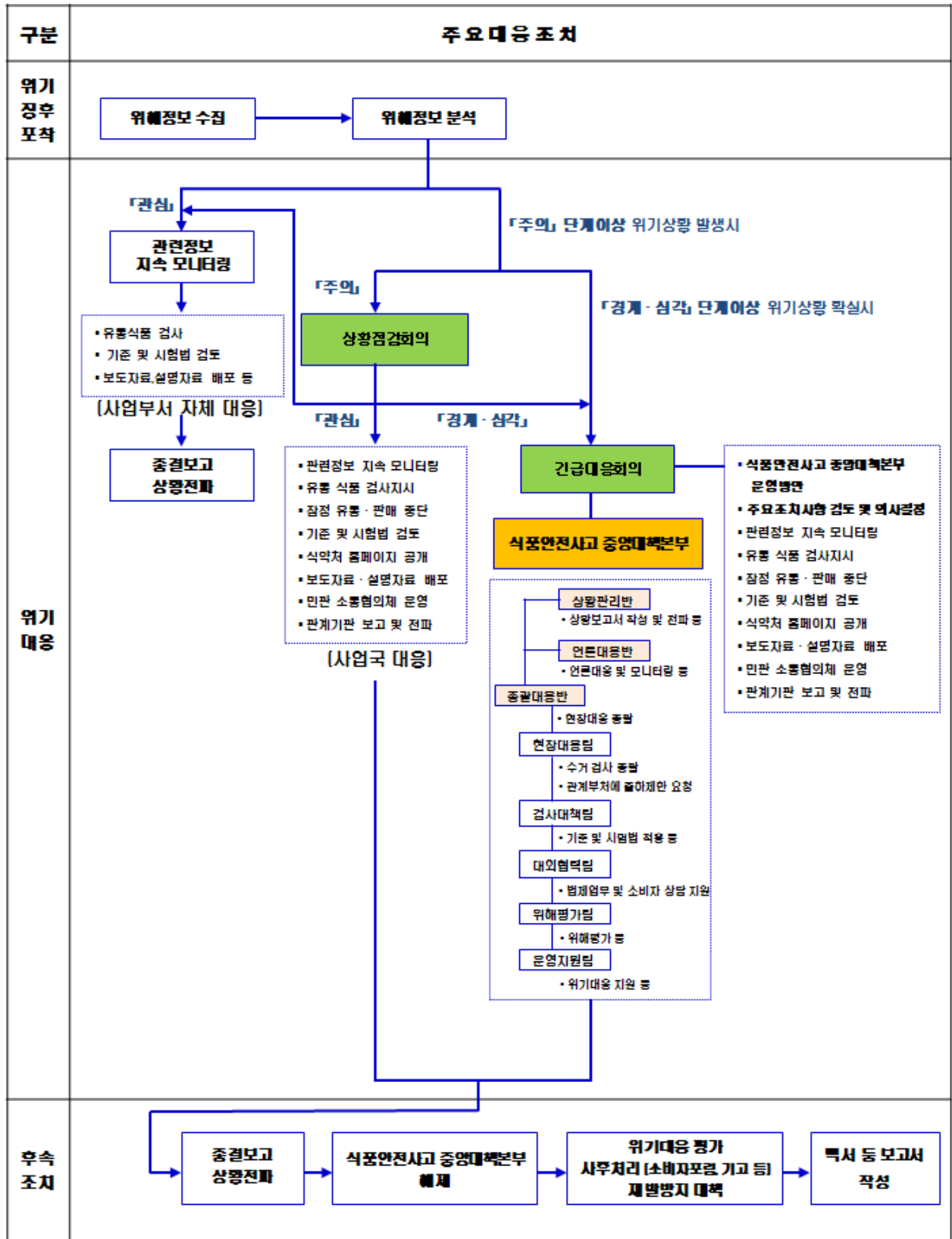
## 4.9.2. 조치사항 및 절차

### 4.9.2.1. 조치목록 총괄

구분	세부내용	담당부서
위기상황접수 및 보고/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해정보 수집·분석</li> <li>○ 정보예상정보 전파</li> <li>- 위해정보 분석내용 내부 보고 및 전파</li> </ul>	○ 위해정보과, 각 사업부서
대응조치	○ 관련동향 지속 모니터링	○ 위해정보과, 각 사업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준미설정 물질인 경우 기준 및 시험법 적용 검토</li> <li>○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운영</li> </ul>	○ 식품기준기획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황점검회의 개최</li> <li>○ 선행조사 실시(필요시)</li> <li>○ 긴급대응회의 개최</li> <li>○ 위기경보 발령</li> <li>○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 구성·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무조정실 식품안전사고 긴급대응단과 동시운영</li> <li>- 관계부처 협의체 회의 개최</li> </ul> </li> <li>○ 상황보고(청와대, 국무조정실 등) 및 전파</li> <li>○ 식품위생심의위원회(위해평가 분과) 운영</li> </ul>	○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제조·유통 현황 파악</li> <li>○ 잠정 유통·판매 금지 조치, 수거·검사 실시 및 압류·회수 조치</li> <li>○ 위해식품 식약처 홈페이지 정보공개</li> <li>○ 위해식품 정보 관련부서 및 허가기관에 제공</li> <li>○ 유통·판매 금지 조치 강화</li> <li>○ 관계부처에 업무 협조 요청</li> <li>○ 일일 전국 상황 모니터링</li> <li>○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운영</li> <li>○ Q&amp;A , 보도자료 등 작성</li> <li>○ 식약처 홈페이지 정보공개</li> </ul>	○ 식품관리총괄과
	○ 소비자 신고센터 운영	○ 고객지원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보계획 수립 , 미디어 센터 설치 및 운영</li> <li>○ 언론보도 동향 분석</li> </ul>	○ 대변인실	

구 분	세부내용	담당부서
	○ 보도자료 배포 및 대국민 대처요령 등 TV, 인터넷 집중 홍보	
	○ 민관소통협의체 운영	○ 소통협력과
	○ 유해물질 독성자료 등 검토 ○ 시험법안 작성 및 통보 ○ 시험분석기관 기술 지원 ○ 위해평가 실시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수거·검사 실시·보고 ○ 압류·회수 실시 및 보고	○ 지방청
	○ 긴급검사, 회수·폐기 등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업무 협조	○ 안행부
	○ 학교급식 안전관리 및 학교주변 위해식품 점검	○ 교육부
	○ 국제우편, 수입통관과정 등 수입 위해식품 확인 및 차단	○ 관세청
	○ 수거·검사 지원 및 부적합 발생 시 신속보고 ○ 압류·회수 지원 및 보고	○ 지자체
후속조치	○ 종결보고 ○ 상황전파 ○ 위기대응 평가 - 사후처리, 재발방지대책 강구, 백서 또는 보고서 작성	○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식품관리총괄과
	○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 해제	○ 운영지원과
	○ 소비자포럼 운영	○ 소통협력과

#### 4.9.2.2. 조치절차



### 4.9.2.3. 위기경보 단계별 조치목록

#### < 관 심(Blue) >

국내 제조·유통 가공식품 등에서 유해물질 검출 정보 입수

구 분	담당부서	조치사항	
위기징후 식별	위해정보과 각 사업부서	○ 위해정보 수집·분석	
보고·전파	위해정보과 각 사업부서	○ 위해정보 분석내용 내부 보고 ○ 관련동향 지속 모니터링	
대응조치	본부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 사업부서 조치내역 확인 ○ 선행조사 실시(필요시) ○ 관계부처 협의체 운영(필요 시)
		위해정보과	○ 관련 정보 및 동향 지속 모니터링
		식품관리총괄과	○ 생산, 제조, 유통현황 파악 ○ 관련제품 및 유사제품 수거·검사 필요성 검토 - 수거·검사 지시 ○ 위해식품 정보 관련부서 및 허가기관에 제공
		식품기준기획관	○ 기준미설정 물질인 경우 기준 및 시험법 검토
		대변인실	○ 언론매체 취재동향 관찰 ○ 언론에 정보제공 및 협조체계 점검 ○ 보도자료 또는 해명·설명자료 배포(필요 시, 소관부서와 협력)
		소통협력과	○ 민관소통협의체 운영 검토
	소속 기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유해물질 독성자료 등 검토 ○ 시험법 검토
		지방청	○ 수거·검사 실시·보고 ○ 압류·회수 실시 및 보고
		유관 기관	○ 관련 정보 제공 ○ 압류·회수 실시 및 보고
	후속조치 (「관심」 단계 종결시)	식품관리총괄과	○ 종결보고 ○ 상황전파

## < 주 의(Yellow) >

### 국내 제조·유통 가공식품 등에서 유해물질 과다 검출 정보 입수

구 분	담당부서	조치사항
위기징후 식별	위해정보과 각 사업부서 대변인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해정보 수집·분석</li> <li>○ 언론보도 동향 분석</li> </ul>
보고·전파	위해정보과 각 사업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보예상정보 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해정보 분석내용 내부 보고 및 전파</li> </ul> </li> </ul>
대응조치	본부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황점검회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준미설정 물질인 경우 시험법 확립 요청</li> <li>- 선행조사 실시(필요시)</li> </ul> </li> <li>○ 상황점검회의 결과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황점검회의에서 「경계」 이상으로 위기 확산 가능성 있는 경우 긴급대응회의 개최 요청</li> </ul> </li> <li>○ 상황보고</li> <li>○ 식품위생심의위원회(위해평가 분과) 운영(필요 시)</li> </ul>
		위해정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동향 지속 모니터링</li> </ul>
		식품관리총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잠정 유통 판매 중단 조치 필요성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잠정) 유통 판매 중단 조치</li> </ul> </li> <li>○ 수거·검사 범위 및 계획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거·검사 및 압류·회수 지시</li> </ul> </li> <li>○ 식약처 홈페이지 정보공개</li> <li>○ 위해식품 정보 관련부서 및 허가기관에 제공</li> <li>○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운영(필요 시)</li> </ul>
		식품기준기획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준미설정 물질인 경우 기준 및 시험법 검토</li> <li>○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운영(필요 시)</li> </ul>
		대변인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도자료 배포 또는 해명·설명자료 배포 (소관부서와 협력)</li> <li>○ 언론매체 지원 및 취재동향 관찰</li> </ul>
		소통협력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관소통협의체 운영(필요 시)</li> </ul>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해물질 독성자료 등 검토</li> <li>○ 시험법 검토</li> </ul>
	소속 기관	지방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거·검사 실시·보고</li> <li>○ 압류·회수 실시 및 보고</li> </ul>
유관 기관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정보 제공</li> <li>○ 압류·회수 실시 및 보고</li> </ul>	
후속조치 (「주의」 단계 종결시)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식품관리총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결보고</li> <li>○ 상황전파</li> <li>○ 위기대응 평가 - 사후처리, 재발방지대책 강구</li> </ul>

## < 경 계(Orange) >

국내 제조·유통 가공식품 등에서 유해물질 과다 검출된 제품이 국내 대량 유통되거나 관련 언론보도가 확산된 경우

구 분	담당부서	조치사항	
위기장후 식별	위해정보과 각 사업부서 대변인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해정보 수집·분석 및 위기 확산 정보 파악</li> <li>○ 언론보도 동향 파악</li> </ul>	
보고·전파	위해정보과 각 사업부서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예상정보 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해정보 분석내용 내부 보고 및 전파</li> </ul> </li> <li>○ 긴급대응회의 개최 요청</li> </ul>	
대응조치	본부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긴급대응회의 개최</li> <li>○ 위기경보 발령</li> <li>○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 구성·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무조정실 식품안전사고 긴급대응단 운영 검토</li> </ul> </li> <li>○ 긴급대응회의 결과 보고 및 상황 보고</li> </ul>
		위해정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동향 지속 모니터링</li> <li>○ 제외국 동향 모니터링</li> <li>○ 위해정보 상시 수집체계 가동</li> </ul>
		운영지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 발령 및 사무실 설치</li> </ul>
		상황관리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 내 관련팀 업무 진행상황 관리</li> <li>○ 일일 상황 보고서 작성 및 보고</li> <li>○ 관계부처 협의체 운영(필요 시)</li> <li>○ 상황보고 체계 유지 및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와대, 국무조정실 등</li> </ul> </li> </ul>
		언론대응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보계획 수립, 미디어 센터 설치 및 운영</li> <li>○ 언론 및 여론 동향 모니터링</li> <li>○ 보도자료 배포 및 대국민 정보 제공</li> <li>○ Q&amp;A 등 홍보자료 배포</li> </ul>

구 분	담당부서		조치사항
		총괄대응반	○ 총괄관리
		현장대응팀	○ 수거·검사, 회수·압류·폐기 총괄 ○ (잠정)수입·유통·판매 금지 조치 및 정보공개 ○ 일일 상황 관리시스템 운영 및 지방청, 시도 총괄관리
		검사대책팀	○ 기준미설정 물질인 경우 기준 및 시험법 적용 검토 ○ 검사기관 현황 파악 및 준비 등 검사지원 ○ 식품위생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결과 보고 ○ Q&A , 보도자료 등 작성
		대외협력팀	○ 국제통상 등 협력 업무 ○ 관련 법령 검토, 제도개선 등 법제업무 지원 ○ 이해관계자와의 정보교류 ○ 소비자신고 센터 운영
		위해평가팀	○ 위해평가 실시 ○ 시험분석기관 기술적 지원 ○ 부적합 결과 취합 분석 및 확인
		운영지원팀	○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시설·인력·물자 지원 ○ 소비자·산업체 전화대응(Hot-line) 업무 지원
	소속 기관	지방청	○ 수거·검사 실시·보고 ○ 압류·회수 실시 및 보고
	유관 기관	안행부	○ 긴급검사, 회수·폐기 등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업무 협조
		교육부	○ 학교급식 안전관리 및 학교주변 위해식품 점검
		지자체	○ 수거·검사 지원 및 부적합 발생 시 신속보고 ○ 압류·회수 지원 및 보고
후속조치 (「경계」 단계 종결시)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식품관리총괄과 운영지원과		○ 종결보고 ○ 상황전파 ○ 위기대응 평가 - 사후처리, 재발방지대책 강구 ○ 백서 또는 보고서 작성 ○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 해체

< 심 각(Red) >

국내 제조·유통 가공식품 등에서 유해물질 과다 검출된 제품으로 환자 및 사망자 발생 등 심각하게 국민 불안감 야기

구 분	담당부서	조치사항
위기징후 식별	위해정보과 각 사업부서 대변인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해정보 수집·분석 및 위기 확산 정보 파악</li> <li>○ 언론보도 동향 파악</li> </ul>
보고·전파	위해정보과 각 사업부서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보예상정보 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해정보 분석내용 내부 보고 및 전파</li> </ul> </li> <li>○ 긴급대응회의 개최 요청</li> </ul>
대응조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긴급대응회의 개최</li> <li>○ 위기경보 발령</li> <li>○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 구성·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무조정실 식품안전사고 긴급대응단 동시운영</li> </ul> </li> <li>○ 긴급대응회의 결과 보고 및 상황 보고</li> </ul>
	위해정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동향 지속 모니터링</li> <li>○ 제외국 동향 모니터링</li> <li>○ 위해정보 상시 수집체계 가동</li> </ul>
	운영지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 발령 및 사무실 설치</li> </ul>
	상황관리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 내 관련팀 업무 진행상황 관리</li> <li>○ 일일 상황 보고서 작성 및 보고</li> <li>○ 관계부처 협의체 운영(필요 시)</li> <li>○ 상황보고 체계 유지 및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와대, 국무조정실 등</li> </ul> </li> </ul>
	언론대응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보계획 수립, 미디어 센터 설치 및 운영</li> <li>○ 언론 및 여론 동향 모니터링</li> <li>○ 보도자료 배포 및 대국민 정보 제공</li> <li>○ Q&amp;A 등 홍보자료 배포</li> </ul>
	총괄대응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괄관리</li> </ul>



구 분	담당부서		조치사항
		현장대응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거·검사, 회수·압류·폐기 총괄</li> <li>○ (잠정)수입·유통·판매 금지 조치 및 정보공개</li> <li>○ 일일 상황 관리시스템 운영 및 지방청, 시도 총괄관리</li> </ul>
		검사대책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준미설정 물질인 경우 기준 및 시험법 적용 검토</li> <li>○ 검사기관 현황 파악 및 준비 등 검사지원</li> <li>○ 식품위생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결과 보고</li> <li>○ Q&amp;A , 보도자료 등 작성</li> </ul>
		대외협력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통상 등 협력 업무</li> <li>○ 관련 법령 검토, 제도개선 등 법제업무 지원</li> <li>○ 이해관계자와의 정보교류</li> <li>○ 소비자신고 센터 운영</li> </ul>
		위해평가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해평가 실시</li> <li>○ 시험분석기관 기술적 지원</li> <li>○ 부적합 결과 취합 분석 및 확인</li> </ul>
		운영지원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시설·인력·물자 지원</li> <li>○ 소비자·산업체 전화대응(Hot-line) 업무 지원</li> </ul>
	소속 기관	지방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거·검사 실시·보고</li> <li>○ 압류·회수 실시 및 보고</li> </ul>
	유관 기관	안행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긴급검사, 회수·폐기 등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업무협조</li> </ul>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급식 안전관리 및 학교주변 위해식품 점검</li> </ul>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거·검사 지원 및 부적합 발생 시 신속보고</li> <li>○ 압류·회수 지원 및 보고</li> </ul>	
<p style="text-align: center;">후속조치 (「심각」 단계 종결시)</p>	<p style="text-align: center;">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식품관리총괄과 운영지원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결보고</li> <li>○ 상황전파</li> <li>○ 위기대응 평가 - 사후처리, 재발방지대책 강구</li> <li>○ 백서 또는 보고서 작성</li> <li>○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 해체</li> </ul>

### 4.9.3. 유관기관 임무 및 역할

구 분	내 용	비 고
교육부	○ 학교급식 안전관리 및 학교주변 위해식품 점검	
안전행정부	○ 긴급검사, 회수폐기 등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업무 협조(필요 시)	
지자체	○ 수거·검사 실시 및 부적합 발생 시 신속 보고 ○ 위해정보에 대한 상시 수집 체계 유지	

## 제10절 대규모 식중독 환자 발생한 경우(위기상황 25)

### 4.10.1. 상 황

- 동일 식자재 업소에서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생야채를 공급받은 여러 급식소에서 수 백명의 식중독 환자 발생
  
- 대형 태풍으로 대규모 지역에 침수피해 발생 및 피해지역내 식중독 환자 수 백명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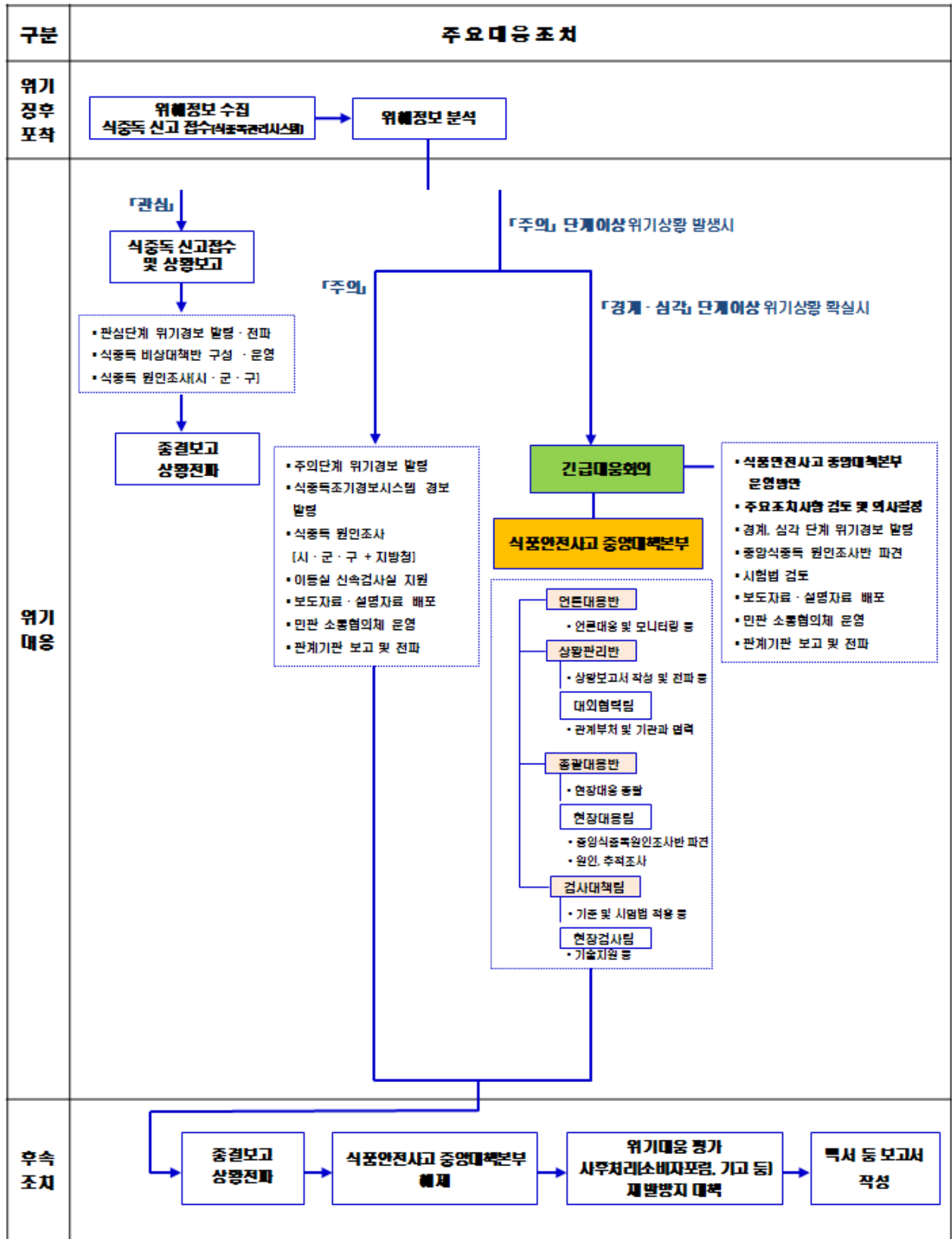
## 4.10.2. 조치사항 및 절차

### 4.10.2.1. 조치목록 총괄

구분	세부내용	담당부서
위기상황접수 및 보고/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중독 관리시스템을 통한 식중독 신고 접수 및 상황 보고</li> <li>○ 위해정보 수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중독예방과</li> <li>○ 위해정보과</li> </ul>
대응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정보 모니터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해정보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중독 관리시스템을 통한 식중독 신고 접수 및 상황 보고</li> <li>○ 단계별 위기경보 발령 및 상황 전파</li> <li>○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운영</li> <li>○ 식중독 비상대책반 구성 및 운영</li> <li>○ 영양사, 조리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홍보</li> <li>○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한 사전차단 조치 실시 (청와대, 국무조정실 등)</li> <li>○ 원인조사, 역학조사 참여 등 각종 조치사항 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계」 이상 시 중앙식중독원인조사반 파견</li> </ul> </li> <li>○ 「경계」 이상 시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 구성 운영</li> <li>○ 「심각」 이상 시 국무조정실 식품안전사고 긴급대응단과 동시 운영</li> <li>○ 보도자료 작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중독예방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론에 정보제공 및 협조체계 점검</li> <li>○ 보도자료 또는 해명·설명자료 배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변인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인조사를 위한 가검물 등 수거·분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속한 원인규명을 위한 이동식 신속검사실 파견</li> <li>○ 원인식품 실태·추적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 급식시설, 동일 식재료 공급업체 유무 확인</li> <li>- 공급업체 현장 점검 및 동일 식재료 급식소 등 추가 환자 발생 여부 확인</li> <li>- 식재료 사용금지 등 조치, 현장 폐기 지시</li> </ul> </li> <li>○ 신속·원활한 역학조사 및 정밀검사를 위한 유관 기관에 협조 지시</li> <li>○ 해당시설 급식 중단 권고 조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청</li> </ul>

구 분	세부내용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생지역내 학교 전수 소독 등 방역 지시</li> <li>○ 학교급식사고 대책본부(실장 : 기관장) 가동</li> <li>○ 신속·원활한 역학조사 및 정밀검사를 위해 하부기관에 협조토록 지시</li> <li>○ 학교급식 중단에 따른 임시급식대책 등 수립</li> </ul>	○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군·구에서는 식약처에 식중독 발생 보고</li> <li>○ 식약처의 지시 및 「심각」 단계 위기상황에 따른 조치 사항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중독 원인조사지침, 식중독 긴급행동지침, 식중독균 검사법 등 참조</li> </ul> </li> <li>○ 모든 시·도(시·군)에 식중독대책본부(본부장:기관장) 및 상황실 가동</li> <li>○ 발생 시·군에 시·도 역학조사관 파견</li> <li>○ 보건환경연구원, 신속한 원인규명을 위하여 신속 검사 지시</li> <li>○ 발생 시·도 및 인접 시·도에 유사사례 모니터링 및 해당 사고 전파</li> <li>○ 원인조사 결과 관계기관 신속 공유(식약처, 교육부 등)</li> <li>○ 시·도별 식중독대책협의회를 개최, 기관별 역할분담 확립</li> <li>○ 지역 방송, 마을 방송 등을 통해 식중독 예방수칙 홍보 강화</li> <li>○ 시·군·구에서는 식약처에 원인조사 결과 보고</li> </ul>	○ 지자체 (시·도, 시·군·구)
후속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결보고</li> <li>○ 상황전파</li> <li>○ 위기대응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후처리, 재발방지대책 강구, 백서 또는 보고서 작성</li> </ul> </li> </ul>	○ 식중독예방과
	○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 해체	○ 운영지원과

### 4.10.2.2. 조치절차



### 4.10.2.3. 위기경보 단계별 조치목록

#### < 관 심(Blue) >

50인 미만 식중독 환자 발생

구 분	담당부서		조치사항
위기징후 식별	식중독예방과 위해정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중독 관리시스템을 통한 식중독 신고 접수</li> <li>○ 위해정보 수집</li> </ul>
보고·전파	식중독예방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중독 관리시스템을 통한 식중독 신고 접수 및 상황 보고</li> </ul>
대응조치	본부	식중독예방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심」 단계 위기경보 발령 및 상황 전파</li> <li>○ 식중독 유관기관 비상 연락망 점검</li> <li>○ 식중독 비상대책반 구성 및 운영</li> <li>○ 영양사, 조리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홍보 추진</li> </ul>
		대변인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론매체 취재동향 관찰</li> <li>○ 언론에 정보제공 및 협조체계 점검</li> </ul>
	소속 기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인조사를 위한 가검물 등 수거분석 실시(필요 시)</li> </ul>
		지방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할지역내 식중독 발생 모니터링 및 위생정보 수집 및 조사</li> <li>○ 위해발생 우려 식품 등의 조사 및 모니터링 등</li> <li>○ 식품위생 관련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지원</li> <li>○ 식중독 원인조사 및 원인균 추적조사(필요 시)</li> </ul>
	유관 기관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중독 발생보고, 조사결과 보고 등 비상연락 체계 유지</li> <li>○ 관할지역내 식중독 예방 교육·홍보 실시</li> <li>○ 식중독 원인조사 및 원인균 추적조사(PFGE)</li> <li>○ 음식점, 집단급식소 종사자 등에 대한 식중독 예방수칙 교육·홍보</li> </ul>
		시·군·구 (식품위생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약처에 식중독 발생 보고</li> <li>○ 원인조사반(위생부서 2인 이상) 지정 및 운영</li> <li>○ 급식시설 현황, 보존식·조리도구, 음용수 검체 채취·</li> </ul>

구 분	담당부서		조치사항
			조사, 식재료 유통과정 등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 지방 식약청 보고 ○ 역학조사관 지시를 받아 조사디자인, 역학조사서 등 결정 ○ 환례정의 및 인체검체 채취 등 현장 역학조사 실시 ○ 식약처에 원인조사 결과 보고
		시·군·구 (보건소)	○ 역학조사반(본·지소별 2인 이상) 지정 및 운영 ○ 환자 사례조사 및 인체검체 채취 등 현장 역학조사 실시 ○ 환자발생규모, 발병일, 기타 특이사항 등에 대한 기초 자료 수집, 시·도 역학조사관 보고 ○ 역학조사관 지시를 받아 조사디자인, 역학조사서 등 결정 ○ 유증상자 지속 모니터링
		관련단체 (음식업중앙회 등)	○ 회원 업소 및 종사자에 대한 식중독 예방 홍보 및 교육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식중독 예방대책 추진에 적극 협조
		교육부	○ 발생 학교의 역학조사가 학교와 보건당국의 협조하에 신속·원활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지도·감독
후속조치 (「관심」 단계 종결시)	식중독예방과		○ 종결보고 ○ 상황전파



## < 주 의(Yellow) >

1개 지역에서 50인 이상 집단식중독 환자 발생

구 분	담당부서	조치사항	
위기징후 식별	식중독예방과 위해정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중독 관리시스템을 통한 식중독 신고 접수</li> <li>○ 위해정보 수집</li> </ul>	
보고·전파	식중독예방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중독 관리시스템을 통한 식중독 신고 접수 및 상황 보고</li> </ul>	
대응조치	본부	식중독예방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 경보 발령 및 상황 보고(청와대, 국무조정실 등)</li> <li>○ 「주의」단계 위기경보 발령 및 관계부처·지자체·단체 등에 전파</li> <li>○ 식중독 추가 확산에 대비, 상황 전파체계 준비 및 점검(전국)</li> <li>○ 경계단계 대비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 및 상황실 설치 준비</li> <li>○ 원인조사, 역학조사 직접 참여 등 각종 조치사항 준비 (필요 시)</li> </ul>
		대변인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도자료 배포</li> <li>○ 언론매체 지원 및 취재동향 관찰</li> </ul>
	소속 기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인조사를 위한 가검물 등 수거·분석 실시</li> </ul>
		지방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조사 참여 및 진행사항 확인 보고</li> <li>○ 이동식 신속검사실 업무 지원(인체검체 확보 후 검사)</li> <li>○ 원인식품 추적조사 실시 및 조사 결과 공유</li> <li>○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기관별 조사 자료 취합 후 보고</li> </ul>
	유관 기관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생 학교의 역학조사가 학교와 보건당국의 협조하에 신속·원활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지도·감독</li> <li>○ 인접학교 유사 사례 식중독 사고가 있는지 여부 확인</li> <li>○ 발생 학교에 납품된 식재료에 대한 납품 학교 현황 파악</li> </ul>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 역학조사관을 현장에 파견하여 환례 정의 및 조사디자인 설정 후 지시</li> <li>○ 발생 지역 이외 식중독 유사사례 모니터링 강화</li> <li>○ 원인조사반 현장 업무(인력, 장비 등) 조정, 지시(필요 시)</li> </ul>
		시·군·구 (식품위생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약처에 식중독 발생 보고</li> <li>○ 원인조사반 지정 및 운영</li> <li>○ 급식시설 현황, 보존식·조리도구, 음용수 검체 채취·조사, 식재료 유통과정 등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 지방식약청 보고</li> <li>○ 역학조사관 지시를 받아 조사디자인, 역학조사서 등 결정</li> <li>○ 환례정의 및 인체검체 채취 등 현장 역학조사 실시</li> <li>○ 식약처에 원인조사 결과 보고</li> </ul>
후속조치 (「주의」 단계 종결시)	식중독예방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결보고</li> <li>○ 상황전파</li> <li>○ 위기대응 평가 - 사후처리, 재발방지대책 강구</li> </ul>	

< 경 계(Orange) >

2개 이상 지역에서 동일원인으로 추정되는 100인 이상 집단식중독 환자 발생

구 분	담당부서	조치사항		
위기징후 식별	식중독예방과 위해정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중독 관리시스템을 통한 식중독 신고 접수</li> <li>○ 위해정보 수집</li> </ul>		
보고·전파	식중독예방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중독 관리시스템을 통한 식중독 신고 접수 및 상황 보고</li> </ul>		
대응조치	본부	식중독예방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계」 단계 위기경보 발령 및 관계부처·지자체·단체 등에 전파</li> <li>○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 및 상황실 가동</li> <li>○ 발생 시도 등 관련기관에 긴급 소독 등 조치사항 시달</li> <li>○ 발생 시·군·구에 중앙식중독원인조사반 파견</li> <li>○ 식중독 사고에 대한 보도자료 등 언론대응</li> </ul>	
		언론대응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보계획 수립, 미디어 센터 설치 및 운영</li> <li>○ 언론 및 여론 동향 모니터링</li> <li>○ 보도자료 배포 및 대국민 정보 제공</li> <li>○ Q&amp;A 등 홍보자료 배포</li> </ul>	
		상황관리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 내 관련팀 업무 진행상황 관리</li> <li>○ 일일 상황 작성 및 보고</li> <li>○ 상황보고 체계 유지 및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와대, 국무조정실 등</li> </ul> </li> <li>○ 관계기관 협의체 회의 운영</li> </ul>	
		총괄대응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괄 관리</li> </ul>	
		검사대책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준 및 시험법 적용 검토</li> <li>○ 검사기관 현황 파악 및 준비 등 검사지원</li> <li>○ Q&amp;A , 보도자료 등 작성</li> </ul>	
		대외협력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관기관 및 협회, 단체와 협조체계 강화</li> <li>○ 소비자신고 센터 운영</li> </ul>	
		현장대응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생 시·군·구에 식약처 중앙식중독원인조사반 파견</li> <li>○ 발생 시도 등 관련기관에 긴급 소독 등 조치사항 시달</li> <li>○ 일일 상황 관리 및 지방청, 시도 총괄관리</li> </ul>	
		현장검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검사 실시(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li> </ul>	
		소속 기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인조사를 위한 가검물 등 수거·분석 실시</li> </ul>
			지방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속한 원인규명을 위한 이동식 신속검사실 파견</li> <li>○ 원인식품 실태·추적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 급식시설, 동일 식재료 공급업체 유무 확인</li> <li>- 공급업체 현장 점검 및 동일 식재료 급식소 등 추가</li> </ul> </li> </ul>

구 분	담당부서		조치사항
			환자 발생 여부 확인(필요 시) - 식재료 사용금지 등 조치, 현장 폐기 지시 ○ 신속·원활한 역학조사 및 정밀검사를 위한 유관기관에 협조 지시 ○ 해당시설 급식 중단 권고 조치
	교육부		○ 발생지역내 학교 전수 소독 등 방역 지시 ○ 학교급식사고 대책본부(실장 : 기관장) 가동 ○ 신속·원활한 역학조사 및 정밀검사를 위해 하부기관에 협조토록 지시 ○ 학교급식 중단에 따른 임시급식대책 등 수립
	유관 기관	시·도	○ 식약처의 지시 및 「경계」 단계 위기상황에 따른 긴급방역 조치사항 추진 - 식중독 원인조사지침, 식중독 긴급행동지침, 식중독균 검사법 등 참조 ○ 해당 시·도(시·군)에 식중독대책본부(본부장:기관장) 및 상황실 가동 ○ 발생 시·군에 시·도 역학조사관 파견 ○ 보건환경연구원, 신속한 원인규명을 위하여 신속 검사 지시 ○ 발생 시·도 및 인접 시·도에 유사사례 모니터링 및 해당 사고 전파 ○ 원인조사 결과 관계기관 신속 공유(식약처, 교육부 등) ○ 시·도별 식중독대책협의회를 개최, 기관별 역할분담 확립 ○ 지역 방송, 마을 방송 등을 통해 식중독 예방수칙 홍보 강화
		시·군·구 (보건소, 위생부서)	○ 식약처에 식중독 발생 보고 ○ 시·도의 지시 및 「경계」 단계 위기상황에 따른 긴급 조치사항 추진 - 식중독 원인조사지침, 식중독 긴급행동지침, 식중독균 검사법 등 참조 ○ 해당 사군에 식중독대책본부(본부장 : 기관장) 및 상황실 가동 ○ 시·도 역학조사관 지시에 따라 환례정의 및 조사디자인에 따라 환자규모 등 역학조사 수행 ○ 발생 시설에 대한 보존식, 환경검체, 식재료 등 수거·검사 ○ 발생 시설 등에 대한 일제소독 및 예찰활동 강화 ○ 조리 종사자의 식중독 예방수칙, 영업자 준수사항 홍보 및 점검 강화 ○ 추가 환자 발생 지속 모니터링 ○ 시·군별 식중독대책협의회를 개최, 기관별 역할분담 확립 ○ 지역방송, 마을 방송 등을 통한 관내 식중독 예방 홍보 강화 ○ 식약처에 원인조사 결과 보고
후속조치 (「경계」 단계 종결시)	식중독예방과		○ 종결보고 ○ 상황전파 ○ 위기대응 평가 - 사후처리, 재발방지대책 강구

< 심 각(Red) >

원인불명에 의해 전국적으로 대규모 집단식중독 환자 발생

구 분	담당부서	조치사항	
위기징후 식별	식중독예방과 위해정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중독 관리시스템을 통한 식중독 신고 접수</li> <li>○ 위해정보 수집·분석</li> </ul>	
보고·전파	식중독예방과 위해정보과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중독 관리시스템을 통한 식중독 신고 접수 및 상황 보고</li> <li>○ 위해정보 분석내용 내부 보고 및 전파</li> <li>○ 관련동향 지속 모니터링</li> </ul>	
대응조치	본부	식중독예방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각」 단계 위기경보 발령 및 관계부처·지자체·단체 등에 전파</li> <li>○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 및 상황실 가동</li> <li>○ 국무조정실 식품안전사고 긴급대응단과 동시가동(필요시)</li> <li>○ 발생 시·군·구에 식약처 중앙식중독원인조사반 파견</li> <li>○ 발생 시 시·도 등 관련기관에 긴급 소독 등 조치사항 시달</li> </ul>
		운영지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 발령 및 사무실 설치</li> </ul>
		언론대응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보계획 수립, 미디어 센터 설치 및 운영</li> <li>○ 언론 및 여론 동향 모니터링</li> <li>○ 보도자료 배포 및 대국민 정보 제공</li> <li>○ Q&amp;A 등 홍보자료 배포</li> </ul>
		상황관리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 내 관련팀 업무 진행상황 관리</li> <li>○ 일일 상황 작성 및 보고</li> <li>○ 상황보고 체계 유지 및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와대, 국무조정실 등</li> </ul> </li> <li>○ 관계기관 협의체 회의 운영</li> </ul>
		총괄대응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괄 관리</li> </ul>
		검사대책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준 및 시험법 적용 검토</li> <li>○ 검사기관 현황 파악 및 준비 등 검사지원</li> <li>○ Q&amp;A , 보도자료 등 작성</li> </ul>

구 분	담당부서		조치사항
		대외협력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관기관 및 협회, 단체와 협조체계 강화</li> <li>○ 소비자신고 센터 운영</li> </ul>
		현장대응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생 시·군·구에 식약처 중앙식중독원인조사반 파견</li> <li>○ 발생 시·도 등 관련기관에 긴급 소독 등 조치사항 시달</li> <li>○ 일일 상황 관리 및 지방청, 시·도 총괄관리</li> </ul>
		현장검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검사 실시(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li> </ul>
소속 기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험법안 작성 및 통보</li> <li>○ 원인조사를 위한 가검물 등 수거·분석 실시</li> </ul>
	지방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속한 원인규명을 위한 이동식 신속검사실 파견</li> <li>○ 원인식품 실태·추적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 급식시설, 동일 식재료 공급업체 유무 확인</li> <li>- 공급업체 현장 점검 및 동일 식재료 급식소 등추가 환자 발생 여부 확인(필요 시)</li> <li>- 식재료 사용금지 등 조치, 현장 폐기 지시</li> </ul> </li> <li>○ 신속·원활한 역학조사 및 정밀검사를 위한 유관기관에 협조 지시</li> <li>○ 해당시설 급식 중단 권고 조치</li> </ul>
유관 기관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생지역내 학교 전수 소독 등 방역 지시</li> <li>○ 학교급식사고 대책본부(실장 : 기관장) 가동</li> <li>○ 신속·원활한 역학조사 및 정밀검사를 위해 하부기관에 협조토록 지시</li> <li>○ 학교급식 중단에 따른 임시급식대책 등 수립</li> </ul>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약처의 지시 및 「심각」 단계 위기상황에 따른 조치 사항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중독 원인조사지침, 식중독 긴급행동지침, 식중독균 검사법 등 참조</li> </ul> </li> <li>○ 모든 시·도(시·군)에 식중독대책본부(본부장:기관장) 및 상황실 가동</li> <li>○ 발생 시·군에 시·도 역학조사관 파견</li> <li>○ 보건환경연구원, 신속한 원인규명을 위하여 신속 검사 지시</li> <li>○ 발생 시·도 및 인접 시·도에 유사사례 모니터링 및 해당 사고 전파</li> </ul>

구 분	담당부서		조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인조사 결과 관계기관 신속 공유(식약처, 교육부 등)</li> <li>○ 시·도별 식중독대책협의회를 개최, 기관별 역할분담 확립</li> <li>○ 지역 방송, 마을 방송 등을 통해 식중독 예방수칙 홍보 강화</li> </ul>
		시·군·구 (위생부서, 보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약처에 식중독 발생 보고</li> <li>○ 시·도의 지시 및 「심각」 단계 위기상황에 따른 긴급조치사항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중독 원인조사지침, 식중독 긴급행동지침, 식중독균 검사법 등 참조</li> </ul> </li> <li>○ 모든 시·군에 식중독대책본부(본부장 : 기관장) 및 상황실 가동</li> <li>○ 시·도 역학조사관 지시에 따라 환례정의 및 조사 디자인에 따라 환자규모 등 역학조사 수행</li> <li>○ 발생 시설에 대한 보존식, 환경검체, 식재료 등 수거·검사</li> <li>○ 발생 시설 등에 대한 일제소독 및 예찰활동 강화</li> <li>○ 조리 종사자의 식중독 예방수칙, 영업자 준수사항 홍보 및 점검 강화</li> <li>○ 추가 환자 발생 지속 모니터링</li> <li>○ 시·군별 식중독대책협의회를 개최, 기관별 역할분담 확립</li> <li>○ 지역 방송, 마을 방송 등을 통해 식중독 예방수칙 홍보 강화</li> <li>○ 식약처에 원인조사 결과 보고</li> </ul>
<p>후속조치 (「심각」 단계 종결시)</p>	<p>식중독예방과 운영지원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결보고</li> <li>○ 상황전파</li> <li>○ 위기대응 평가 - 사후처리, 재발방지대책 강구</li> <li>○ 백서 또는 보고서 작성</li> <li>○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 해체</li> </ul>

### 4.10.3. 유관기관 임무 및 역할

구 분	내 용	비 고
교육부	○ 학교급식 안전관리 및 학교주변 위해식품 점검	
국방부	○ 군부대 급식 안전관리 및 군부대 내 위해식품 점검	
농식품부	○ 생산단계 농·축산물 안전관리 및 점검	
해양수산부	○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관리 및 점검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중독 원인조사 및 역학조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생 시설에 대한 보존식, 환경검체, 식재료 등 수거·검사</li> <li>- 보건환경연구원, 신속한 원인규명을 위하여 신속 검사</li> </ul> </li> <li>○ 식약처 조치사항 실시 및 보고</li> <li>○ 「경계」 이상 시 시·도(시·군)에 식중독대책본부(본부장: 기관장) 및 상황실 가동</li> <li>○ 시·도별 식중독대책협의회 운영</li> <li>○ 식중독 예방수칙 홍보 강화</li> </ul>	

## 제11절 언론, 소비자 단체, 수사기관 등에서 식품안전 관련 이슈를 제기한 경우(위기상황 26)

### 4.11.1. 상 황

- 소비자단체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과다 검출된 ○○산 합성수지제 주방용기가 시중 유통·판매 발표
- 수사기관에서 비식용 식자재로 제품을 생산한 제조·가공업자 적발 발표

#### < 조치 원칙 >

- √ 식품안전사고 이슈 발생 시 사안에 따라 제1절 내지 제10절을 적용
- √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식품안전사고 이슈 제기 시에는 불량식품근절추진단에서 주관하고, 식품관리총괄과, 축산물위생안전과, 농수산물안전과에서 지원



## 제12절 위기대응 조치내용

### ◆ 관계 부처(기관)에 업무 협조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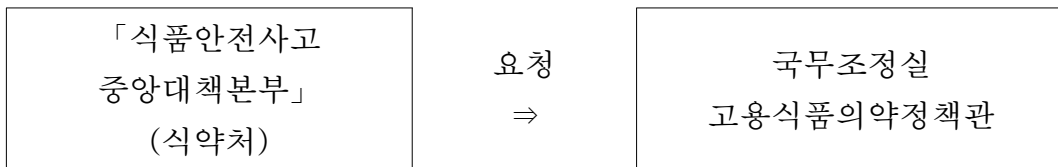
- 유통·판매 금지 조치 등의 신속한 집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교육부, 국방부, 법무부, 경찰청, 시·도, 시·군·구 등)에 협조사항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청(202쪽 참조)
-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전파
  - 주말, 휴일 등 업무 공백 기간을 줄이기 위해 공문 시행 후 문자 메시지 전파

### ◆ 관련 업계 협조 요청(203-4쪽 참조)

- 효과적인 유통·판매 (잠정) 금지, 회수·폐기 등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 업계에 협조사항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청
  - 협회 홈페이지에 유통·판매 (잠정) 금지 목록 게재 요청 등
  - 협회는 산하단체, 회원사 등에 신속히 통보토록 조치

### ◆ 국무조정실 식품안전사고 긴급대응단과 동시운영

#### □ 업무 흐름



- 식품안전기본법 제15조에 의해 식품등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긴급 대응조치를 함. 다만,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심의를 거칠 수 있음

## ◆ 긴급대응회의

### □ 긴급대응회의 역할

- 정보의 심각성, 예방피해 범위, 확산가능성,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동향 등을 종합 고려하여 위기대응 수준의 적절성 판단
-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 구성·운영방법 검토

### □ 긴급대응회의 구성

- 차장(주재, 필요시 처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및 각 국 국장, 식품기준기획관, 위해평가부장,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장, 소통협력과장, 위해정보과장, 본부 및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관련 부서 과장, 대변인, 운영지원과장

## ◆ 문자 메시지 전파

- 식품판매업소 등에 회수 정보를 SMS로 통보하여 신속히 유통 판매 (잠정) 금지가 될 수 있도록 조치(식품관리총괄과, 축산물위생안전과, 농수산물안전과)
- 주말, 휴일 등 업무 공백 기간을 줄이기 위해 공문 시행 후 문자메시지 전파

## ◆ 반송 폐기

- 위해물질이 검출되어 부적합된 수입제품에 대하여 제외국에 반송 또는 폐기

## ◆ 보도 자료 배포(199, 208쪽 참조)

- 위해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에게 정확한 사실을 신속하게 알릴 수 있는 보도 자료를 작성하여 언론에 배포
  - 위해물질 검출 보도 자료 작성 시 소비자 유의사항 등 작성
- 보도 자료는 편집자, 취재기자의 관심과 의문에 답하는 내용으로 하고, 광고문구가 아닌 사실에 근거한 내용으로 구성

## ◆ 상황보고 및 전파

-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관련 기관에 상황 발생 및 향후 조치 계획을 신속히 통보
  - 청와대, 국무조정실 등(229쪽 참조)
- 관계 기관 비상 연락망(230쪽 참조)

## ◆ 상황점검회의

### □ 상황점검회의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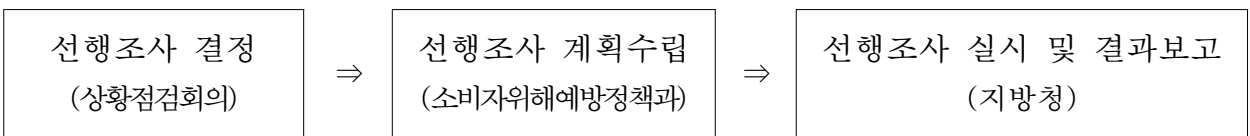
- 조치방향 등 초동조치
  - 국내 유통 및 수입단계 수거·검사 범위
  - 수거·검사 결과 이전 잠정유통·판매 금지조치 여부
  - 기준 및 시험법 적용
  - 관련기관 보고·협조
  - 보도자료 배포 및 대국민 홍보 시기
  - 처·차장 주재 긴급대응회의 필요성 여부
- 위기경보 단계 결정 및 이에 따른 「긴급대응회의」 소집 건의
  - 소비자위해예방국장이 처·차장에 건의
- 관련부처 및 유관기관과 정보공유
  -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에서 관련부처 및 유관기관 연락
  -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 운영이 될 경우 상황관리반에서 연락
- 위기발생 전 상황실 설치 여부를 소비자위해예방국장이 결정
- 휴일 등 근무시간 이후의 대응
  - 정보를 수집한 위해정보과장 또는 해당과에서 경보 발령
  - 참석대상부서 과장, 사무관 등은 즉시 사무실 복귀
    - ※ 사무실 복귀가 어려운 경우 전화통화 가능 유지
    - 상황점검회의는 화상회의로 진행(본부 및 서울지방청)

□ 상황점검회의의 결과서

<b>○○국가, ... 에서 ... 검출 발표</b>		
보고일자 : '00. 0. 00(월)	보고자	△△△과장 □□□ (010-0000-0000)
< 정보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 '00.0.00(월)</li> <li>○ 매체 : US FDA, ★★★</li> <li>○ 내용 : ○○국가, ...에서 ... 검출 발표</li> <li style="padding-left: 20px;">- ◆◆◆ 제품 수거검사 결과, ~~~</li> </ul>		
<b>□ 회의개요</b>		
○ 일시·장소 :		
○ 참석자 :		
<b>□ 수입 현황 및 정보 분석</b>		
○		
* 참고 통계자료		
<b>□ 점검회의 결과(향후 계획)</b>		
○		
수신처    처장, 차장, 대변인, ○○국장, ○○과장		

◆ **선행 조사**

□ 업무 흐름



- 「상황점검회의」에서 위기경보 단계 결정 등 사전정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행조사 실시
- 유해물질 등이 제외국이 기준 이상 검출되거나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상황점검회의」를 거쳐 위기경보 단계 결정, 긴급대응회의를 소집하여 대응수준의 적절성 평가 및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소집·운영 검토

## □ 선행조사 결과 후 대응방안

- 유해물질 등이 검출되지 않아 위해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는 종결 처리
- 유해물질 등이 미량 검출되어 위해는 없으나 추가 확대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추가 수거·검사 실시
- 유해물질 등이 제외국의 기준 이상 검출되거나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상황점검회의」 「긴급대응회의」를 거쳐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 소집·운영
  - 필요시 수입·판매 금지 등 선 조치 후 확대 수거·검사 실시
- 유해물질 등이 제외국 기준 이상 검출되고 다수의 식품 등에도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 소집·운영 및 관계 부처 공동대응

## ◆ 소비자 포럼 운영

- 소비자, 생산자, 정부, 각종 단체 등 다수의 이해 관계자들과 유해물질, 방사선조사, GMO 등 식품안전문제 등에 대해 정보를 교류하여 식품안전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는 열린 토론회
- 소비자 포럼을 통한 이해관계자 상호간의 이해의 폭 확대

## ◆ 수거 검사(일일 상황관리시스템 운영 및 전국 상황 모니터링)(196, 215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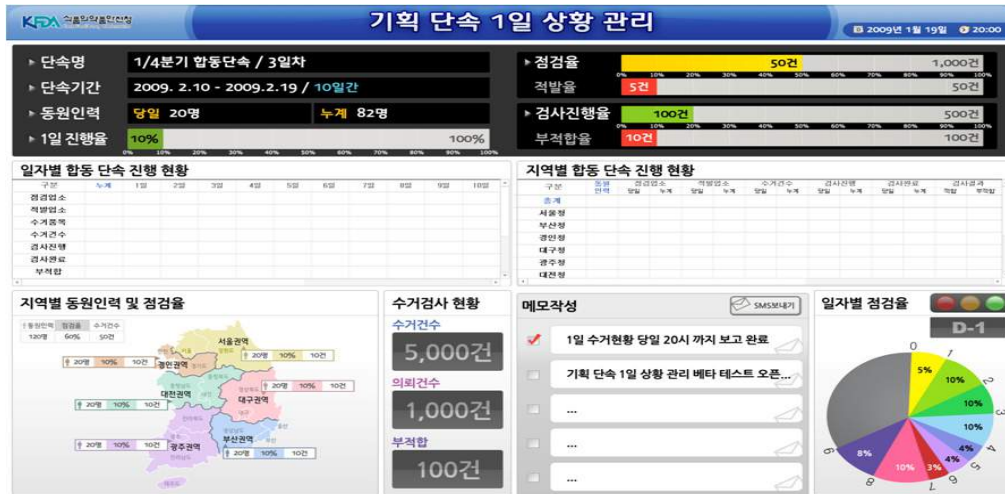
### □ 식약처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

- 위기상황에 따라 수거 범위, 기관 등 결정
  - 유통기한별 전 제품 수거 또는 '수입업체별, 품목별, 수출국별 수거' 등
  - 수거대상 목록 작성(권역별, 지역별 분류), 수거 담당기관 결정 후 수거·검사 지시
- 중복수거·검사 방지 대책

- 중복수거, 중복실태조사 방지를 위해 식약처, 시·도별, 권역별로 수거 대상 제조업소, 수입업소, 판매업소 등으로 조사대상을 구분

○ 일일 수거검사 현황관리

- 지방청, 시·도로부터 일일 수거검사 현황을 보고받은 후, 전체 수거·검사 현황 종합 정리 보고 및 중복 수거·검사 방지를 수거·검사기관에 통보



□ 지방청, 시·도(시·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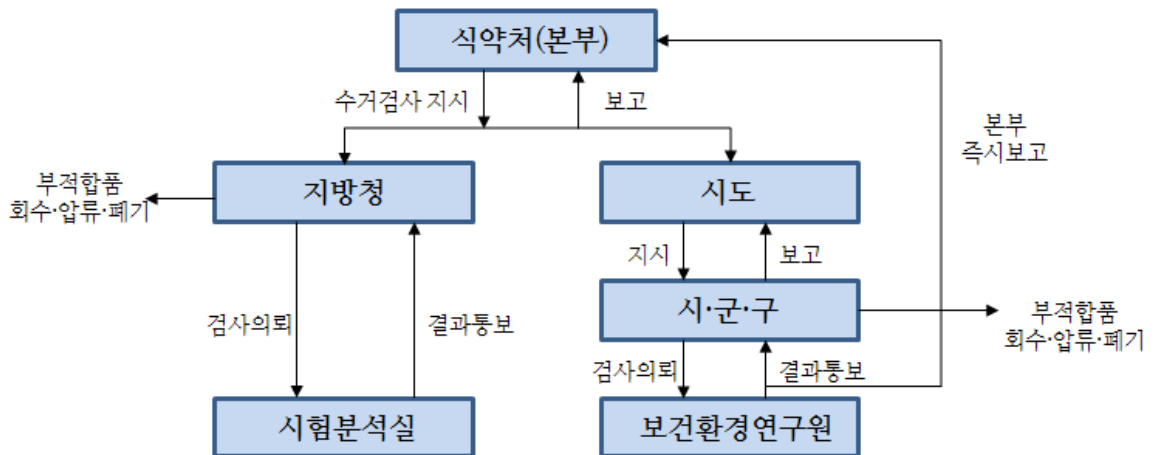
○ 수거·검사 실시 및 판매금지 현장조치

- 수거담당자 지정·운영 및 위기상황에는 타 업무에 우선하여 실시
- 수거인력 부족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적극 활용
- 수입·제조업소 등 관련업소 즉시 방문 후 관련 제품의 판매내역 파악, 판매처 추적조사 실시 및 제품 수거
- 판매금지 제품 발견시 판매금지 및 봉인 후 제품 수거 실시
- 수거제품은 즉시 검사기관에 검사의뢰하고, 검사 의뢰된 제품은 우선검사 실시

○ 수거·검사 의뢰 상황 및 수거제품 상세 내역을 매일 19:00시 까지 검사의뢰 기관 및 시·도, 식약처(현장대응팀-식품관리총괄과, 축산물위생안전과 또는 농수산물 안전과 및 위해평가팀)에 동시 보고(215쪽 참조)

○ 원인·추적 조사 및 판매금지 현장조치

○ 수거검사 업무 흐름도



◆ 수입국 현지 실사

- 위해사고 발생 등에 따라 상대국 제조사가 사고 발생의 원인조사 및 개선 조치를 통보한 경우 상대국 제조사를 현장 방문하여 개선 조치를 직접 확인하는 과정
- 개선 조치 사항 결과를 토대로 수입 잠정 중단 조치 해제 검토

◆ 수입 검사 강화 조치(194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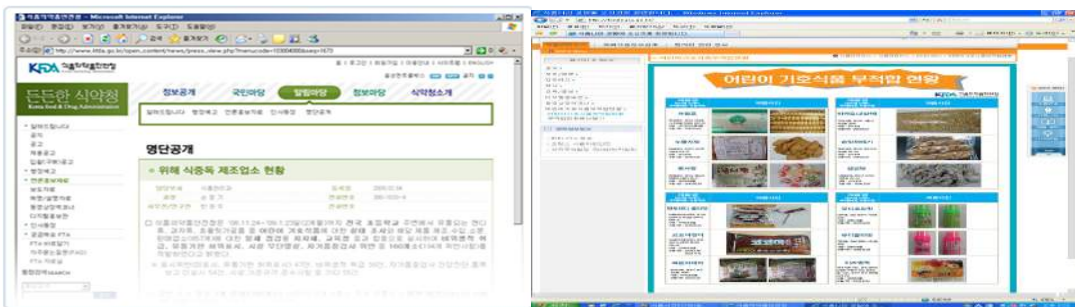
- 수입단계 해당식품 검사 강화
- 검사 강화시 고려 사항
  - 검사대상 및 범위 등 명확화
  - 특정항목의 시험방법, 기준규격 제시

## ◆ 수입 유통 현황 파악

- 위해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관련된 품목 및 물량 등에 대한 통계 자료는 대책 수립, 보도자료 배포 등에 필요
-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통계자료
  - ① 관련 품목의 물량 : 수입(생산)물량, 보관물량, 유통물량
  - ② 2차 가공물량 : 해당 식품(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제조된 식품의 생산물량, 보관물량, 유통물량
- 정보 분석에 필요한 자료는 위해정보과의 요청에 의해 해당과에서 제공
  - 국내 생산현황(축산물위생안전과, 농수산물안전과)
  - 국내 수입현황(수입식품정책과, 검사실사과)
  - 국내 제조유통현황, 판매현황 등(식품관리총괄과, 축산물위생안전과, 농수산물안전과)
  - 유해물질에 관한 자료, 제외국 기준 등(식품기준기획관, 식품위해평가부)

## ◆ 식약처 홈페이지 정보공개(210쪽 참조)

- 소비자 불안감 해소를 위한 위해 식품 정보 신속 공개(식품관리총괄과, 축산물위생안전과, 농수산물안전과)
  - 위해식품 제품명, 제조업소명, 유통기한, 제품 사진 공개





## ◆ 식중독관리시스템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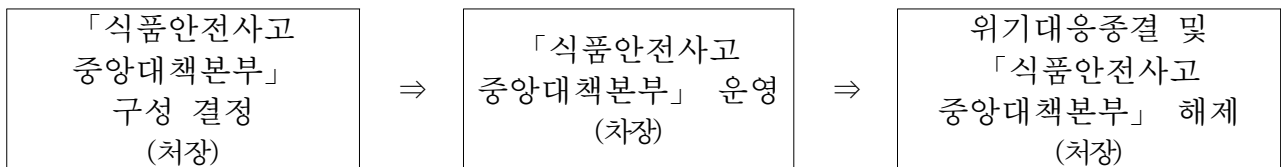
- 식중독관리시스템(<http://minwon.mfds.go.kr> ▶ 식중독 보고)
  -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이 식중독 발생 및 조사결과 보고 시 식품위생법 제8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제2항에 따른 서면보고 외 인터넷 식중독관리시스템에 동시 보고·전파하는 시스템(식약처, 시·도 등)

## ◆ 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

- 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http://ews.foodnara.go.kr>)
  - 학교, 사회복지시설, 기업체 등 집단급식소에서 대량 환자 발생 시 원인식자재 유통을 신속 차단하는 시스템

## ◆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 구성·운영

### □ 업무 흐름



- 「긴급대응회의」 논의 결과 식품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선제적 대응을 위해 긴급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 구성·운영 결정
- 식품안전 사고 분야에 따라 총괄대응반장을 식품안전정책국장, 식품영양안전국장 또는 농축수산물안전국장 중 지명
-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는 총괄대응반장과 협의하여 식품안전 사고 분야에 따라 관련부서 사무관(연구관), 주무관으로 구성
- 운영지원과장에게 한시적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 발령 요청

## □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 역할

- 식품안전사고 대응시 긴급대응 및 의사결정기구 역할 수행
  - 소비자 안전 경보 발령, 수입·판매금지 결정 등
  - 수거·검사, 회수 등 계획 수립 및 시행
- 위기대응 수위 결정 및 긴급대응 실시(컨트롤타워 역할)
  - 상황실, 일일 상황관리 시스템 운영
- 대국민 홍보 계획 수립 및 시행

## ◆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 해제

- 위기 상황 종결 시 처장이 비상 근무 해제

## ◆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또는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또는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위해 발생의 심각성, 사회적 파장, 위해평가 등을 신속히 실시
- 식품위생법 제15조, 제21조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3조에 의해 유통 판매(잠정) 금지 조치, 수입 잠정 중단 조치를 취할 경우 식약처장은 사전에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또는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함
- ※ 국민건강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신속한 금지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수 있음

## ◆ 압류·회수 조치

### □ 압류 폐기(200-201, 218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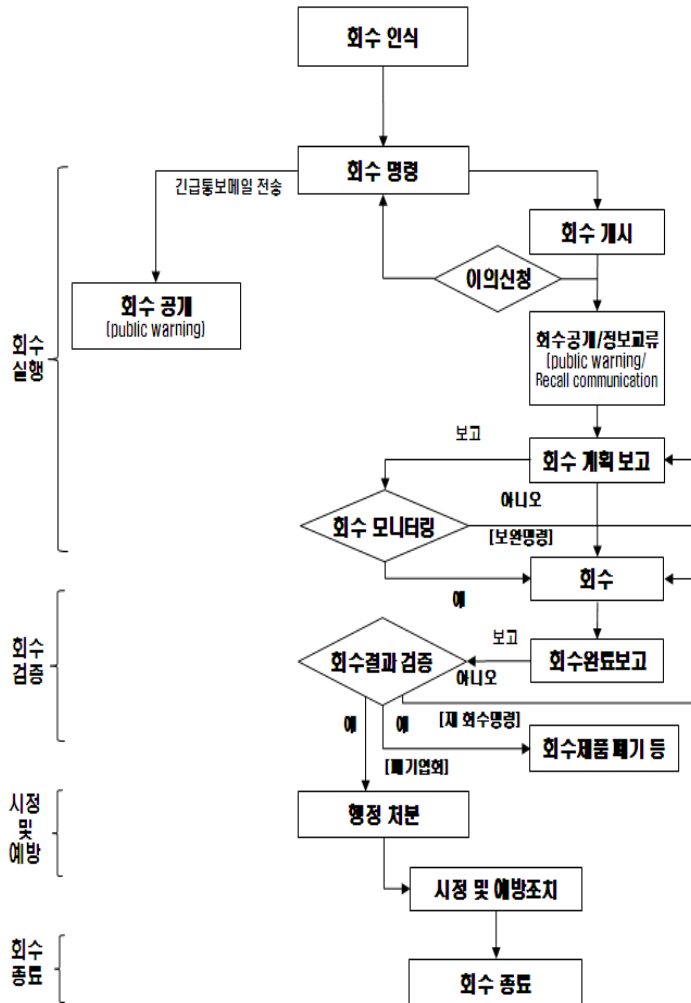
- 식품위생법 제4조 내지 제6조,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4항, 제11조제2항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
-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신고를 받지(하지) 아니한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6조에 해당하는 축산물을 압류 또는 폐기

## □ 자진회수, 강제 회수

-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유통 중인 식품에 대하여 수거 등의 조치를 하는 것으로 회수에는 업체 자진 회수와 정보의 강제 회수 명령으로 구분
- 강제회수는 식품위생법 제72조(폐기처분 등)제3항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6조(압류·폐기 또는 회수)의 규정에 따라 영업자에게 회수명령을 실시하여 회수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자진회수는 식품위생법 제45조(위해식품등의 회수)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의2(위해축산물의 회수 등)에 따라 영업자가 회수계획을 수립하여 실시(211쪽 참조)
- 회수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해식품 회수지침(식품관리과-3199호, ‘08.4.18)”에 따름
- 위해식품 회수업무 절차

단계	회수명령기관	회수영업자
회수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회수영업자에게 즉시 회수명령 및 식약처 보고</li> <li>▪회수관리 전담자 지정, 식약처 통보</li> <li>▪회수내용 홈페이지 게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수명령을 받는 즉시 회수 개시</li> </ul>
회수실행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회수계획 타당성 검토(재고량, 대상량, 계획량, 회수기간 등)</li> <li>▪긴급 조치사항 실시(압류요청 등)</li> <li>▪영업자의 회수효율성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li> <li>※식품판매업소에 회수정보 SMS 전파(식품관리총괄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회수계획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량, 회수효율성점검계획 등</li> </ul> </li> <li>▪홈페이지 등에 회수사실 공개</li> <li>▪회수 사실을 각 거래처 전파 및 회수 대상 식품의 진열·판매 중지 요청</li> </ul>
회수검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종 회수량 압류·폐기 등</li> <li>▪업계 완료보고에 따른 회수 효율성 검증</li> <li>▪소비자감시원 등을 활용하여 판매업소 현장 확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회수완료 보고</li> </ul>
시정 및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회수제품 처리 확인(폐기입회 등) 및 행정처분</li> <li>▪최종 회수·폐기량 확인 및 식약처 보고</li> <li>▪회수영업자의 시정 및 예방조치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공정개선, 설비교체 등</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회수제품의 처리 (폐기, 반송, 식용 외 용도전환)</li> <li>▪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대책 마련</li> </ul>
회수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회수종료 공문 영업자에 발송</li> </ul>	

○ 위해식품 회수 체계도



◆ 원인조사

□ 식중독 원인조사 수행(대규모 식중독 발생 시는 시·군·구, 지방식약청 동시 출동)

○ (시·군·구) : 환경조사 등 현장업무

- 위생점검
- 검체 수거 및 검사 의뢰 등

○ (시·도) : 현장업무 지원

- 위생부서 인력·장비 지원
- 지방식약청과 업무 협조 등

- (지방식약청) : 현장업무 조사·지원
  - 식재료 공급업체 점검 등 실태·추적 조사 업무
    - ※ 필요시 관할 구청 협조 요청
- (식약처 본부) : 총괄 업무
  - 원인식품 조사 총괄

◆ **경보예상정보 전파(42쪽 참조)**

- 「주의」 이상 위해정보 발생시 즉시 START-식품의약품안전처 경보예상 정보 공유시스템에 의한 정보 내용 및 문자메시지를 송부하여 수집된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
  - START-식품의약품안전처 경보예상정보공유시스템 -

주요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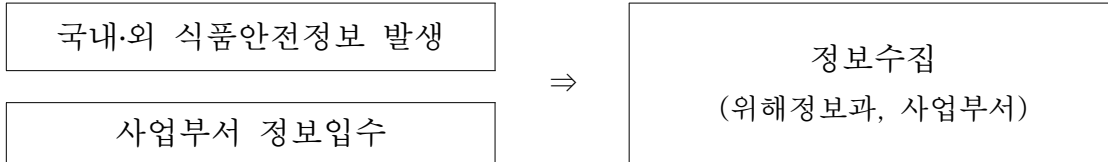
제목	[주의예상 정보공유] ○○시, ○○○ 물질 유출사고 발생	긴급경보 <input checked="" type="checkbox"/>
SMS 내용	[주의예상 정보공유] ○○시, ○○○ 물질 유출사고 발생	SMS보내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등록일	2013-11-28	
부서	소비자위해예방정	
작성자	조수진	

제목 : ○○시, ○○○ 물질 유출사고 발생  
 정보내용  
   ○ 사고발생 지역 및 일시  
   ○ 사고발생 원인  
   ○ 유해물질 종류 및 유출량 등 피해상황  
   ○ 방제조치 현황 등  
 정보 분석 내용  
   ○ 유해물질 특성, 인체위해성  
   ○ 국내외 기준 설정 유무 등 관리현황

파일업로드     전체선택

## ◆ 위해정보 수집 분석

### □ 정보 수집 업무 흐름



- 대응이 필요한 정보가 입수되는 즉시 위해정보과장 또는 사업부서장은 관련 과장을 소집하여 정보 분석 실시

### □ 정보 수집 원칙

- 빠짐없이 정보수집
- 가능한 한 빨리 발견하고 전달·공유
-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발견·정보수집
- 다양한 분야에 많은 관심
- 다양한 분야의 인적 네트워크

### □ 정보 수집

- 전담자 지정·운영
  - 언어별·지역별 전담 정보 수집 담당자 지정
- 주기적인 자료 수집
  - 자료출처의 특성에 따라 정기적으로 자료수집
  - 주요 자료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매일 1회 이상 실시
- 적극적인 자료 수집
  - 가능한 발생 초기에 정보 수집
  -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정책적 판단이 이루어지도록 충분한 자료 수집

○ 다각적 자료수집

-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이용

○ 정보 공유

- 식품안전정보가 입수된 사업부서는 신속히 위해정보과와 정보 공유

□ 정보 분석·분류

○ 주요 정보는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사실관계 확인

○ 해당식품 수입여부, 국내유통현황, 관련 식품 등을 조사

○ 해당 유해물질에 대한 위해성, 제외국 관리 현황 등 조사

○ 정보 분석 결과에 따라 조치의 시급성, 관리 중요도, 소비자 인식, 향후 추이에건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보를 분류

○ 정보 분류 판단/고려 사항

구 분	판단/고려 사항
정보의 신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 유입 경로, 신뢰성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정보 공유</li> <li>▪ 선행 조사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활동</li> </ul>
파급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의 심각성, 확대 가능성, 사건 전개 속도, 파급 효과 등</li> <li>▪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 및 파장</li> </ul>
위해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체 위해성 및 심각성, 섭취 연령·대상별 위해도</li> <li>▪ 국내 유통 여부 및 유통 규모</li> </ul>
유사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외 특정 국가·지역에서 과거 발생 사례 및 빈도</li> </ul>
여론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외 언론보도 및 인터넷 게재 내용</li> </ul>

## ◆ (잠정) 수입 중단 조치

### □ 사전 검토 대상

- 관련 중앙 행정기관 의견 수렴
-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또는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또는 신속한 중단 조치가 필요한 경우 사후 심의의결
- ※ 심의위원회 심의시 이해관계인 출석 의견 진술

### □ 관련 기관 협의 및 보고

- 청와대, 국무조정실, 외교부 등 관계부처에 수입 중단 사실 통보
- 해당국가에 수입 중단 사실 통보(국제협력담당관, 외교부, 해당 국가)(201-202쪽 참조)
- ※ 수입금지대상 국가/지역/식품의 종류, 수입금지 사유 및 기간 등 통보

### □ 공문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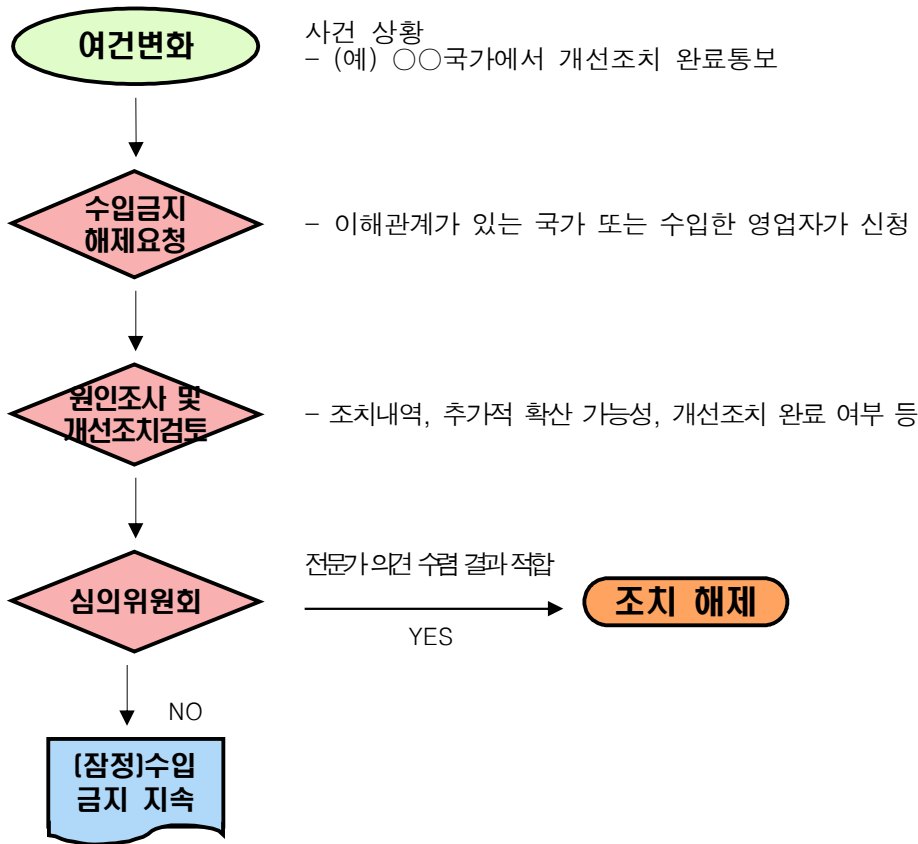
- 수입 잠정 중단 공문 시행(지방청)(193쪽 참조)
  - 수입 중단 사유, 적용법령, 수입 중단 대상 식품, 수입 중단 일자, 수입 중단 적용 기준일자(접수분 또는 선적분 등) 등 명시
  - 수입 중단일 이전에 수입 신고한 제품 중 수입 중단일까지 수입신고 수리를 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처리방안
- ※ 기 입항되었거나 보관중인 제품은 수입 중단 조치일로부터 10일 이내 신고시 처리
- 수입 잠정 중단 사실 통보(수입업소)
  - 개별업소에 대한 문서시행 또는 홈페이지, 게시판 등 일괄고시
- ※ 긴급조치에 따른 사후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또는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심의위원회는 위생제도분과 및 위해평가분과 위원 참여



□ 수입 잠정 중단 조치

- 식품위생법 제4조 내지 제9조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 제33조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15조, 제21조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5조의2, 제33조의2에 해당되는 경우 수입 잠정 중단 조치를 할 수 있음

□ 수입 잠정 중단 해제 절차



◆ (잠정) 유통 판매 금지 조치

□ 유통 판매 잠정 금지 조치(193쪽 참조)

- 식품위생법 제4조 내지 제9조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 제33조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식품위생법 제15조, 제21조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5조의2에 해당되는 경우는 유통 판매 잠정 금지 조치를 할 수 있음

□ 유통 판매 금지 조치(192쪽 참조)

- 식품위생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동법 제4조 내지 제9조를 위반한 경우,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6조에 따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 제33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유통 판매 금지 조치를 할 수 있음

□ 유통 판매 (잠정) 금지 품목 공개

- 홈페이지 공개
  - 제조업소명, 제품명, 유통기한, 검사결과, 제품사진 등
- TV 자막 광고
  - 식품관리총괄과, 축산물위생안전과, 농수산물안전과에서 방송국에 문서로 요청

ex) OO사 OO제품에서 OO 검출로 유통·판매를 금지되었으며, 제품을 구입한 경우 섭취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SMS 문자메시지 전파

- 식품관리총괄과, 축산물위생안전과, 농수산물안전과에서 관련 유통 판매 업체, 협회, 백화점 등에 통보



○ 위해식품 판매 자동차단시스템(POS)

- 위해상품 정보를 유통업체에 실시간 전송하여 매장 계산대에서 구매를 자동 차단하는 시스템
- 상품 바코드 정보를 '코리안넷'을 통해 유통업체 본사에 전송하여 각 매장의 계산대에서 판매를 차단
- 코리안넷(KorEANnet)은 국내외 수입·제조업체의 상품 정보(바코드번호, 업체명, 사진 등)을 유통 업체에 실시간 제공



□ 유통 판매 (잠정) 금지 해제 절차

- 수입 잠정 중단 해제 절차에 준함(182쪽 참조)

◆ 정보 활동 강화

- ‘유통 판매 (잠정) 금지 해제’, ‘수입 잠정 중단 조치 해제’를 할 경우 해당 품목 및 유사 품목에 대한 정보 수집 활동 강화
- 위해 정보 입수시 신속한 유통 판매 (잠정) 금지, 수입 잠정 중단 조치 및 수거·검사를 통하여 식품 사고 방지

◆ 해당 국가 통보

- 수입 식품에서 위해물질이 검출되어 수입 잠정 중단 조치, 유통·판매 (잠정) 금지 조치 등이 실시 될 경우 해당 국가에 통보
- 외교부를 경유하여 해당 국가에 통보

◆ 해외공관을 통한 위해정보 확인 요청

- 위해사고 발생 또는 발생 우려시 취하는 일련의 조치로 위해 사고 등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과정
  - 해당국 대사관 또는 식약관을 통해 신속하게 사실 확인 요청

## ◆ 행정 처분

- 위해 사고 등은 사회·경제적인 문제를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가능한 제재 조치를 취하여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관련 국내 규정에 따라 실시
- 위해 식품을 제조한 업소, 위해 식품을 수입한 업소 및 유통 판매 (잠정) 금지된 품목을 유통시킨 판매업소 등에 대한 신속한 행정처분으로 경각심 고취

## ◆ 홍보 자료 배포(204쪽 참조)

- 위해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정확한 내용 및 대응방법을 설명하여 위해 사고 확산을 방지하고 소비자와 생산자는 막연한 불안 및 불신을 가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위해 사고의 성격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 및 이해가 되도록 교육·홍보 자료를 작성·배포
  - Q&A 작성, 처장 당부말씀

## ◆ TV 자막 광고 요청

- 위해식품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기 위하여 TV 자막 광고를 통해 위해식품 공개(식품관리총괄과, 축산물위생안전과, 농수산물안전과)
- ※ 식품위생법 제17조제8항에 의하여 방송사업자 등에게 위해식품 차단 정보 제공



ex) OO사 OO제품에서 OO 검출로 유통·판매를 금지되었으며, 제품을 구입한 경우 섭취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 록

1. 공문서 등 양식
2. Q&A 예시
3. 인터뷰, 기자회견, 브리핑 등 요령
4. 비상연락체계



[별첨 자료]

1. 공문서 등 양식 .....	191
2. Q&A 예시 .....	221
	3. 인터뷰, 기자
회견, 브리핑 등 요령 .....	224
4. 비상 연락 체계 .....	229






별첨 자료 1. 공문서 등 양식


< 목 차 >

1. 유통 판매 금지 조치 .....	192
2. 유통 판매 잠정 금지 조치 .....	193
3. 수입 잠정 중단 조치 .....	193
4. 수입 검사 강화 조치(1) .....	194
5. 수입 검사 강화 조치(2) .....	194
6. 수입 검사 강화 조치(3) .....	195
7. 수거 검사 지시(1) .....	196
8. 수거 검사 지시(2) .....	196
9. 수거 검사 지시(3) .....	197
10. 수거 검사 지시(4) .....	198
11. 보도 자료 예시 .....	199
12.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 비상 근무 .....	200
13. 압류 폐기(1) .....	200
14. 압류 폐기(2) .....	201
15. 해당 국가 통보(1) .....	201
16. 해당 국가 통보(2) .....	202
17. 관련 기관 협조 요청 .....	202
18. 관련 업계 협조 요청(1) .....	203
19. 관련 업계 협조 요청(2) .....	204
20. 교육 홍보 자료 배포 .....	204
21. 정보 보고서 양식 .....	205
22. 상황점검회의 결과보고서 양식 .....	206
23. 식품사고 위기경보 발령문 .....	207
24. 보도 자료 작성 서식 .....	208
25. 설명(해명) 자료 작성 서식 .....	209
26. 위해식품 정보 공개 .....	210
27.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 .....	211
28. 주요 이슈 결과발표 사전계획 .....	212
29. 언론 취재 요청 및 응대 보고 .....	213
30. 수거 검사 일일 보고 .....	215
31. 판매 금지 식품 수거 검사 지침 통보 .....	216
32. 판매 금지 식품 점검표 .....	217
33. 압류 회수 현황 보고 .....	218
34. 유통 판매 금지 식품 현황 .....	219
35. 'OO' 관련 유통 판매 금지 제품 수거 검사 현황 .....	220


# 1. 유통 판매 금지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	<h2>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h2>
수신자 (경유)	수신처 참조
제목	○○산 분유 등 유제품 함유 식품 유통 판매 금지
<p>1. 최근 ○○산 분유·우유제품에서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인 ‘○○’이 함유된 것으로 밝혀지고, 분유 등이 함유된 ○○산 식품에서 잇따라 ○○이 검출됨에 따라</p> <p>2.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으로부터 수입되어 시중에 유통된 제품을 현재 수거·검사하고 있으므로, 현재 수거되어 검사가 진행중인 제품과 앞으로 수거·검사 대상 제품에 대하여는 영업상 사용하거나 제조·가공·유통·진열·판매하는 행위를 ‘○○.○○.○○일부터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금지조치하오니,</p> <p>3. 각 시·도 및 지방청에서는 붙임 428개 제품 현황중 ○○이 검출되지 않은 적합한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시중에 유통·판매 또는 사용되지 않도록 관할업소에 별도 보관 봉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4. 아울러, 각 협회에서는 회원(비회원 포함)들에게 동 내용을 공지하여 식품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관련제품 목록은 별도 송부하며 식약처 홈페이지(<a href="http://www.mfds.go.kr">www.mfds.go.kr</a>)에서도 확인이 가능함.</p> <p>5. 검사결과 적합한 품목은 판매금지를 신속히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p>	
수신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식품안전관리과장),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식품안전관리과장), 경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식품안전관리과장),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식품안전관리과장),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식품안전관리과장),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식품안전관리과장), 서울특별시(식품안전과장), 부산광역시(식품안전과장), 대구광역시(식품안전과장), 인천광역시(위생정책과장), 광주광역시(식품안전과장), 대전광역시(식품안전과장), 울산광역시(보건위생과장), 세종특별자치시(사회복지과장), 경기도지사(식품안전과장), 강원도지사(식품의약과장), 충청북도지사(식품의약품안전과장), 충청남도지사(식품의약안전과장), 전라북도지사(건강안전과장), 전라남도지사(식품안전과장), 경상북도지사(식품의약과장), 경상남도지사(식품의약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보건위생과장), 한국식품공업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사)대한제과협회, 한국음식업중앙회, 한국조리사중앙회, 한국식품임가공협회, 한국면류공업협동조합, 한국제빵식품공업협동조합, 한국신삼제품협회, 한국재제염공업협동조합, 한국국물제분공업협동조합, 한국연식품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해조류가공식품공업협동조합, 한국압착식용유업중앙회, 한국추출가공식품업중앙회, 대한병과공업협동조합, 한국도시락식품공업협동조합, 한국김치절임식품공업협동조합, 대한장류공업협동조합, 한국죽염공업협동조합, 한국어육제품공업협동조합, 한국제빵공업협동조합, 한국조미료공업협동조합, 한국청량음료공업협동조합, (사)한국제분공업협회, (사)한국급식협회, 대한영양사협회,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사단법인 한국편의점협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한국백화점협회
시행	식품관리총괄과-○○○○ (○○○○.○○.○○.)


## 2. 유통 판매 잠정 금지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	<b>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b>
수신자 (경유)	수신처 참조
<b>제목</b> 수입식품 판매중단 등 협조요청	
<p>1. 최근 ○○에서 ○○이 첨가된 분유를 섭취한 영·유아의 신장결석 등 인명 피해 사고 발생 보도에 따라 우리 처에서는 분유(우유)가 함유된 ○○산 수입식품에 대한 ○○ 혼입 여부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p> <p>2. 이와 관련,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조요청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가. 우리 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 검사 결과 판정 시 까지 귀사가 ○○에서 수입한 분유(우유) 함유 식품에 대한 <b>잠정 판매중단(보류)</b> 조치</p> <p>나. 귀사가 수입한 분유(우유) 함유 ○○산 식품('○○.○○.이후 수입분)의 품목별 재고량(보관장소) 및 판매현황 등을 파악하여 ○○. ○○(월)까지 <b>식약처(식품관리총괄과)</b>으로 제출(FAX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연락처 : 식약처 식품관리총괄과(T.043-719-2055, FAX 043-719-2050). 끝.</p>	
수신자	○○사 등 수입업체 40개소
시행	식품관리총괄과-○○○○ (○○○○.○○.○○.)


## 3. 수입 잠정 중단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	<b>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b>
수신자 (경유)	수신처 참조
<b>제목</b> 수입식품 수입금지 조치 통보	
<p>1. ○○산 ○○ 오염 분유사건과 관련하여 제외국에서 유제품이 함유된 여러 제품에서 ○○이 검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에 수입된 유제품 함유 가공식품에 대한 검사결과에서도 ○○이 검출됨에 따라,</p> <p>2. ○○에서 수입되는 분(우)유, 유청, 카제인 등 유제품이 함유된 모든 제품에 대하여 잠정 수입금지 조치를 실시함을 통보하니 수입식품 검사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p> <p>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수입관리과장),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강릉수입식품검사소장),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수입관리과장),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자성대수입식품검사소장),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신선대수입식품검사소장),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양산수입식품검사소장),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신항수입식품검사소장),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통영수입식품검사소장),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수입관리과장),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왕수입식품검사소장),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광주수입식품검사소장),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인천국제공항수입식품검사소장),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평택수입식품검사소장),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식품안전관리과장),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식품안전관리과장),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식품안전관리과장)</p>	
시행	수입식품정책과-○○○○ (○○○○.○○.○○.)

#### 4. 수입 검사 강화 조치(1)

 식품의약품안전처	<b>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b>
수신자 (경유)	수신처 참조
제목 수입식품등 무작위표본검사 강화 지시	
<p>1. ○○에서 영유아용 분류에서 ○○이 검출된 것과 관련하여 ○○산 수입 가공식품 중 분류가 포함된 식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시하니 수입식품 검사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가. 대상식품 : ○○산 과자류, 빵류, 초콜릿류(분류 10% 이상 제품)          나. 검사항목 : ○○ (기준 : 불검출)          다. 시행일자 : ○○○○. ○○. ○○일까지          라. 기타: 제조회사별 제품명별로 1회 실시. 이후 무작위표본검사시 검사</p> <p>2. 아울러, ○○산 가공식품 중 분류 함유제품에 대하여는 최초수입시 또는 무작위표본검사시 “○○(기준: 불검출)” 검사를 추가하여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끝.</p> <p>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수입관리과장),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강릉수입식품검사소장), 부산 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수입관리과장),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자성대수입식품검사소장), 부산 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신선대수입식품검사소장),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양산수입식품검사소장),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신항수입식품검사소장),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통영수입식품검사소장),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수입관리과장),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왕수입식품검사소장),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광주수입식품검사소장),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인천국제공항수입식품검사소장),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평택수입식품검사소장),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식품안전관리과장),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식품안전관리과장),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식품안전관리과장)</p> <p>시행 수입식품정책과-○○○○ (○○○○.○○.○○.)</p>	

#### 5. 수입 검사 강화 조치(2)

 식품의약품안전처	<b>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b>
수신자 (경유)	수신처 참조
제목 수입식품 검사강화 지시	
<p>1. 관련 : 수입식품정책과-○○○○(○○○○.○○.○○.)호, ○○○○(○○○○.○○.○○.)호.</p> <p>2. ○○산 분류 사용 가공식품의 ○○ 검출 사례가 외국에서 계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검사강화를 지시하니 수입식품 검사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가. 대상식품 : ○○산 분류·우유, 유청, 유당, 카제인 포함된 모든 식품등          나. 검사항목 : ○○(기준 : 불검출)          다. 시행일자 : 별도 지시일까지</p>	

라. 기타

- 1) 제조회사별 제품명별로 3회 실시하고, 적합한 경우 무작위표본검사시 추가 검사 실시.
- 2) 특히, 유제품 함량이 많은 과자류, 초콜릿류, 빵류등에 대하여는 무작위 표본 검사를 확대(자체 무작위표본검사 확대) 실시. 끝.

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수입관리과장),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강릉수입식품검사소장), 부산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수입관리과장),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자성대수입식품검사소장), 부산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신선대수입식품검사소장),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양산수입식품검사소장),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신항수입식품검사소장),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통영수입식품검사소장),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수입관리과장),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왕수입식품검사소장),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광주수입식품검사소장),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인천국제공항수입식품검사소장),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평택수입식품검사소장),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식품안전관리과장),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식품안전관리과장),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식품안전관리과장)

시행 수입식품정책과-○○○○ (○○○○.○○.○○.)

## 6. 수입 검사 강화 조치(3)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자 수신처 참조  
(경유)

제목 수입식품등 검사강화 지시

1. 최근 ○○산 유성분 함유제품에서 ○○ 검출과 관련, ○○ 제품을 수입한 여러 국가에서도 ○○이 검출되고 있어 아래와 같이 ○○ 검사강화를 지시하니 수입식품 검사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가. 대상국가

- 1) ○○, ○○, ○○, (3 개국)
- 2) 그 외 국가

나. 대상품목 : 유제품 성분이 함유된 모든 제품

다. 검사항목 : ○○(기준 : 불검출)

라. 시행일자 : 별도지시일까지


마. 기타

- 1) ○○ 등 3개국에 대하여는 제조회사별 제품명별로 3회 실시.
- 2) 상기 3개국을 제외한 국가에 대하여는 제조회사별 제품명별로 1회 실시
- 3) 검사실시(3회 또는 1회) 결과 적합한 경우, 무작위표본검사시 추가 검사. 끝.


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수입관리과장),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강릉수입식품검사소장), 부산신 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수입관리과장),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자성대수입식품검사소장), 부산 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신선대수입식품검사소장),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양산수입식품검사소장),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신항수입식품검사소장),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통영수입식품검사소장),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수입관리과장),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왕수입식품검사소장),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광주수입식품검사소장),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인천국제공항수입식품검사소장),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평택수입식품검사소장),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식품안전관리과장),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식품안전관리과장),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식품안전관리과장)

시행 수입식품정책과-○○○○ (○○○○.○○.○○.)

## 7. 수거 검사 지시(1)

 식품의약품안전처	<h3>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h3>
수신자 (경유)	수신처 참조
제목	수거·검사 지시
<p>최근 ○○에서 분유를 섭취한 영·유아의 신장결석 등 인명 피해 사고 발생 보도에 따른 대응 조치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수거·검사를 지시하오니 그 결과를 ‘○○. ○○. ○○’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거기관 : 수입업체 관할 지방식약청(단, 판매처가 타 지방청 관할지역에 소재한 경우 해당 지방청에 협조 요청)</li> <li>○ 수거대상 : 분유(우유)가 함유된 ○○산 식품</li> <li>○ 검사항목 : ○○(기준: 불검출)</li> <li>○ 수거건수 : 수입 업체별 2~3건(※기 수거한 업체 및 품목은 제외)</li> <li>○ 수거방법 : 수입 업체별 제품명 및 품목별로 수거(※분유 함량이 높은 빵 및 초콜릿류 제품 우선 수거)</li> </ul> <p>붙임 1. 분유(우유) 함유 ○○산식품 수입현황(○○○○.○○.○○~○○.○○)          2. 수거·검사 결과보고(양식). 끝.</p> <p>수신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식품안전관리과장),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식품안전관리과장),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식품안전관리과장),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식품안전관리과장),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식품안전관리과장),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식품안전관리과장)</p> <p>시행 식품관리총괄과-○○○○ (○○○○.○○.○○.)</p>	

## 8. 수거 검사 지시(2)

 식품의약품안전처	<h3>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h3>
수신자 (경유)	수신처 참조
제목	○○산 분유 등 함유 판매금지 식품 수거·검사 및 유통관리 지시
<p>1. 관련 : 식품관리총괄과-○○○○(○○○○.○○.○○)호와 관련됩니다.</p> <p>2. 최근 분유·우유 등 유제품을 함유한 일부 ○○산 식품에서 ○○이 검출됨에 따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하여 ○○으로부터 수입되어 유통된 분유 등이 함유된 식품에 대하여 우리 처에서는 ‘○○.○.○○일부터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일시적 판매금지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p> <p>3. 이와 관련하여 각 시·도 및 지방청에 지시하오니, 아래의 기준에 따라 붙임의 판매금지 제품에 대한 유통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련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에 안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판매금지 모든 제품에 대한 신속한 수거 및 검사를 실시하고 매일 실적을 양식에 의거 식약처에 당일 20시까지 일일보고(recall@mfds.go.kr, 043)719-2052~2066)</li> <li>※ 일일보고 양식 및 유통판매금지식품 엑셀파일(분홍색 부분)에 수거 내용(수거기</li> </ul>	

관, 수거일자, 검사완료일 등)을 기록하여 함께 보고할 것.

○ 시·도(시·군·구)는 동원가능한 모든 가용인력(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적극 활용)을 총동원하여 학교주변 문방구, 중·소규모 판매업소까지 점검 확대 실시

※ 초등학교주변 문방구 등 어린이용 식품부터 우선 수거·검사하고, 현장 지도·점검 병행 실시

○ 판매업소에서 수거는 유상수거 함을 원칙으로 실시

○ 지역 구분 없이 유통금지 식품에 대한 봉인 조치 및 수거·검사(○○ 검사가 진행 중인 제품 제외) 실시

○ 검사결과 ○○이 검출되지 않을 경우 봉인한 제품을 신속하게 봉인해제 및 판매·금지 해제

○ 모든 수거는 '○○.○○.○○(수)까지 반드시 완료하고 검사완료 결과보고를 '○○.○○.○○(금)까지 반드시 제출

○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http://www.mfds.go.kr))에 매일 수거·검사 적합 현황을 게재할 예정이므로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당일 수거·검사 및 판매금지 등 실시

※ 기타 판매금지 식품 유통관리 및 수거·검사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불임 사후관리 지침 참조

- 붙임 1. 식품 판매 등 금지 명령 조치사항  
2. 판매금지 식품 유통관리 점검표  
3. 일일보고 - 수거·검사, 판매금지 식품 점검 현황  
4. 현재유통판매금지식품 현황  
5. 유가공품 함유식품 수입업체 현황. 끝.

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식품안전관리과장),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식품안전관리과장), 경신  
신 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식품안전관리과장),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식품안전관리과장), 광주  
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식품안전관리과장),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식품안전관리과장), 서울특별  
시장(식품안전과장), 부산광역시(식품안전과장), 대구광역시(식품안전과장), 인천광역시(위생  
정책과장), 광주광역시(식품안전과장), 대전광역시(식품안전과장), 울산광역시(보건위생과장),  
세종특별자치시(사회복지과장), 경기도지사(식품안전과장), 강원도지사(식품의약과장), 충청북도지사  
(식품의약품안전과장), 충청남도지사(식품의약품안전과장), 전라북도지사(건강안전과장), 전라남도지사(식품  
안전과장), 경상북도지사(식품의약품안전과장), 경상남도지사(식품의약품안전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보건위생  
과장)

시행 식품관리총괄과-○○○○ (○○○○.○○.○○.)

## 9. 수거 검사 지시(3)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자 수신처 참조  
(경유)

제목 ○○산 분유 등 함유 판매금지 식품 집중 수거·검사 및 초등학교주변 관리 강화  
지시

1. 식품관리총괄과-○○○○(○○○○.○○.○○)호 관련입니다.

2. 최근 분유 등 유제품이 함유된 ○○산 일부 식품에서 ○○이 검출되어 우리 처에서는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하여 ○○으로부터 수입되어 유통된 분유 등이 함유된 식품에 대하여 '○○.○○.○○일부터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판매금지 조치한바 있습니다.

3. 이번에 판매금지된 제품중 많은 제품이 초등학교 주변 등 문구점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바, 각 지방청 및 시·도에서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동원가능한 모든 인력을 총동원하여 초등학교주변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하여 현장조사하고 판매금지 제품에



대한 봉인 및 부적합 제품에 대한 압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현재까지 수거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일까지 모든 품목이 수거완료 될 수 있도록 추적조사 등을 철저히 하여 모든 제품이 수거될 수 있도록 수거·검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수신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식품안전관리과장),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식품안전관리과장),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식품안전관리과장),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식품안전관리과장),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식품안전관리과장),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식품안전관리과장), 서울특별시(식품안전과장), 부산광역시(식품안전과장), 대구광역시(식품안전과장), 인천광역시(위생정책과장), 광주광역시(식품안전과장), 대전광역시(식품안전과장), 울산광역시(보건위생과장), 세종특별자치시(사회복지과장), 경기도지사(식품안전과장), 강원도지사(식품의약과장), 충청북도지사(식품의약품안전과장), 충청남도지사(식품의약품안전과장), 전라북도지사(건강안전과장), 전라남도지사(식품안전과장), 경상북도지사(식품의약과장), 경상남도지사(식품의약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보건위생과장)

시행 식품관리총괄과-○○○○ (○○○○.○○.○○.)

## 10. 수거 검사 지시(4)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자 수신처 참조  
(경유)

제목 ○○산 분유 등 함유 판매금지 식품중 미수거 품목에 대한 집중 수거·검사 실시

1. 관련 : 식품관리총괄과-○○○○(○○○○.○○.○○),-○○○○(○○○○.○○.○○) 호와 관련됩니다.

2. 우리 처에서는 분유 등 유제품 함유 ○○산 일부 제품에서 ○○이 검출되어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하여 ○○에서 수입된 관련 제품에 대하여 ‘○○.○○.○○일부터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판매금지 조치한바 있습니다.


3. 판매금지 된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유통제품에 대한 수거·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수거되지 않은 품목이 있어 알려드리니, 각 시·도(시·군·구) 및 지방청은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불임의 미수거 제품이 ‘○○.○○.○○일까지 모두 수거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미수거품목업체별현황  
2. 미수거품목현황 끝.

수신자 교육부장관(학생건강안전과장),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식품안전관리과장),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식품안전관리과장),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식품안전관리과장),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식품안전관리과장),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식품안전관리과장),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식품안전관리과장), 서울특별시(식품안전과장), 부산광역시(식품안전과장), 대구광역시(식품안전과장), 인천광역시(위생정책과장), 광주광역시(식품안전과장), 대전광역시(식품안전과장), 울산광역시(보건위생과장), 세종특별자치시(사회복지과장), 경기도지사(식품안전과장), 강원도지사(식품의약과장), 충청북도지사(식품의약품안전과장), 충청남도지사(식품의약품안전과장), 전라북도지사(건강안전과장), 전라남도지사(식품안전과장), 경상북도지사(식품의약과장), 경상남도지사(식품의약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보건위생과장)

시행 식품관리총괄과-○○○○ (○○○○.○○.○○.)

## 11. 보도 자료 예시

 <b>식품의약품안전처</b> 대변인실 ☎ 043-719-11XX	보도자료	배 포	2013.5.10.(금)
	담 당 과	식품관리총괄과 (☎043-222-2220)	
	과 장	박식약	
	연 구 관	안약처	

대만산 일부 제품 DEHP 검출 (HY헤드라인M 18p,진하게)

- 2개 가공식품 유통·판매 중단, 회수조치 - (HY헤드라인M 15p)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산 분유 등에서 ‘○○’이 검출된 것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 수입된 분유성분 등이 함유된 ○○산 초코릿, 빵, 과자류 등에 대한 ○○ 검사를 실시한 결과,

- 현재 ○○식품(주)이 ○○에서 OEM으로 생산하여 수입한 ‘○○제품(○○ppm)’과 (주)○○이 ○○에서 수입한 ‘○○제품(○○ppm)’ 에서 ○○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즉시 압류하고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토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 식약처는 ○○으로부터 수입된 제품에 대하여 현재 지속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가 완료되는 즉시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 ○○이 검출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을 언론 등에 즉시 공개하고 신속하게 회수 및 폐기 조치를 취할 계획임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경우 섭취를 자제하고 해당 회사나 판매점에 반품토록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사 ○○제품 : ‘○○.○○.○○자(제조일) 생산 제품 또는 ’○○.○○.○○자 유통기한 제품
- ○○사 ○○제품 : ‘○○.○○.○○자 유통기한 제품

□ 식약처는 이번 문제를 계기로 ○○산 식품의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분유 등이 함유된 ○○산 식품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히면서


- 앞으로 수입되는 모든 ○○산제품에 대해서는 수입단계 검사를 강화하여 불량식품의 수입을 차단하고, 유통·판매중인 제품에 대하여도 수거 검사를 강화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mfds Press Release

## 12.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 비상 근무

 식품의약품안전처	<b>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b>
수신자 (경유)	수신처 참조
제목	○○ 검출관련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 구성·운영 및 비상근무 실시
<p>1. ○○산 분유 등 함유제품에 ○○ 검출과 관련하여 식품안전 위기상황을 체계적·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불임과 같이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를 구성하였습니다.</p> <p>2.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의 각 팀장께서는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고, 매일 14:00까지 진행상황을 상황관리반에 알려주시기 바라며, 매일 아침 개최되는 간부회의에 참석(팀원 중 과장 및 사무관1명 포함)하여 상호 정보교환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식품안전 위기상황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불임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계획. 끝.	
수신자	식약처 본부 및 지방청 전 부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전 부서
시행	운영지원과-○○○○ (○○○○.○○.○○.)


## 13. 압류 폐기(1)

 식품의약품안전처	<b>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b>	
수신자 (경유)	수신처 참조	
제목	부적합 식품 압류 및 폐기 조치 지시	
<p>1. 최근 ○○에서 우유의 ○○ 검출과 관련하여 국내 수입유통중인 우유 함유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 결과 일부 부적합 제품에 대한 압류 및 폐기 조치를 지시하니, 신속한 압류·폐기 등 조치후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p> <p>2. 아울러, 회수된 제품의 폐기 등 조치시에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임회하는 등 회수·폐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업소명	○○사	(주)○○
소재지	서울시 ○○구 ○○동	부산시 ○○ ○○동
제품명	○○	○○
수신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식품안전관리과장),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식품안전관리과장)	
시행	식품관리총괄과-○○○○ (○○○○.○○.○○.)	


## 14. 압류 폐기(2)

 식품의약품안전처	<h3>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h3>
수신자 (경유)	수신처 참조
<b>제목</b> 위해식품 유통 판매금지 및 회수(압류)조치	
<p>1. 최근 ○○에서 분유를 섭취한 영·유아들이 신장결석 등 인명 피해사고가 있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우리 청에서는 국내에 수입된 분유 등 우유가 함유된 모든 ○○산 식품을 대상으로 긴급 수거·검사한 결과, 부적합 판정 및 위해우려 한 식품이 있어 해당 수입업소로 하여금 제품 판매중지 및 회수 할 것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p> <p>2. 이와 관련하여 회수대상 제품을 불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귀 시·도(시·군·구)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동원 가능한 식품감시 인력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적극 활용하여 “대형할인점, 슈퍼마켓, 학교 앞 문방구”등 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해당 제품이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일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회수(압류) 등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3. 아울러, 회수(압류)결과는 1차 ‘○○.○○.○○(목)까지, 2차 ‘○○.○○.○○(목)까지 불임 서식에 따라 작성 우리 청(식품관리총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p>	
수신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식품안전관리과장),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식품안전관리과장),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식품안전관리과장),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식품안전관리과장),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식품안전관리과장),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식품안전관리과장), 서울특별시(식품안전과장), 부산광역시(식품안전과장), 대구광역시(식품안전과장), 인천광역시(위생정책과장), 광주광역시(식품안전과장), 대전광역시(식품안전과장), 울산광역시(보건위생과장), 세종특별자치시(사회복지과장), 경기도지사(식품안전과장), 강원도지사(식품의약품안전과장), 충청북도지사(식품의약품안전과장), 충청남도지사(식품의약품안전과장), 전라북도지사(건강안전과장), 전라남도지사(식품안전과장), 경상북도지사(식품의약품안전과장), 경상남도지사(식품의약품안전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보건위생과장)	
시행    식품관리총괄과-○○ (○○○○.○○.○○.)	


## 15. 해당 국가 통보(1)

 식품의약품안전처	<h3>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h3>
수신자 (경유)	국제협력담당관
<b>제목</b> 수입식품 수입금지 조치 통보 요청	
<p>1. ○○산 ○○ 오염 분유사건과 관련하여 제외국의 검사결과 유제품이 함유된 여러 제품에서 ○○ 검출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에 수입된 유제품 함유 가공식품에 대한 검사결과에서도 ○○이 검출됨에 따라,</p> <p>2. ○○에서 수입되는 분(우)유, 유청, 카제인 등 유제품이 함유된 모든 제품에 대하여 수입금지 조치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니 이를 외교부를 통하여 ○○ 정부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p>	
시행    수입식품정책과-○○○○ (○○○○.○○.○○.)	

## 16. 해당 국가 통보(2)

 식품의약품안전처	<b>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b>
수신자 (경유)	외교부장관(동북아2과장)
제목	[지급]수입금지 조치 통보 협조요청
<p>1. ○○산 ○○ 오염 분유사건과 관련하여 제외국의 검사결과 유제품이 함유된 여러 제품에서 ○○ 검출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또한 우리나라에 수입된 유제품 함유 가공식품에 대한 검사결과에서도 ○○이 검출됨에 따라,</p> <p>2. 우리 처에서는 ○○에서 수입되는 분(우)유, 유청, 카제인 등 유제품이 함유된 모든 제품에 대하여 수입금지 조치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니, 동 사항이 ○○측에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붙임 : 보도자료 (기타 참고자료는 추후 송부). 끝. 시행 국제협력담당관-○○○ (○○○○.○○.○○)</p>	

## 17. 관련 기관 협조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	<b>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b>
수신자 (경유)	교육부장관(학생건강안전과장)
제목	초등학교 등 학교주변 식품판매업소 등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 협조 요청
<p>1. 우리 처은 최근 분유·우유 등 유제품을 함유한 일부 ○○산 식품에서 ○○이 검출됨에 따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하여 ○○으로부터 수입되어 시중에 유통 되고있는 분유 등이 함유된 식품에 대하여 '○○.○○.○○일부터 동 제품의 수거검사가 완료 될때까지 일시적 판매금지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p> <p>2. 이와 관련하여 귀부에 아래와 같이 협조사항 요청하오니 초등학교 등 학교 주변 식품판매업소 등에서 ○○ 검출식품 및 분유 등이 함유된 ○○산 식품등이 판매되지 않도록 지도 및 계도하는 등 식품안전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협 조 사 항 -</p> <p>○ 각 교육청과 학교관계자 및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합동 지도·점검반을 운영하여 ○○이 검출된 제품이나 일시적으로 유통·판매가 금지된 제품이 학교주변에 판매될 수 없도록 조치협조</p>	

- 유통·판매 금지 제품을 발견시 관할 시·군·구청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로 연락하여 판매금지가 될 수 있도록 조치

※ 신고처 : 시·군·구청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전화번호 : 국번없이 1399) 또는 관할 시·군·구 식품위생부서


※ 식약처 홈페이지(mfds.go.kr)에 매일 유통·판매 금지 대상 제품을 업데이트하여 공개

○ 학교주변 식품판매업소 등에서 판매되는 국적불명식품, 무국적식품, 유통기한 등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제품 등 부정불량식품에 대하여서도 시·군·구청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연락하여 판매가 될 수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붙임 각 시도(시군구) 식품위생 담당부서 연락처. 끝.

시행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


## 18. 관련 업계 협조 요청(1)

 식품의약품안전처	<h3>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h3>
제목 유통 판매업체 협회장 간담회 개최	
1. 귀 협회(회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처는 최근 ○○산 분유 등 유제품이 함유된 과자 등에서 ○○이 계속해서 검출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관련 식품의 수입금지 조치하였으며, 시중에 분유 등이 함유된 ○○산 식품에 대하여 유통·판매를 일시 금지 조치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신속한 수거·검사 및 회수 등 안전조치 사항에 대한 당부와 협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월), 17:00~18:00	
□ 장 소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회의실(본관3층)	
□ 참석대상 : 한국백화점협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한국편의점협회,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주)미원 유통-미니스톱, (주)보광훼밀리마트-훼밀리마트, GS리테일-GS25, 코오롱유통(주) 로손, 도양마트바이더웨이, 서클K코리아서클K, SK 에너지판매(주)에이엠피엠	
□ 회의내용 : ○○산 분유 등 함유 식품 유통금지 조치에 대한 업무 협의 등. 끝.	
수신자	한국백화점협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한국편의점협회,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코오롱유통(주)로손, (주)미원유통 미니스톱, 도양마트 바이더웨이, (주)써클K코리아서클K, (주)보광훼밀리마트 훼밀리마트, SK에너지판매(주) 에이엠피엠, GS리테일-GS25
시행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

## 19. 관련 업계 협조 요청(2)

 식품의약품안전처	<h3>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h3>
<b>제목</b> ○○산 분유 등 함유 제품 수거에 대한 업무 협조 요청	
1. 관련 : 식품관리총괄과-○○○○(○○○○.○.○○)호와 관련됩니다.	
2. 최근 분유 등 유제품이 함유된 ○○산 일부 식품에서 ○○이 검출되어 우리 처에서는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하여 ○○으로부터 수입되어 유통중인 유제품 함유 식품에 대하여 ‘○○.○○.○○일부터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판매금지 조치한바 있습니다.	
3. 우리 처에서는 판매 금지된 제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수거·검사를 집중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일부제품이 수거되지 않고 있어 협조요청하오니,	
4. 회원사 등에 연락하여 불임의 미수거 제품이 확인되는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연락하고 행정기관에서 수거·검사를 위하여 판매장 등에 출입·검사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미수거 제품이 전량 수거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통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불임</b> 1. 미수거품목업체별현황 2. 미수거품목현황    끝.	
<b>수신자</b> 한국식품공업협회, 사단법인 한국편의점협회, 한국제인스토어협회, 한국백화점협회,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b>시행</b> 식품관리총괄과-○○○○    (○○○○.○○.○○.)	

## 20. 교육 홍보 자료 배포

<h3>○○산 ○○ 관련 식품 유통 판매 금지에 따른 당부말씀</h3>
<p>정부는 ○○산 ○○ 함유식품이 국내에 수입되어 국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p> <p>정부는 ○○ 함유 가능 식품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일부 제품에서 ○○이 함유되었음을 확인하고 ○○월 ○○일자로 ○○ 함유 가능 식품에 대해 잠정적으로 유통판매를 금지하였습니다.</p> <p>국민 여러분께서는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분간 유통판매금지 식품을 구입하지 마시고 이러한 식품을 발견한 경우에는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나 ‘1399’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p> <p>유통판매금지 식품 현황은 식품의약품안전처(<a href="http://www.mfds.go.kr">www.mfds.go.kr</a>)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p> <p>정부에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식품에 대한 정밀검사를 완료하여 국민 불안을 덜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p>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 ○

## 21. 정보 보고서 양식

# 제 목 : [국가명(기관), 관련 내용]

- 정보원, 일시 -

### 정보내용

#### 개요

- ○○국가 (○○회사 또는 ○○기관)이 △△ (사유 : 위해물질 오염·함유 등)로 □□□ 제품을 회수 및 소비자경고 발표

#### 제품정보

- 제조국, 제조사(브랜드명), 제품명, 포장단위, 로트번호, 유통기한(이에 준하는 표시)등 관련 제품을 판단할 수 있는 표시

#### 피해사례 : 환자발생, 사망 등

### 정보분석

#### 국내 수입 여부

수입일시	제품명	제조원	수입현황		비고
			건수	중량	
					특이사항

#### 국내·외 관리 기준 및 동향

#### 위해요소의 개괄적 설명 : 용도, 특징, LD<sub>50</sub>, IARC 등급 등

### 평 가

#### 수입여부, 발암등급, 기준·규격, 섭취대상, 제외국 동향 파악 종합 평가

### 첨부 1. 원본 정보(사진등)



22. 상황점검회의의 결과 보고서 양식

○○국가, … 에서 … 검출 발표

보고일자 : '00. 0. 00(월)

보고자

△△△과장 □□□  
(-0000-0000)

< 정보내용 >

- 일시 : '00.0.00(월)
- 매체 : US FDA, ★★★
- 내용 : ○○국가, …에서 … 검출 발표  
- ◆◆◆ 제품 수거검사 결과, ~~~

회의개요

- 일시·장소 :
- 참석자 :

수입 현황 및 정보 분석

- \* 참고 통계자료

점검회의 결과(향후 계획)


- 

수신처    처장, 차장, 대변인, ○○국장, ○○과장

23. 식품사고 위기경보 발령문

수 신 : 배부처 참조 발 신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b>제목 : 식품사고 위기경보 발령</b> - ○○○ 중 △△△△ 검출	<b>배부처</b>	
○ 발령 일시 : ○ 발령 단계 : 「경계」 / 「심각」 ○ 발령 사유 : - - ○ 조치 사항 가. 우리 처 조치사항 - - 나. 유관기관 조치사항 - -	청와대	
	국무조정실	
	교육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	

## 24. 보도 자료 작성 서식

 <b>신포이약푸아저치</b>	<h1>보도자료</h1>	배 포	2013.5.10.(금)
		담 당 과	대전식약청 의료제품연구과 (☎042-222-2220)
		과 장	박식약 (☎042-222-2221/010-1234-5678)
		연 구 관	안약처 (☎042-222-2225/010-1234-5678)
대변인실 ☎ 043-719-11XX		<b>2013.5.13.(월) 오전 11시 이후부터 사용 바랍니다.</b>	

### **대만산 일부 제품 DEHP 검출 (HY헤드라인M 18p,진하게)** **- 2개 가공식품 유통·판매 중단, 회수조치 - (HY헤드라인M 15p)**

<기입내용> 우리청 트위터, 미투데이 등에 등재할 **보도자료 핵심 내용** 기술  
 (띄어쓰기 포함, **100자 이내**)

- 리드 (휴먼명조 15p, 줄간격 180%)
  - : 가장 중요한(강조할) 내용 한 가지를 최대한 단순화(2~3줄)
- 본문
  - ‘역 피라미드형’ 으로 구성
    - 주요 내용 → 2차 주요 내용 → 추가 정보(과학적 근거 등)
  - 한 문장은 2줄(60자) 이내, 1문장-1주제 원칙
  - 전문용어는 피하고 쉽게 작성, 어려운 용어는 ‘※’ 표시로 설명
  - 복잡한 내용(정책)은 Q&A 첨부
    - ※ 통계·법령자료·정책근거는 보충설명 자료로 첨부 (중고딕, 13p)


### □ 맺음말

○

- <첨부> 1.  
2.

*mfds Press Release*

25. 해명(설명) 자료 작성 서식

	<h1>설 명 자 료</h1> <h2>(해명, 참고)</h2>	배 포	2013.5.10.(금)
		담 당 과	대전식약청 의료제품연구과 (☎042-222-2220)
		과 장	박식약 (☎042-222-2221/010-1234-5678)
		연 구 관	안약처 (☎042-222-2225/010-1234-5678)

언론 매체(매체명, 일시(요일), 지면) 『기사 제목』 보도 내용 중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해명)합니다.

□ 관련 사실 내용

- 명확한 근거를 중심으로 핵심만 간단하게 서술
- “사실과 다른 문장 1”에 관한 설명(해명)
  -
- “사실과 다른 문장 2”에 관한 설명(해명)
  -

※ 1쪽 이내로 작성, 통계·법령자료·정책근거는 보충설명 자료로 첨부

26. 위해식품 정보 공개

위해식품 정보 공개		
제목	(예 : ○○○검출 부적합제품)	
제품명	○○○○○○○○(식품유형: )	
제조업소명 (수입업소명)	(수입식품의경우수출국, 수출국제조업소명 병기)	
소재지	(수입식품의 경우 수출국 제조업소 소재지 병기)	
내용량		제품사진
제조일자		
유통기한		
부적합내용		
검사결과	○○○(기준: )	
문의처		

27.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

## 위해식품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 제45조 또는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

나. 유통기한 : 2013. 00. 00일까지

다. 회수사유 : 허용외타르색소검출(적색2호)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

바. 영업자주소 : ○○○도 ○○○시 ○○○동 ○○○번지

사. 연락처 : ○○○○-○○○○-○○○○○

아. 기 타 : 위해식품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도○○○시 ○○○과(담당자 ○○○○)

## 28. 주요 이슈 결과발표 사전계획

발표내용명 :		
발표자 :		
발표일시, 장소 및 형식 :		
이슈결과발표의 목적 :		
중점 홍보대상 :		
홍보 메시지 :		
대상별 주요 홍보 논리 :		
발표前 점검사항	예	아니오
1. 관계부처간 사전 협의, 조정 완료 여부		
- 농림축산식품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국무조정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협의조정 미완료 시>		
- 사유 :		
- 완료 시점 :		
- 조치 필요사항 :		
2. 국무회의 또는 관계기관 회의 등을 거쳐 확정된 것인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이슈발표 시기적절성 검토는 이루어졌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타 부처의 주요 발표시기와 중복여부		
- 침해화된 사회적 이슈로 발표효과 감소 가능성 등		
4. 사전 홍보 추진 및 사후 홍보대책은 수립 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보도자료(영상 포함) 등 발표준비는 잘 이루어졌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예상쟁점 및 대책 (대응논리) :		
국내외 사례 및 인용 논거 :		
사전 홍보방안 (여론수렴 및 형성) :		
후속 홍보방안(여론분석 및 쟁점관리, 언론홍보 등) :		

29. 언론 취재 요청 및 응대 보고

## 인터뷰 보고 카드

(2013. 00. 00 (요일), 부서명)

인터뷰 배경 글상자(중고덕, 15p)

### 1. 인터뷰 개요

주제					
인터뷰 일시 및 장소	년	월	일	오전: 오후:	장소:
취재방법	사전녹화	인터뷰	전화	서면	
언론기관, 취재진 성명(분야, 연락처)					
답변자 (소속, 직급, 성명)					
프로그램 및 보도예정일시					

### 2. 주요 내용

취재(인터뷰) 내용	Q1: Q2: Q3:
답변요지	A1: A2: A3:
해당과 의견	
대응조치 필요여부	



# 취재지원 요청 카드

(2013. 00. 00 (요일), 부서명)

인터뷰 배경 글상자(중고덕, 15p)

## 1. 인터뷰 개요

주제					
인터뷰 일시 및 장소	년	월	일	오전: 오후:	장소:
취재방법	사전녹화	인터뷰	전화	서면	
언론기관, 취재진 성명(분야, 연락처)					
답변자 (소속, 직급, 성명)					
프로그램 및 보도예정일시					

## 2. 주요 내용

예상 질의	Q1: Q2: Q3:
답변	A1: A2: A3:
예상프로그램 방향	
대응조치 필요여부	

### 30. 수거 검사 일일 보고

수거·검사 현황 일일 보고					
기관명 : 식약처, 시도					(단위 : 건)
	수거현황	검사결과			
		계	적합	부적합	진행중
당일 (○월○일)					
누계					

수거·검사 세부현황									
기관명 : 식약처, 시도									
연번	제품정보				수거검사				
	제품명	식품 유형	제조일자 (유통기한)	제조업소 (식품등 수입판 매업소)	수거장소	수거일자	검사기관	검사완료 일자	검사결과 (기준)
※ 수거검사 세부현황 자료는 누계자료에 추가 수거된 자료, 추가 검사 완료된 자료를 입력하여 보고									

### 31. 판매금지 식품 수거·검사 지침 통보

[긴급지침 예시]

#### 멜라민 수거·검사 관련 긴급지침

수입식품에 대한 멜라민 수거·검사와 관련 중복 수거·검사등의 사례가 있어 아래와 같이 긴급지침을 마련하여 시행 합니다.

- 수거대상 목록(붙임 및 식약처 홈페이지 참조)중 현재까지 수거가 완료되었거나, 검사 중인 제품에 대하여는 수거 및 검사하지 말 것(수거대상 제외)
- 미 수거 제품을 수거한 경우에는 즉시 식약처(식품관리총괄과)에 유선 통보
- 지방식약청 및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검사기관에서는 검사 의뢰된 제품중 검사가 완료된 제품(식약처 제공자료 및 홈페이지 검사완료 현황 참조)에 대하여는 검사를 중지할 것
-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멜라민이 검출되거나 검사결과에 대해 의심이 있는 경우 검사성적서 발급 전 반드시 확인실험 등 지방식약청(시험분석센터 등)과 사전협의 후 결정
- 각 지방식약청은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의된 검사결과 멜라민 검출 또는 의심이 있거나, 멜라민이 검출되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부(해당과와 자체검사결과)의 확인실험을 거치는 등 사전협의 후 그 결과에 따라 검사성적서 발급
- 검사결과에 대하여는 최종적으로 식약처가 일괄 공개할 것이니, 각 기관별로 언론 등에 검사결과가 공개되어 혼선을 빚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 32. 판매 금지 식품 점검표

업 소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영업종류	식품제조업, 식품수입업, 식품소분업, 기타식품판매업, 식품 접객업, 초등학교주변 판매점, 도소매업 등 기타 식품판매업		

구분	점검사항					결과
판매금지 식품의 취급	판매금지 식품 등의 판매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운반 또는 진열 여부					
판매금지 대상 식품별 재고량 (필요 시 별지작성)	제품명	수입업소	유통기한(제조일자)	봉인(재고)량(kg)		
※ 보관량에 대해서는 판매금지를 위한 봉인 조치						
판매금지 대상 식품의 판매처 (필요 시 별지작성)	판매금지 대상 식품을 대량으로 판매한 경우 판매처 및 판매량 조사					
	제품명	수입업소	유통기한	판매처	소재지	판매량(kg)
0000 검출제품 압류	제품명	수입업소	유통기한(제조일자)	보관량(kg)		
기타 지도사항	판매금지 품목은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고 봉인조치 실시 등					
본인은 상기 제품 보관량에 대하여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판매(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2014.						
	확인자	업소명	직위	이름(인)		
	조사자	소속	직급	이름(인)		

### 33. 압류 회수 현황 보고

<div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font-size: 1.2em;">압류회수 세부현황</div>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5px;">기관명 : 식약처, 시도</div>												
연번	제품정보			압류·회수							조치	
	제품명/식품유형	제조일자 (유통기한)	제조업소 (식품등수입판매업소)	회수 영업자	명령 기관	명령 일자	완료 일자	회수 대상 (kg)	회수량 (kg)	회수율 (%)	폐기	방법
											일자	반송
※ 회수폐기 세부현황 자료는 누계자료에 추가 압류·회수된 자료, 추가 조치된 자료를 입력하여 보고												

### 34. 유통 판매 금지 식품 현황

순번	품목명	수입업체	제조회사	유통기한 (제조일자)	관련 사진
1	000000(딸기맛)	000	0000	0000.00.00	<a href="#">사진파일</a>
2	000	000	000	0000.00.00	<a href="#">사진파일</a>
3	000	000	000	0000.00.00	<a href="#">사진파일</a>
4	000000(딸기맛)	000	0000	0000.00.00	<a href="#">사진파일</a>
5	000	000	000	0000.00.00	<a href="#">사진파일</a>
6	000	000	000	0000.00.00	<a href="#">사진파일</a>
7	000	000	000	0000.00.00	<a href="#">사진파일</a>
8	000000(포도맛)	000	0000	0000.00.00	<a href="#">사진파일</a>
9	000	000	000	0000.00.00	<a href="#">사진파일</a>
10	000000(살구맛)	000	0000	0000.00.00	<a href="#">사진파일</a>
11	000	000	000	0000.00.00	<a href="#">사진파일</a>
12	0000(바나나맛)	000	0000	0000.00.00	<a href="#">사진파일</a>
13	000	000	000	0000.00.00	<a href="#">사진파일</a>
14	000	000	000	0000.00.00	<a href="#">사진파일</a>
15	000	000	000	0000.00.00	<a href="#">사진파일</a>
16	000	000	000	0000.00.00	<a href="#">사진파일</a>
17	000	000	000	0000.00.00	<a href="#">사진파일</a>

35. '○○'관련 유통판매 금지 제품 수거 검사 현황

(2014. 00. 00. 24:00현재/식약처)

□ 검사대상 000개 품목 중 검사 완료 000개 품목(검출 00개 품목)

구분	검사대상 총계(A)	수거 품목(B)	검사현황			검사중 (B-C)	수거중 (A-B)	유통금지
			소계(C)	불검출 (적합)	검출 (부적합)			
누계	000	000	000	000	00	00	00	000
일계 (10. 4)		000	00	00	-			

## 멜라민(Melamine)에 대해 알아봅시다

### Q 멜라민은 무엇인가?

- 멜라민은 유기화학물질로 열에 강한 플라스틱 원료의 생산에 사용됩니다.
  - 바닥 타일, 주방기구 등 플라스틱제품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
- 멜라민은 1958년에 비단백질 질소원으로 소의 사료로 사용되었으나 1978년에 다른 비단백질 질소원(예: 요소, 면실)보다 분해 능력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사용금지 되었습니다.

### Q 멜라민(Melamine)은 식품중에 사용할 수 있는가? 그 안전성 기준은?

- 멜라민은 식품제조·가공에 사용할 수 없는 물질이며 여러 국가 및 CODEX 등도 국제적으로 식품에 사용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 참고로, 미국 FDA에서는 멜라민 및 관련 화합물에 대한 식품 및 사료의 내용 일일섭취량(TDI)를 일일 체중(kg) 당 0.63 mg으로, 유럽식품안전청은 TDI를 일일 체중(kg) 당 0.5 mg로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실험동물에서 24시간 내 소변 등으로 90%이상 배설됩니다.
- ※ 내용일일섭취량(TDI)은 환경오염 물질 등의 비의도적으로 혼입하는 물질에 대해 평생 동안 섭취해도 건강상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양

- ◆ 유럽TDI기준을 적용시 멜라민 137ppm이 검출된 미사랑카스타드 제품을 60kg 성인의 경우 날개포장 40개 이상씩, 20kg 어린이의 경우 날개포장 13개 이상씩 매일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신장염, 신장결석 등의 유해영향 발생이 우려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멜라민 1.5ppm이 검출된 커피크림 제품을 60kg 성인이 20kg 이상씩(커피 약 3,700잔 ~ 4,000잔 이상씩) 매일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신장염, 신장결석 등의 유해영향 발생이 우려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 Q 중국에서는 왜 멜라민을 분유에 첨가하였는지?

- 중국에서 분유에 멜라민이 검출된 이유는 젖소를 키우는 농민들이 우유를 물로 희석후 희석된 우유의 단백질 함량이 높게 측정되도록 질소성분이 많은 멜라민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우유중 단백질 함량 검사는 단백질중의 질소(N)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질소가 많은 멜라민은 단백질 함량 검사시 희석된 우유의 단백질 함량을 높게 보이도록 하는 물질입니다.

## Q 멜라민(Melamine) 오염 식품을 사람이 먹었을 경우 위험한가?

- 멜라민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체 발암성으로 분류할 수 없는 물질 (그룹 3)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중국에서 멜라민으로 인한 유아사망 등 직접적 인체 유해성은 분유를 주식으로 하는 유아가 고농도의 멜라민(최고 2563mg/kg)에 노출되었기 때문입니다.
  - 과자류에는 분유의 사용량이 적으며 멜라민 검출량도 미량으로 직접적인 인체 유해 여부는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Q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에서 안전한 제품은 어떻게 구분하나?

- 식약처는 멜라민 함유가 의심되는 제품을 수거·검사하고 있으며(9월 26일 현재 428품목), 수거 대상품목은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판매를 일시 중지시켰습니다.
-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http://www.mfds.go.kr))에 안전성이 확인된 품목과 판매금지 품목의 목록을 게재하고 있으니, 국민여러분께서는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분간 유통판매금지 식품을 구입하지 마시고 이러한 식품을 발견한 경우에는 '139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 멜라민수지로 만든 식기는 안전한가?

- 국내의 멜라민수지 사용 식품용기에 대한 멜라민 잔류허용기준은 용출규격으로 30mg/ℓ이하이며, EU도 용출규격은 30mg/kg입니다.
  - 일본과 미국에서는 멜라민에 대한 용출규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 용출시험 : 식기에서 우러나오는 멜라민을 측정하는 검사법
- 2007년도 우리 처에서 수행된 멜라민수지 중 멜라민에 대한 용출시험 결과 모두 적합하였습니다.

재질 분류	검사항목	검사건수	용출량 (ppm) (기준 30 이하)
멜라민수지	멜라민	101	0.02 ~ 0.71

※ 참고로 전자렌지에서 최대 7분까지 조리 시에도 멜라민의 용출량은 기준치 이하였음

## ※ 국제암연구소(IARC)의 발암분류 기준 및 관련 품목은?

- 그룹 1 : 인체에 발암성이 있음(Carcinogenic to humans)
  - 인체 발암성에 충분한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sufficient evidence of carcinogenicity in humans)
  - 예) 아플라톡신, 벤젠, 벤조피렌
- 그룹 2A : 인체 발암 추정물질(Probably carcinogenic to humans)
  - 인체자료는 제한적이지만 실험동물자료가 충분(limited evidence of carcinogenicity in humans and sufficient evidence of carcinogenicity in experimental animals)
  - 예) 무기 납화합물
- 그룹 2B : 인체 발암 가능물질(Possibly carcinogenic to humans)
  - 인체자료가 제한적이고 실험동물 자료도 충분하지 않은 경우(limited evidence of carcinogenicity in humans and less than sufficient evidence of carcinogenicity in experimental animals)
  - 예) 오크라톡신 A
- 그룹 3 :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할 수 없는 물질(not classifiable as to carcinogenicity to human)
  - 인체나 실험동물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inadequate in humans and inadequate or limited in experimental animals)
  - 예) 멜라민, 카페인, 콜레스테롤, 싸이클라메이트

## 별첨 자료 3. 인터뷰, 기자회견, 브리핑 등 요령

### 1. 언론 접촉 기준 준비 사항

- 언론 접촉의 시기 및 장소 결정
- 진행 순서 확인
- 접촉 언론사명과 기자명 정리(가능하다면 해당 기자의 과거 기사 2개 이상 분석해 기자 성향 파악 하는 것이 중요)
- 언론매체의 종류 및 특성 정리(방송신문인터넷 언론구분, 관련기관과의 적대성 및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 등을 파악)
- 기자가 사전에 요구한 회견 주제 및 이슈정리
- 기자들의 예상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적은 예상 질의서 작성
- 언론 접촉에 응하는 관련기관 기관장(처장 등)이 강조해야 할 점 요약
- 언론 접촉에 응하는 관계자가 언급을 피해야 할 주제와 이슈정리
- 언론 접촉을 준비하는데 유용하게 이용될 배경자료와 통계자료 준비(시청각 자료를 언론에 공개할 경우 시청각 기자재인 DVD, 빔프로젝트, 노트북 등 제대로 작동 되는지 사전점검)
- 언론 접촉을 준비하는데 유용하게 이용될 외부 관계자 섭외(필요하다면 동석 요청)

### 2. 인터뷰 요령

- 인터뷰 시 중요 체크사항과 요령
  - 질문에 대한 답변보다는 커뮤니케이션 하고자 하는 메시지 전달을 중심으로 답변지 준비
  - 질문에는 성실한 자세로 임하고 결론부터 먼저 말하는 것이 좋음(말을 장황하게 할 경우 편집으로 삭제된 경우도 있음)

- 문제점을 지적한 경우 부인하지 말고, 그러한 문제점을 이미 알고 있었으며,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등 미래지향적이고 긍정적인 답변으로 인터뷰 진행
  - 취재진의 질문 내용에 대한 평가는 삼가고, 성실하게 답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
  - 개인적인 의견이나 입장을 말하지 말고, 사전에 조율한 입장만을 대변하도록 함
  - 오프더 레코드(Off the record : 취재원이 보도 자제나 연기 등을 약속 받고 취재에 응하는 것)를 신뢰하지 말고, 보도되기 원하지 않으면 절대 정보를 발설하지 말아야 함
- 인터뷰 도중 유의해야 할 기자에게 빠질 수 있는 함정
- “이번 문제 때문에 얼마나 심려가 크십니까?”와 같은 질문으로 과장된 진술을 유도하는 질문 주의
  - “그래서 당신이 전하고자 하는 바는 …?”과 같은 질문으로 답변의 반복유도 주의
  - “문제, 실패, 위기, 실수, 재앙” 등과 같은 부정적인 단어나 문구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질문 주의

### 3. 인터뷰(방송출연) 유의점

- 해당 프로그램의 종류와 시청자 및 청취자에 대한 파악
- 요청된 사전 질문이 있다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마련
- 진행자와 계속 눈을 맞추며 회피하는 인상을 남기지 말 것
- 난처한 질문을 받았을 경우 우물쭈물 하거나 묵묵부답하기보다는 “진행자님 생각에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와 같이 재치있게 대응

- 목소리 톤을 차분하게 하며 품위있는 어투를 사용
- 화려하거나 정보에 벗어난 복장은 피함
- 생방송이 아닌 경우 실수가 있으면 다시 말하거나 그 부분을 다시 녹화 하자고 자신있게 제안
- 표준어를 사용하고 거슬리는 외국어 발음이나 은어·속어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

#### 4. 기자회견 브리핑 요령

- 기자회견 브리핑의 활용도 : 인터뷰와 달리 기자회견이나 브리핑은 보다 능동적인 커뮤니케이션 과정이며, 목표도 다양하게 설정 될 수 있음
  - 기자회견은 초기 위기상황과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 경우 실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브리핑은 위기상황 국면이 변화할 때마다 수시로 실시 (위기상황에서는 기자회견과 브리핑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가 있음)
- 기자회견, 브리핑 시 중요 체크 사항과 요령
  - 예고된 원고 발표시간 엄수(최소 5분전에 도착, 대기실에서 준비)
  - 시선 교환을 통해 분위기를 주도하고 청중의 반응 탐색
  - 기술적인 이해가 필요한 자료는 항상 서면자료를 활용하여 참석자들을 충분히 이해시키도록 함
  - 시청각 기자재를 활용할 시에는 발표자 혹은 응답자가 직접 조작하도록 함 (전문가 이미지로 인식됨)
  - 상투어 금지 : “제가 이런 기자회견이나 브리핑에 익숙지 않아서”, “준비한 내용이 얼마 되지 않아서”, “아시다시피” 등은 사전준비를 미흡하게 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음

- 사전 조율한 입장에 계속적으로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 모든 질문이 이 부분이 집중되도록 함
- 끝까지 평정을 유지하며 말하고자 하는 바를 언론에 정확히 전달
- 노코멘트(No comment)식 답변은 금물, 확인 후 추후 알려주겠다고 답변하고 전체 참석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에 게재하거나 개인 이메일 송부 약속

## 5. 기자회견과 브리핑 시 유의점

- 발표와 질의 및 응답을 각 20분 이내로 제한하여, 돌발적인 질문이나 상황을 최소화
- 마이크를 만지거나, 준비된 음료를 회견이나 브리핑 초반부터 마시는 행위를 금할 것
- 무의식적인 습관에 유의(머리 긁기, 손톱 물어뜯기, 손가락 꺾기 등)
- 카메라를 지나치게 의식하기 말고 청중에 집중하는 인상을 보일 것
- 화려하거나 지나친 복장은 금물(예컨대, 현장복 등을 착용해 적극적으로 위기 대처에 임하고 있음을 암시해 줄 것)
- 자신감 있는 표정을 지으며, 중요한 논의에서는 가벼운 제스처로 주의를 환기시킬 것
- 빠른 속도의 말, 단조로운 어조, 사투리와 은어·속어 등의 사용을 금할 것
- 되도록 질문자의 질문에 재차 질문하지 않는 등 완전한 집중 상태를 보여 줄 것
- 자료를 앵무새처럼 읽지 말고 구어체로 설명 할 것

[기자회견·브리핑 체크포인트]

구 분	체크포인트
(1) 기자회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자회견 시간과 장소</li> <li>○ 보도진에게 시간과 장소 통보 유무</li> <li>○ 기자, 편집자, 언론인들의 참석자 명단</li> <li>○ 기자들이 관심을 둘만한 배경자료</li> <li>○ 기사 전송을 위한 인터넷 접속 가능 여부 확인</li> <li>○ 마이크나 비디오, 오디오 장비 작동 여부</li> <li>○ 기자회견에 적합한 의복과 용모 상태인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색상, 순백, 순흑색은 피할 것</li> <li>- 금색안경, 장신구 착용 피할 것</li> <li>- 진한 화장과 염색 등은 피할 것</li> </ul> </li> <li>○ 예상 질의 및 답변의 검토</li> <li>○ 회견장소를 찾은 인원파악을 위해 방명록과 명함 수집함 설치</li> <li>○ 보도자료를 포함한 새로운 정보와 유인물 등 배경자료의 회견장 비치 유무 확인</li> <li>○ 직원들에게 기자회견 실시 사전고지</li> </ul>
(2) 브리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브리핑 시간과 장소</li> <li>○ 보도진에게 시간과 장소 통보 유무</li> <li>○ 기자, 편집자, 언론인들의 참석자 명단</li> <li>○ 브리핑 진행 순서</li> <li>○ 발표문의 헤드라인 적절 유무 판단</li> <li>○ 직원들에게 브리핑 안내 및 통보</li> <li>○ 브리핑용 시청각 기자재(빔 프로젝터, 음향기기) 작동여부</li> <li>○ 브리핑에 적합한 의복과 용모 상태인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색상, 순백, 순흑색은 피할 것</li> <li>- 금색안경, 장신구 착용 피할 것</li> <li>- 진한 화장과 염색 등은 피할 것</li> </ul> </li> <li>○ 불참 취재진에 대한 브리핑 자료 지원 방법</li> <li>○ 인원 파악을 위한 방명록과 명함 수집함 설치</li> <li>○ 보도자료 포함, 유인물 등 배경자료의 비치 유무</li> </ul>



## 별첨 자료 4. 비상연락체계

### ① 관련기관 비상연락망

※ 처·차장 비서관(실) 및 관련기관에 메일로 보내고 반드시 유선으로 재차 확인 요망

기관명	연 락 처
청와대	<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 ○ 02)770-2335
	< 고용복지수석실 > ○ 행정관            02)770-2711 ○ 사무관            02)770-2715
국무조정실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044)200-2380 ○ 과장                    044)200-2379, FAX) 044-200-2383 ○ 사무관                    044)200-2380

② 정부 부처 및 기타 관계기관

구분	소속 및 직위	비상연락처	
		사무실	FAX
정부부처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	044)200-2380	044)200-2383
	농림축산식품부 소비정책과	044)201-2411	044)868-0461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044)201-2076	044)868-0449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044)200-5621	044)200-5629
	교육부 학생건강안전과	044)203-6548	02)2100-6438
	안전행정부 자치행정과	02)2100-3703	02)2100-4224
	관세청 통관기획과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 총괄분석과	042)481-7810 055)792-7310	042)481-7819 055)763-7391
	문화체육관광부 홍보협력과	044)203-2960	044)203-3485
기타 관계 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검역과	031)467-1741	031)467-1717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안전과	054)429-4131	031)446-0903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	031)929-4651	031)929-4777
	국립수산물과학원 식품안전과	051)720-2610	051)720-2619

③ 재난 발생 시 관련 부처 비상연락처

-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02-770-2335)
- 안전행정부
  - 자연 재난 대응(재난총괄과, 02-2100-1815~7)
  - 인적 재난 대응(재난협력과, 02-2100-1836~7)
  - 사회적 재난 대응(재난관리과, 02-2100-1825~6)
  - 중앙안전상황실(02-2100-3119)

구분	재난 유형	주관기관	담당부서	연락처
자연재난	풍수해	소방방재청	방재대책과	02-2100-5416
	지진	소방방재청	지진방재과	02-2100-5086
	산불	산림청	산불방지과	042-481-4252
	대형화산폭발	소방방재청	방재대책과	02-2100-5421
인적재난	화학 유해물질 유출	환경부(독극물) 산업통상자원부(독성가스) 고용노동부(대형사업장)	화학물질과 에너지안전과 화학사고예방과	044-201-6771 044-203-5134 044-202-7760
	대규모 환경오염	환경부(수질오염) 해양수산부(해양오염)	수질관리과 해양환경정책과	044-201-7068 044-200-5290
	댐붕괴	국토교통부	수자원개발과	044-201-3611
	인접국 방사능 누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재환경과	02-397-7357
사회적재난	전력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044-203-5253
	식용수	환경부(지역상수도) 국토교통부(광역상수도)	수도정책과 수자원개발과	044-201-7115 044-201-3610
	감염병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보건위기대응과	043-719-7247
	가축질병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044-201-2373
	원전안전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재환경과	02-397-7353

※ 각 재난유형별로 해당 지자체는 필수 협조기관임

④ 긴급상황 연락망

연번	소속	부서	직급	사무실	FAX
1	본부	처장실	처장	043)719-1201	043)719-1200
2	본부	처장실	비서관	043)719-1202	043)719-1200
3	본부	차장실	차장	043)719-1211	043)719-1210
4	본부	소비자위해예방국장	국장	043)719-1701	043)719-1700
5	본부	식품안전정책국장	국장	043)719-2001	043)719-2000
6	본부	식품영양안전국	국장	043)719-2251	043)719-2250
7	본부	농축수산물안전국	국장	043)719-3201	043)719-3200
8	본부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과장	043)719-1711	043)719-1710
			부서	043)719-1721, 1722	
9	본부	소통협력과	과장	043)719-2551	043)719-2550
			부서	043)719-2552~2560	
10	본부	위해정보과	과장	043)719-1751	043)719-1750
			부서	043)719-1752~1764	
11	본부	검사제도과	과장	043)719-1801	043)719-1800
			부서	043)719-1812~1835	
12	본부	식품정책조정과	과장	043)719-2010	043)719-2000
			부서	043)719-2011~2014	
13	본부	식품관리총괄과	과장	043)719-2051	043)719-2050
			부서	043)719-2052~2066	
14	본부	식품소비안전과	과장	043)719-2851	043)719-2850
			부서	043)719-2852~2867	
15	본부	수입식품정책과	과장	043)719-2161	043)719-2150
			부서	043)719-2151~2160	

연번	소속	부서	직급	사무실	FAX
16	본부	식품기준과	과장	043)719-2411	043)719-2400
			부서	043)719-2412~2422	
17	본부	축산물기준과	과장	043)719-3851	043)719-3850
			부서	043)719-3852~3863	
18	본부	건강기능식품기준과	과장	043)719-2451	043)719-2450
			부서	043)719-2452~2460	
19	본부	첨가물기준과	과장	043)719-2501	043)719-2500
			부서	043)719-2502~2512	
20	본부	영양안전정책과	과장	043)719-2252	043)719-2250
			부서	043)719-2253~2275	
21	본부	식생활안전과	과장	043)719-2301	043)719-2300
			부서	043)719-2302~2318	
22	본부	식중독예방과	과장	043)719-2101	043)719-2100
			부서	043)719-2102~2318	
23	본부	신소재식품과	과장	043)719-2351	043)719-2350
			부서	043)719-2352~2363	
24	본부	농축수산물정책과	과장	043)719-3203	043)719-3200
			부서	043)719-3204~3215	
25	본부	축산물위생안전과	과장	043)719-3241	043)719-3240
			부서	043)719-3242~3255	
26	본부	농수산물안전과	과장	043)719-3271	043)719-3270
			부서	043)719-3273~3281	
27	본부	검사실사과	과장	043)719-2201	043)719-2200
			부서	043)719-2202~2224	
28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과	과장	043)719-4502	043)719-4500
			부서	043)719-4504~4513	

연번	소속	부서	직급	사무실	FAX
29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	잔류물질과	과장	043)719-4201	043)719-4200
			부서	043)719-4203~8	
30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	오염물질과	과장	043)719-4251	043)719-4250
			부서	043)719-4252~4257	
31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	미생물과	과장	043)719-4301	043)719-4300
			부서	043)719-4302~9	
32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	첨가물포장과	과장	043)719-4351	043)719-4350
			부서	043)719-4352~4356	
33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	영양기능연구팀	팀장	043)719-4401	043)719-4400
			부서	043)719-4402~4407	
34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	신종유해물질팀	팀장	043)719-4451	043)719-4450
			부서	043)719-4452~4456	

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구 분	소속 및 직위		비 상 연 락 처	
			사 무 실	FAX
지방 식약청	서울청	식품안전관리과	02)2640-1373~89	02)2640-1361
		농축수산물안전과	02)2640-5010	02)2640-1367
		수입관리과	02)2640-1432~48	02)2640-1363
	부산청	식품안전관리과	051)602-6151~73	051)602-6246
		농축수산물안전과	051)602-6130	051)602-6251
		수입관리과	051)602-6200~19	051)602-6248
	경인청	식품안전관리과	02)2110-8031~47	02)2110-0805
		농축수산물안전과	02)2110-8056~62	02)2110-0808
		수입관리과	02)2110-8136~60	02)2110-0815
	대구청	식품안전관리과	053)589-2766	053)589-2710
	광주청	식품안전관리과	062)602-1401~9	062)602-1500
		농축수산물안전과	062)602-1471~7	062)602-1470
	대전청	식품안전관리과	042)480-8721	042)480-8740

⑥ 시·도 식품안전 담당부서

분 류		비 상 연 락 처	
		사 무 실	FAX
서울시	식품안전과	02)2133-4700	02)2133-4911
부산시	식의약품안전과	051)888-3931~6	051)888-3939
	농축산유통과	051)888-4811~7	051)888-4819
	수산진흥과	051)888-4751~6	051)888-4759
대구시	식품안전과	053)803-3411	053)803-4079
	농산유통과	053)803-3430	053)803-3439
인천시	위생정책과	032)440-2781	032)440-8658
	농축산유통과	032)440-4391~2	032)440-8664
광주시	식품안전과	062)613-3323	062)613-3329
	생명농업과	062)613-3980,83	062)613-3969
대전시	식품안전과	042)270-4882	042)270-4869
	농업유통과	042)270-3761	042)270-3729
울산시	보건위생과	052)229-3510	052)229-3549
	농축산과	052)229-2910	052)229-2919
	항만수산과	052)229-2960	052)229-2969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과	044)300-3362	044)300-3359
	산림축산과	044)211-4471	044)211-4489
경기도	식품안전과	031)8008-3685	031)8008-3699
	동물방역위생과	031)8030-3470	031)8030-3479



분 류		비 상 연 락 처	
		사 무 실	FAX
강원도	식품의약과	033)249-2420	033)249-4084
	축산진흥과	033)249-2650	033)149-4042
	농식품유통과	033)249-2620	033)249-4041
충청북도	식품의약품안전과	043)220-4541	043)220-4579
	축산과	043)220-3731,33	043)220-3719
	원예유통식품과	043)220-3660	043)220-3669
충청남도	식의약안전과	041)635-4335	041)635-3063
	축산과	042)251-2720,22	042)251-2729
	농산물유통과	041)635-2560	041)635-3089
전라북도	건강안전과	063)280-2436	063)280-2229
	축산과	063)280-2650	063)280-2729
	친환경유통과	063)280-2620	063)237-0365
전라남도	식품안전과	061)286-5761	061)286-4736
	축산정책과	061)286-6530~31	061)286-4787
경상북도	식품의약과	053)950-2440	053)950-2439
	축산경영과	053)950-2650,2888	053)950-2659
	FTA농식품유통과	053)950-2990	053)950-2989
경상남도	식품의약과	055)211-5150	055)211-5169
	축산과	055)211-3982~4	055)211-3759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위생과	064)710-2910	064)710-2919
	축정과	064)710-2120	064)710-2129

⑦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기 관	전화번호	FAX	주 소
서울	02)570-3240	02)570-3243	경기도 과천시 용머리2길 18
부산	051)309-2830	051)309-2810	부산광역시 북구 함박봉로 140번길 120
대구	053)760-1240	053)806-8512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215
인천	032)440-5460	032)440-5494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471
광주	062)613-7560	062)613-7549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149
대전	042)870-3431	042)870-3439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울산	052)229-5230	052)229-5239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157
경기	031)250-2570	031)250-2606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천로 95
경기북부	031)852-7814	031)852-7832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2동 800
강원	033)248-6429	033)248-6500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신북로 386-1
충북	043)220-5930	043)220-5939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1로 184
충남	042)620-1651	042)6201659	대전시 동구 비래서로 62번길 47
경북	054)339-8151	054)339-8159	경북 영천시 금호읍 고수골길 22
경남	055)211-1462	055)211-1469	경남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 45번길 75
전북	063)290-5230	063)290-5269	전북 임실군 임실읍 호국로 1601
전남	061)240-5251	061)240-5260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영산길 61
제주	064)710-7521	064)710-751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동길 41

⑧ 식품관련 소비자단체

소비자단체			
단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FAX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서울 중구 명동1가 1-1 서울YWCA회관 701호	02)774-4050	02)774-4090
한국소비자연맹	용산구 한남동 272-1	02)795-1042	02)798-6564
한국소비생활연구원	마포구 합정동 363-16	02)325-3300	02)325-3389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 시민의모임	종로구 신문로2가 89-27 피어선빌딩 603호	02)739-5530	02)736-5514
녹색소비자연대	용산구 효창동 5-393	02)3273-7117	02)3273-1544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중구 남창동 1-2 상동빌딩6층	02)779-1573-5	02)752-4225
한국YWCA연합회	중구 명동1가 1-3	02)774-9702	02)774-9724
전국주부교실중앙회	중구 충무로5가 19-3	02)2265-3627	02)2279-9341
한국소비자교육원	서초구 양재동 111-5 양촌빌딩 4층	02)579-0603	02)578-3779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용산구 한강로3가 40-427	02)794-4560	02)796-4995
한국YMCA전국연맹	중구 소공동 117 YMCA빌딩1층	02)754-7891-5	02)774-8889
한국부인회	동작구 흑석동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내	02)701-7321-2	02)701-7323
한국소비자원	서초구 양재대로 246(염곡동)	02)3460-3000	02)529-0408
식생활안전시민운동본부	강남구 신사동 569-8 디자인하우스 4층	02)518-8246	02)3445-3097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50-2 경실련회관	02)765-9731~2	02)741-8564~5

⑨ 식품관련 기관협회단체(1)

단 체 명	회원구성	주 소	전화번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관련단체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57-1	02)2194-7488
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제조업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49-12번지 한원빌딩 3~4층	02)585-5052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서울 서초구 방배동 882-33 세일빌딩 4층	02)3479-2100
(사)대한제과협회	제과업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31-9 대한제과협회빌딩 4층	02)2055-3347
한국음식업중앙회	일반 음식업	서울 중구 신당2동 410-1	02)2232-7911
한국조리사중앙회	조리사	서울 종로구 행촌동 27-1 일성빌딩 3층	02)734-1545
한국식품영양과학회	학술단체	부산시 금정구 장전3동 634-25	051)512-3168
한국식품임가공협회	즉석떡류 임가공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31-1 영일빌딩 503호	02)929-2434
한국면류공업협동조합	국수등생산업	서울 구로구 구로5동 104-10 동남오피스텔 303호	02)830-2091
한국제합식품공업 협동조합	팔양금제조업	서울 마포구 아현동 437-3 고려아카데미텔 1711호	02)313-4096
한국인삼제품협회	인삼제품 제조업	종로구 연지동 114-1	02)3672-8503
한국재제염공업협동조합	재제염제조업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2동 234-14	032)529-6988
한국곡물제분공업 협동조합	곡물제조업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314-1 용성비즈텔 1302호	02)2077-1313
한국연식품공업 협동조합연합회	두부류제조업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95-13 요셉빌딩 601호	02)3477-2630

⑨ 식품관련 기관협회단체(2)

단 체 명	회원구성	주 소	전화번호
한국포장두류식품 연구협회	포장두류식품 제조업	서울 송파구 185-5 ECMD 빌딩 5층	02)3400-7744
(사)한국제분공업협회	밀가루제조 가공업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118	02)777-9451
(사)한국급식관리협회	급식공급 산업체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31	02)571-2056
한국식품수출입협회	식품수입 산업체	서울 구로구 구로3동 187-10 코오롱사이언스벨리1차 710호	02)2025-2858
(사) 한국카카오 초콜릿기술협의회	카카오 초콜릿업	서울 마포구 도화동 250-4 근신빌딩 본관 515호	02)2051-3322
(사)한일의식문화 교류협회	외식산업체	서울 서초구 방배동 866-7 대우디오빌 222호	02)568-7310
(사)한국식품안전협회	식품제조가공 산업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3-3 홍우빌딩 913호	02)786-1911
대한영양사협회	영양사	서울 동작구 흑석 1동 170-15	02)823-5680
한국식품과학회	학계 등 학술연구자	서울 강남구 역삼동 635-4 과학기술회관 본관 605호	02)566-9937
(사)한국식품위생 안전성학회	학계 등 학술연구자	서울 강남구 역삼동 635-4 과학기술회관 본관 609호	02)566-0417
한국영양학회	식품산업체 연구원 등	서울 강남구 역삼동 635-4 과학기술회관 신관 804호	02)3452-0048
한국식품기술사협회	식품기술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63-5 태영빌딩 401호	02)3473-7171
(사)한국식품기기 위생안전 진흥협회	식품기기 등 제조산업체	서울 양천구 목동 404-16 시티프라자 401호	02)2652-8041

⑨ 식품관련 기관협회단체(3)

단 체 명	회원구성	주 소	전화번호
한국해조류가공식품 공업협동조합	김가공업	서울 송파구 송파동 85-1 창요빌딩 403호	02)419-0530
한국통조림식품공업 협동조합	통조림제조업	서울 서초구 양재동 84-5, 구보빌딩 7층	02)573-6283
한국압착식용유업 중앙회	즉석참기름 제조업	서울 성동구 마장동 518-8 우일빌딩 302	02)2294-2269 02)295-3174
한국추출가공식품업 중앙회	특석추출 가공식품	서울 금천구 독산1동 711-2 금천현대(아)상가 304호	02)805-3214
여수오천단지해산물 가공업협동조합	해산물가공업	전남 여수시 오천동 249-2	061)651-9401
대한병과공업협동조합	병과(떡) 제조업	서울 중랑구 면목동 228	02)2207-3141
한국도시락식품공업 협동조합	도시락식품 제조업	서울 금천구 독산동 330-7	02)804-0434
한국김치절임식품 공업협동조합	절임식품 제조업	서울 송파구 방이동 51-11 대종빌딩	02)2203-6567
한국장류협동조합	장류제조업	서울 송파구 잠실본동 248-13 장류회관	02)424-3141
한국죽염공업협동조합	죽염제조업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6-2 중소기업회관 B 127호	02)736-9585
한국어육제품공업 협동조합	어육연제품 제조업	서울 서초구 반포4동58-6, 상영빌딩 4층	02)592-6296
한국제빵공업협동조합	빵류제조업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2-5 중앙보훈회관 701호	02)783-2152
한국조미료공업 협동조합	조리료제조업	서울 송파구 방이동 168-17	02)2202-6857
한국청량음료공업 협동조합	음료수제조업	서울 강서구 등촌1동 649-14 우린빌딩 925호	02)3661-2105
한국주류산업협회	주류제조업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동 1059-11 도원회관 5층	02)780-6412

⑨ 식품관련 기관협회단체(4)

단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FAX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36-6 진석BD 7층	02)522-1271~4	02)522-1275
한국편의점협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8 허바허바빌딩 904호	02)565-1575	02)564-1045
한국백화점협회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4가 45 대한상의빌딩 643호	02)754-6054	02)776-9528
한국슈퍼마켓 협동조합연합회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4가 45 대한상의빌딩 643호	02)523-1541~6	02)523-1547
한국급식협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02)579-0079	02)577-3637
한국농수산물 유통공사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양재동 aT센터)	02-6300-1114	02-6300-1600
농협중앙회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16	02-2080-5114	-
농업경영인연합회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9길 60	02-3401-6543	02-3401-6549
한국어촌어항협회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53 한라시크마벨리 12층	02-6098-0701	02-6098-0739
수협중앙회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62 유통기획부	02-2240-2372~3	
“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62 식품사업부	02-2240-3187	
한국원양산업협회	서울시 서초구 논현로 63 삼호빌딩 A동 6층	02-589-1621~2	02-589-1630~1
한국농수식품무역협회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32 aT센터 1303	02-6300-8006	02-6300-8004
한국수산물 유통가공협회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320-4 농산빌딩 2층	02-589-1634	02-589-1364
한국수산회	서울시 서초구 논현로 63 삼호빌딩 A동 5층	02)589-0601	02)589-1700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212 번길 55	031)436-8770	031)436-8770

⑨ 식품관련 기관협회단체(5)

단 체 명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낙농진흥회	서울시 서초구 바우외로 27길 2	02)6007-5521	02)573-7824
대한수의사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2-5	031)702-8686	031)702-1020
대한양계협회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 88	02)588-7651	02)588-7655
대한한돈협회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길 9 제2축산회관 3층	02)581-9751	02)581-9768
전국한우협회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길 9 제2축산회관 2층	02)525-1053	02)525-1054
축산물품질평가원	경기도 군포시 용회1로 46번길 9	031)390-5500	031)390-5599
축산물HACCP기준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111	031)390-5200	031)465-6696-8
축산신문 (자문단체)	서울시 관악구 봉천 6동 1690-182	02)871-9561-5	02)871-9411
친환경축산협회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57-7 미주빌딩 301호	02)401-6888	02)409-6888
한국계육협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2-5 수의과학회관 402호	031)707-5722	031)707-5725
한국낙농육우협회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 88 축산회관 4층	02)588-7055	02)584-5144
한국단미사료협회	서울시 서초구 서리폴 3길 20-1	02)585-2223	02)588-8297
한국대용유사료협회	서울시 서초구 방배3동 1031-1 곡물협회 회관 2층	02)597-0688	02)597-0689
한국동물약품협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19번길 8-6	031)707-2470	031)707-0680
한국사료협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76	02)581-5721	02)587-2911
한국양육협회	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621-19 제2축산회관 5층	02)587-4343	02)587-4303
한국양봉협회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6길 9 제2축산회관	02)3486-0882	02)3486-0866
한국오리협회 (축단협 회장)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5길 9	02)582-5288	02)597-5249



⑨ 식품관련 기관협회단체(6)

단 체 명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한국유가공협회	서울시 서초구 방배3동 1031-1	02)584-3631	02)588-1459
한국육가공협회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 43 대한곡물협회빌딩 401호	02)588-1264	02)522-8712/8733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	경기도 군포시 당동 426-6	031)394-8147	031)394-8150
한국종축개량협회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16-5 축산회관	02)588-9301	02)582-3475
한국축산물처리협회	경기도 군포시 용화 1동 46번길9 축산물품질평가원 3층	031)391-9767	031)395-6661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47-15 연산빌딩 401호	02)807-8415	02)807-8416
한국토종닭협회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48-14	02)3437-9907	02)3437-9906
한국축산경제연구원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1690-182 축산 신문빌딩 4층	02)873-1997	02)873-1998
한국특수가축협회	서울시 강동구 성내1동 319-33	031)942-6272	031)949-6324

⑩ 해외 접촉창구

기관명	연 락 처
식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윤동-중국북경 T : 001-86-10-8531-0700(0848, 비서 : 0858) F : 001-86-10-8531-0869 yundonglee@hanmail.net, 2yundong88@gmail.com</li> <li>○ 이도기-중국청도 dlehl@naver.com T : 001-86-186-6192-8772</li> <li>○ 남봉현-미국 워싱턴 T : 001-1-202-939-5650 F : 001-1-202-342-1597 bonghyun.nam@gmail.com, nahmbh@hanmail.net</li> </ul>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			
연락처	소비자위해 예방정책과	전화	043)719-1718
		FAX	043)719-1710
본 매뉴얼에 대하여 수정 또는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위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			